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예산안분석시리즈 II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 행정안전위원회 】

2019. 10.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에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 (2019. 10. 17.)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 간 사

정부는 지난 9월 3일 총수입 482조원, 총지출 513.5조원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에 따른 경기 하방위험에 적극 대응하고자 총지출을 전년 대비 43.9조원(9.3%) 증액하는 한편,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중기적으로도 적극적인 재정책대를 계획하고 있어, 내년부터는 통합재정수지가 구조적인 적자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재정의 역할이 확대되는 추세 속에서 개별사업의 효과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등을 점검해야 될 국회의 역할 또한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0년도 예산안 분석시리즈」를 발간하였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분석시리즈」는 「총괄 분석」, 「위원회별 분석」,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성인지 예산안 분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괄 분석」은 재정건전성,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을 중심으로 재정총량에 대한 현황과 분석내용을 수록하였고, 혁신성장·경제활력 제고·포용국가 기반공고화 등 주요 정책 사업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위원회별 분석」에서는 개별사업 단위로 각 부처의 주요 증액 또는 현안사업에 대한 효과성, 필요성 등을 분석하는 한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에서는 보조금·출연금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예산안을 각 기관별로 살펴보았으며, 「성인지 예산서 분석」에서는 성인지 대상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국회 심사가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보고서가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으로 예·결산 심사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019년 10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이 중 후

차 례

CONTENTS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I. 예산안 개요 / 1

- 1. 현 황 1
-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3

II. 주요 현안 분석 / 5

- 1. 지방교부세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5
 - 1-1. 보통교부세 산정 시 수요자체노력 항목 관련 문제점 8
 - 1-2.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세율 인상 관련 고려사항 13
- 2.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의 사업성과에 기반한 사업규모 확대 필요 등 16
- 3. 지방자치단체 공통 이용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문제점 24

III. 개별 사업 분석 / 29

- 1. 공공자원 개방·공유 관리시스템 운영 관련 법률 개정 필요 등 29
- 2.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시스템 구축 관련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활용 방지 필요 34
- 3. 인구감소 지자체 지원 사업의 기존 사업과 차별성 제고 필요 38
- 4. 업무용PC 개방형 운영체제(OS) 도입 사업의 충분한 검증을 통한 사업 확대 필요 42
- 5.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확산 모델을 확정하여 예산안 편성 필요 46



CONTENTS

6. 공직선거 추진 사업의 지자체 교부 예산을 보조사업 형태로 편성 필요	49
7. 연료운반선 건조기간에 따른 연도별 사업비 분할 편성 필요	52
8. 재난안전사업예산 사전협의 제도의 내실있는 운영 필요	55
9. 국가안전정보 통합 공개시스템 구축 사업의 공개 근거 법령 개정을 위한 지속적 노력 필요	59
10. 노후 유도선현대화 이차보전 사업의 지원 목표 달성을 위한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64
11. 폭염 등 기후재난 대응기술 개발 사업의 현장 활용성 고려 필요	69
12. (국가융합망 구축 및 운영 사업) 장기적으로 전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국가융합망 구축·운영 필요	73
13. 재난안전 신기술 해외보급 사업(ODA)의 수원국 행정절차 이행에 대한 철저한 관리 필요	77
14.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사업의 내역사업 간 자원방식 통일 필요 ...	81

[인사혁신처]

I. 예산안 개요 / 87

1. 현 황	87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90

II. 주요 현안 분석 / 91

1. 보수연혁 조사 사업의 연구용역 내용보완 필요	91
-----------------------------------	----



CONTENTS

Ⅲ. 개별 사업 분석 / 94

- 1.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의 등재 인원의 선임비율 제고 필요 94
- 2. 임대주택건립 사업일정 지연 예방을 위한 사업관리 필요 98

[경찰청]

I. 예산안 개요 / 103

- 1. 현 황 103
-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106
-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107

II. 주요 현안 분석 / 109

- 1. 경찰청 신규 R&D 사업 분석 109
 - 1-1. 미래형 국민 치안서비스개발(R&D) 사업 취지 명확화 필요 110
 - 1-2. 약물이용범죄 사전예방을 위한 신속 탐지기술 개발(R&D) 사업의 면밀한계획 수립 필요 113

Ⅲ. 개별 사업 분석 / 116

- 1. AI 기술 활용 피해자 조사에 대한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116
- 2. 수사민원 상담센터 운영에 유의할 필요 119
- 3. 여성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 사업 운영 내실화 필요 122
- 4. 학대예방경찰관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 필요 125



CONTENTS

[중앙선거관리위원회]

I. 예산안 개요 / 131

- 1. 현 황 131
-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132

II. 주요 현안 분석 / 133

- 1. 국회의원선거관리 사업 예산 중 군인, 경찰공무원에 대한 선거공보 발송요청
우편요금 적정예산 편성 필요 133
- 2. 재외선거의 투표율 개선 필요 등 137

III. 개별 사업 분석 / 141

- 1. (사이버 선거연수 및 교육 사업) 콘텐츠 변환 대상 교육과정 중 일부 과정의
변환필요성 제고 필요 141

[소방청]

I. 예산안 개요 / 147

- 1. 현 황 147
-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148
-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149



CONTENTS

Ⅱ. 주요 현안 분석 / 151

- 1. 국립소방연구원 운영 및 사업의 문제점 151
 - 1-1.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인력 비중 확대 필요 등 152
 - 1-2. 직접수행 연구 사업 별도 편성 필요 등 155
 - 1-3. 실감기반 첨단소방훈련체계 구축연구(R&D) 사업 지연에 따른 예산조정 필요 159
 - 1-4. 국립소방연구원 이전 사업비 자료 제출 필요 161

Ⅲ. 개별 사업 분석 / 163

- 1. 소방장비 표준규격 활용성 제고방안 마련 필요 163
- 2. 고시원 등 간이스프링클러 지원에 관한 유사사업 추진 현황 고려 필요 167



행정안전부

1

현 황

가. 세입·세출예산안

행정안전부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1개 특별회계(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된다.

행정안전부 소관 2020년도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1개 특별회계(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되며,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1개 특별회계(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된다.

행정안전부 소관 2020년도 세입예산안은 608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19억원(3.4%) 증가하였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585억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3억원이다.

[2020년도 행정안전부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48,830	55,524	55,524	58,524	3,000	5.4
혁신도시특별회계	0	2,747	2,747	0	△2,747	△100.0
균형발전특별회계	1,847	606	606	2,284	1,678	276.9
합 계	50,677	58,877	58,877	60,808	1,931	3.4

주: 총계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은 55조 5,083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3,540억원(0.6%) 감소하였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55조 662억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4,421억원이다.

[2020년도 행정안전부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48,190,995	55,020,885	55,181,588	55,066,151	△115,437	△0.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536,835	660,815	680,700	442,131	△238,569	△35.0
합 계	48,727,830	55,681,700	55,862,288	55,508,282	△354,006	△0.6

주: 총계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나. 재정구조

2020년도 예산안의 행정안전부 소관 재정구조는 일반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개 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 간 내부거래 및 재원 이전은 없다.

[2020년도 예산안 행정안전부 소관 재정흐름도]

(단위: 백만원)

일 반 회 계	
세 입 58,524	세 출 55,066,15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세 입 2,284	세 출 442,131

주: 총계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2020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일자리 창출 지원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② 국민 불안이 큰 분야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투자 및 재난·재해예방 사업 등 지역안전 강화, ③ 주민소통협력 공간 조성 및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주민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활성화를 추진하는 지역사회 혁신 등 생활밀착형 지역중심사업에 중점을 두었으며, ④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적용을 통한 전자정부 시스템의 지능화 및 환경변화와 수요를 반영한 전자정부 서비스 고도화, ⑤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 봉환과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국민이 공감하는 과거사 문제해결을 위해 투자를 확대하였다.

2020년도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지방교부세의 경우 2020년 보통교부세 산정 시 수요자체노력 분야에 적용될 지표인 일자리 창출 항목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련 항목은 특정 재정지출 증가시 인센티브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출감소 노력을 장려하여 재정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수요자체노력 분야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또한 소방안전교부세는 소방직 국가직화를 전제로 교부세율을 인상하여 편성하였는데 당초 2019년으로 예정되어 있던 소방직 국가직화 및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 관련 법률 개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률 개정에 따른 신속하고 면밀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둘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의 경우 2018년 100억원에서 2020년 예산안 기준 743억 4,900만원으로 사업액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동 사업예산

에 2020년 특별교부세 459억 8,500만원을 합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이는 전체적인 지원 예산 규모 파악이 어렵고, 보조사업과 특별교부세 사업은 사업절차가 상이하며, 특별교부세의 세부 집행은 연도 중에 가변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셋째, 공공자원 개방·공유 관리시스템 운영 사업의 경우 해당 시스템을 구축하여 온라인으로 공공자원을 개방·공유하게 되면 정보소외계층의 경우 공공자원 이용이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고, 공유자원과 달리 국유자원의 경우 사회적 취약계층의 무상이용을 위해 필요한 법률개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2020년 사업시행 이전에 관련 법령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지방교부세¹⁾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이다. 지방교부세의 주요 기능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조정과 재원보장이다. 현행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지역현안, 국가지방협력, 재난안전관리),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된다.

현행 지방교부세의 재원은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의 경우 내국세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이 재원이며, 해당 재원의 97%는 보통교부세, 3%는 특별교부세의 재원이다. 특별교부세는 지역현안특별교부세에 총액의 40%, 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에 총액의 10%, 재난안전특별교부세에 총액의 50%가 배분된다.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총액을 재원으로 교부하며,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액의 20%(2020년 예산안 편성기준 45%)²⁾에 해당하는 금액이 재원이다.

황수환 예산분석관(shhwang@assembly.go.kr, 788-4643)

1) 코드: 일반회계 1600

2) 소방안전교부세율은 2018년 20%에서 2019년 35%, 2020년 45%로 인상될 계획으로 예산안에는 소방안전교부세율이 45%로 반영되었다. 하지만 소방직국가직화 도입이 지연되면서 2019년 소방안전교부세 인상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고, 2020년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을 위한 같은 법 개정역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2020년 지방교부세 자원 현황]

구 분	재 원
보통교부세	내국세 × 19.24% × 97%
특별교부세	내국세 × 19.24% × 3%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특별교부세 총액의 40%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	특별교부세 총액의 10%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특별교부세 총액의 50%
부동산교부세	종합부동산세 총액
소방안전교부세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액 × 20% (2020년 예산안 기준 45%)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성

지방교부세는 행정안전부의 지방교부세 프로그램에 편성되어 있으며, 2020년도 예산안은 총 52조 3,052억 9,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564억 8,600만원이 감소하였다. 구체적으로 보통교부세가 46조 7,108억원 8,900만원으로 전년대비 8,917억 4,6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교부세의 경우 지역현안 특별교부세가 5,778억 6,700만원으로 전년대비 113억 200만원 감소하였고,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가 1,444억 6,700만원으로 27억 5,800만원 감소하였으며, 재난안전 특별교부세가 7,223억 3,300만원으로 전년대비 137억 9,000만원 감소하였다. 또한, 부동산교부세의 2019년 예산액은 3조 3,209억 7,000만원으로 전년대비 4,715억 7,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소방안전교부세는 8,287억 7,200만원으로 전년대비 2,912억 7,000만원 증액되었다.

전체적으로 내국세 세입예산안이 전년 대비 감소함에 따라 내국세의 19.24%가 재원인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의 예산안이 전년 대비 1.9% 감소하였다. 또한 부동산교부세의 경우 그 재원이 되는 종합부동산세의 세입예산안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 대비 16.5% 증가하였으며, 소방안전교부세의 경우 소방안전교부세율이 2019년 대비 인상(2019년 27.5%³⁾ → 2020년 45%)됨에 따라 54.2% 증가하였다..

3) 당초 2019년 예산 확정 시 2019년 7월 1일부터 소방직국가직화 전환을 시행하고 이에 따라 소방안전교부세율을 법령에 35%로 인상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2019년 연도별 예산에는 소방안전교부세 인상분인 15%p(20% → 35%)의 절반인 7.5%p를 인상하는 것으로 계상되어 2019년 예산 기준 소방안전교부세율은 27.5%이다.

[2020년도 지방교부세 프로그램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보통교부세	42,469,616	47,602,635	47,602,635	46,710,889	△891,746	△1.9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525,397	588,899	588,899	577,867	△11,302	△1.9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	131,349	147,225	147,225	144,467	△2,758	△1.9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656,747	736,123	736,123	722,333	△13,790	△1.9
부동산교부세	1,780,100	2,849,400	2,849,400	3,320,970	471,570	16.5
소방안전교부세	417,260	537,502	537,502	828,772	291,270	54.2
합계	45,980,469	52,461,784	52,461,784	52,305,298	△156,486	△0.3

자료: 행정안전부

1-1. 보통교부세 산정 시 수요자체노력 항목 관련 문제점

가. 현 황

보통교부세는 각 지방자치단체 중 매년 기준재정수입(수입)이 기준재정수요(지출)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그 미달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배분액을 산정한다. 기준재정수입과 기준재정수요의 산정은 각각 기초수입액¹⁾ 및 기초수요액²⁾에 보정수입액³⁾ 및 보정수요액⁴⁾을 더하고 추가적으로 수입과 수요 분야의 지방자치단체 자체노력⁵⁾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그런데 기초수요액과 보정수요액은 해당 자치단체의 인구 수, 면적, 인구구조(고령층 비율 등) 등을 반영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지출감소에 대한 유인이 없고, 기초수입액과 보정수입액은 지방자치단체의 과거 세수에 기반하여 산정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세수를 확충하면 기초수입액 또는 보정수입액이 증가하여 재정부족액이 감소함에 따라 결국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배분액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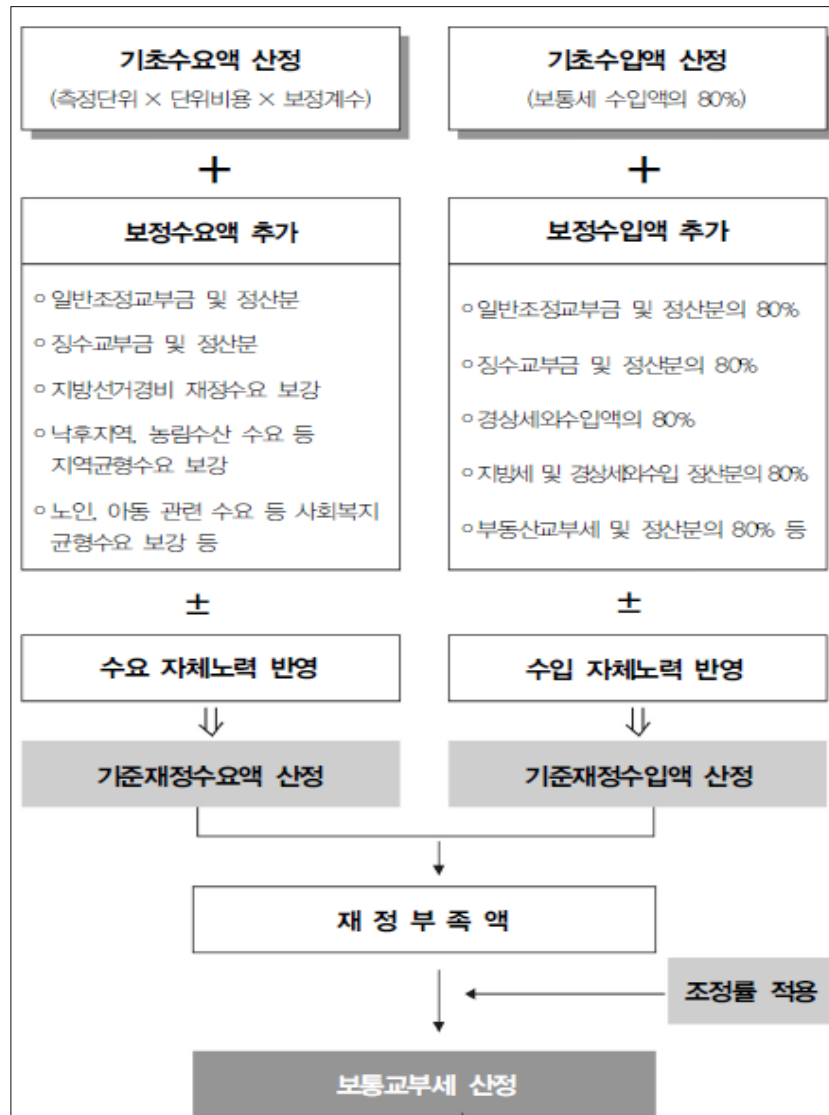
따라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출감소를 위한 유인은 없고, 세수를 확충하면 보통교부세 배분액이 감소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 확보 노력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8조의3⁶⁾에 따라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 산정 시 건전재정운동을 유도

황수환 예산분석관(shhwang@assembly.go.kr, 788-4643)

- 1) 기준세율(「지방세법」에 따른 표준세율에 80%를 곱한 세율)로 산정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통세 수입액을 반영하는 분야이다.
- 2) 기초수요액은 각 지자체의 인구, 면적, 공무원수 등 기초적인 행정에 필요한 수요를 반영하는 분야이다.
- 3) 지방자치단체의 결산기준 보통세 수입액 및 세외수입 등을 반영하는 분야이다.
- 4) 광역시·도가 기초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시·군조정교부금, 낙후지역 개발 등 지역의 특성, 사회복지·문화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산정한 금액 등을 반영하기 위한 분야이다.
- 5)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동을 위해 운영되는 분야로 기준재정수입은 새로운 세원발굴 등 세수확충 관련 지표 등으로 구성되고, 기준재정수요는 행사성 경비 절약과 같은 지출 감소를 위한 지표 등으로 구성된다.
- 6)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8조의3(건전재정운동을 위한 자체노력 반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동을 유도·촉진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과 제8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별로 건전재정운동을 위한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할 수 있다.

· 촉진하기 위한 수요 자체노력 및 수입 자체노력 분야를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수요 자체노력 분야는 지출 절감을 장려하기 위한 항목으로 구성되며, 수입 자체노력 분야는 세수확충을 장려하기 위한 항목으로 구성된다.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



자료: 행정안전부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할 때 항목 및 산정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019년 보통교부세 산정시에는 수입 자체노력의 경우 7개 항목에 인센티브 1조 927억원, 페널티 1조 5,973억원으로 인해 총 5,046억원의 기준재정수입액 순증가효과가 발생하였고, 수요 자체노력의 경우 8개 항목에 인센티브 1조 1,429억원, 페널티 2,953억원이 부여되어 8,476억원의 기준재정수요액 순증가효과가 발행하였다.

[최근 3년간 수입자체노력 항목별 자치단체별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분포]

(단위: 억원)

구 분	2017			2018			2019		
	인센티브 (A)	페널티 (B)	순효과 (A-B)	인센티브 (A)	페널티 (B)	순효과 (A-B)	인센티브 (A)	페널티 (B)	순효과 (A-B)
지방세 징수율 제고	2,308	1,596	712	2,700	832	1,868	4,904	449	4,455
지방세 체납액 축소	32	19,130	△19,098	285	13,788	△13,503	394	11,710	△11,316
경상세외수입 확충	3,335	180	3,155	3,604	95	3,509	4,558	59	4,499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345	4,504	△4,159	1,410	3,260	△1,850	1,040	3,051	△2,011
탄력세율 적용	16	1,494	△1,478	22	610	△588	31	483	△452
지방세 감면액 축소	0	619	△619	0	504	△504	0	221	△221
적극적세원 발굴 및 관리	0	0	0	0	0	0	0	0	0
수입자체노력 총액	6,036	27,523	△21,487	8,021	19,089	△11,068	10,927	15,973	△5,046

자료: 행정안전부

[최근 3년간 수요자체노력 항목별 자치단체별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분포]

(단위: 억원)

구 분	2017			2018			2019		
	인센티브 (A)	페널티 (B)	순효과 (A-B)	인센티브 (A)	페널티 (B)	순효과 (A-B)	인센티브 (A)	페널티 (B)	순효과 (A-B)
인건비 절감	692	44	648	938	30	908	947	88	859
지방의회경비 절감	45	3	42	43	2	41	45	2	43
업무추진비 절감	394	0	394	423	0	423	409	0	409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454	1,693	△1,239	522	1,202	△680	1,057	586	471
지방보조금 절감 (민간이전경비)	3,972	1,059	2,913	2,557	2,774	△217	8,929	136	8,793
지방청사관리 운영	2,331	10	2,321	2,142	8	2,134	0	7	△7
민간위탁금 절감	0	144	△144	0	156	△156	0	231	△231
읍면동 통합 운영	73	0	73	45	0	45	42	0	42
수요자체노력 총액	7,961	2,953	5,008	6,670	2,953	3,717	11,429	2,953	8,476

자료: 행정안전부

나. 분석의견

지출감소 유도 및 효율적인 지출을 위한 수요 자체노력 분야에 신설된 일자리 창출 지원 지표는 동 분야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반영 지표는 인건비 절감 지표와 상충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수요 자체노력 분야가 아닌 다른 정책 수단(특별교부세 활용 등)으로 해당 지표의 목적을 달성할 필요성이 있다.

2019년 수요 자체노력 분야의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기존 수요 자체노력 분야는 ‘인건비 건전 운영’, ‘지방의회 경비 절감’, ‘업무추진비 절감’,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지방보조금 절감’, ‘지방청사 관리·운영’, ‘민간위탁금 절감’, ‘읍면동 통합 운영’의 8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나 2020년부터는 일자리 창출 항목(2020년 보통교부세 산정시 2018년 결산분 적용)이 신설되어 9개 항목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인건비 건전 운영 항목에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세부지표로 추가(2020년 보통교부세 산정시 2018년 결산분 적용)되었다.

[2018년 신설된 수요 자체노력항목 세부지표 산정방식]

○ 일자리 창출 항목 산정방식
$\{(전전전년도 대비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연평균 고용률 증가분 \times 70\%) + (전전전년도 대비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연평균 업체수 증가율 \times 30\%)\} \times \text{해당 지방자치단체 고용분야 결산액의 } 10\%$ ※ 연평균 고용률 증가분 또는 연평균 업체수 증가율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 ※ 2018년도 결산분부터 적용한다.
○ 인건비 건전 운영 항목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세부지표 산정방식
[2018년 결산분] $\{\text{해당 지방자치단체 당해연도 전환비용} - \text{해당 지방자치단체 전년도 전환비용}\} \times 20\%$ ※ 2018년도 전환비용에 2017년 9월~12월 실적을 포함하되, 2017년도 전환비용에서는 동 기간의 전환비용을 제외한다. [2019년 이후 결산분] $[1 - 1/2 \times \{(\text{해당 지방자치단체 전년도 전환비용} \div \text{해당 지방자치단체 당해연도 전환비용}) + 2018년 이후 당해연도 전환비용 대비 전년도 전환비용 비율의 평균\}] \times \text{당해연도 전환비용} \times 20\%$ ※ 동종 지방자치단체의 전환비율(비정규직 대비 정규직 전환인원) 평균을 상회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해당 값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 ※ 전환비용 = 정규직 전환인원 $\times$ 1인당 전환비용(전국 공통기준 적용)

자료: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을 바탕으로 재작성

그런데, 수요 자체노력 분야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출감소 노력을 장려하여 재정 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분야로 지출감소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일자리 창출 항목을 신설하여 운영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다.

또한 인건비 건전 운영 항목에 추가된 세부지표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세부지표를 살펴보면 정규직 전환비용의 전년대비 증가분을 기초로 산정되고, 지출 증가에 따라 보통교부세가 증가되는 방향으로 운용되어 인건비 건전 운영 항목의 다른 항목이 인건비 절감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건비 건전 운영 항목 및 수요 자체노력 분야의 세부 지표로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결론적으로 행정안전부가 수요 자체노력의 신규 항목에서 목표로 하는 일자리 창출 지원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같은 정부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협력 유도는 수요 자체노력 분야가 아닌 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 등을 활용하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다.

1-2.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세율 인상 관련 고려사항

가. 현황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이다. 동 사업의 2020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2,912억 7,000만원이 증액된 8,287억 7,2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0년도 소방안전교부세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소방안전교부세	417,260	537,502	537,502	828,772	291,270	54.2

자료: 행정안전부

나. 분석의견

정부는 소방직 국가직화 및 이에 따른 소방직 충원의 재원 보전을 위하여 2019년 예산에 반영된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분을 소방직 국가직화 도입 지연에 따라 불용할 계획으로, 이는 중앙정부 정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측면이 있으므로 2020년 예산안에 반영된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분은 관련 법률개정, 각 지방자치단체별 적절한 배분 기준 마련 등 후속 절차를 원활하게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은 현행 법령상으로는 국세인 담배분 개별소비세액¹⁾에 2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정부는 ‘지방재정분권 추진 방안(2018. 10. 30., 관계부처 합동)’에 따라 소방직 국가직화와 연계하여 소방안전교부세율을 인상하고 인상된 소방안전교부세는 소방직공무원의 인건비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국회와 협의하

황수환 예산분석관(shhwang@assembly.go.kr, 788-4643)

1) 담배분 개별소비세는 권련 담배 기준으로 한 갑당 594원이며, 2020년 정부 세입예산안 기준으로 1조 8,417억원의 세입이 예상된다.

여 2019년 예산 기준으로는 2019년 하반기(7월 1일)부터 35%로 교부세율을 인상하는 것으로 예정하여 예산은 인상분(15%p)의 절반을 반영한 교부세율 27.5%(20% + 7.5%)를 기준으로 편성하였다.

그런데, 소방직 국가직화와 관련된 논의가 지연되어 2019년 9월 현재 관련 규정인 「지방교부세법」 제4조2)에 대한 개정 역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며, 정부 및 국회는 2020년 1월 소방직 국가직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법안 내용을 수정할 계획으로 소방직 국가직화 관련 법률개정이 완료되더라도 2019년 인상분에 해당하는 1,536억 6,800만원의 소방안전교부세는 전액 불용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2019년 및 2020년 교부세율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9년	2020년
교부세율 20%에 따른 교부세액 (A)	383,834	368,343
총 교부세액(2019년 27.5%, 2020년 45%) (B)	537,502	828,772
차액(B-A)	153,668	460,429

자료: 행정안전부

또한 소방직 국가직화 및 이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 인상이 완료되더라도 2020년 교부세 인상분인 4,604억 2,900만원은 소방직 국가직화에 따른 인건비 보전액으로 기존 교부세 배분기준이 아닌 각 지방소방청의 인건비 지출과 관련된 새로운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되어야 하기 때문에 배분기준 마련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 절차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행정안전부는 2019년에는 법률의 개정 전 교부세율인 20%에 따른 배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고 인상분은 배분기준이 없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총액만

2) 「지방교부세법」

제4조(교부세의 재원) ① 교부세의 재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중 략)

3.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② 교부세의 종류별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중 략)

5. 소방안전교부세: 제1항제3호의 금액 (중 략)

제공하여 해당 금액이 불용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에는 큰 영향이 없다는 설명이다. 또한 인상된 소방안전교부세에 대한 배분기준은 내부적으로 마련하고 있으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법률이 의결되는 대로 이를 공개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정부는 소방직 국가직화를 전제로 2017년 하반기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소방공무원 확충을 추진하고 있고, 2019년 6월말 기준으로 8,561명의 소방공무원이 확충된 상황이기 때문에 2019년 소방안전교부세 인상분 불용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는 소방직 국가직화 관련 법률이 개정 완료되는 대로 배분 관련 기준을 합리적으로 신속하게 마련할 필요성이 있고, 배분 기준에 정부 계획에 따른 소방공무원 충원 실적 등 소방직 국가직화에 따른 지방재정의 부담 정도를 적절하게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연도별 소방공무원 확충 계획 및 실적 현황]

(단위: 명)

실적 합계	2017년 하반기		2018년			2019년(6월말 기준)		
	계획	실적	계획	실적	미반영	계획	실적	미반영
8,561	1,500	1,500	3,431	3,404	27	3,915	3,657	258

주: 실적은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 등을 통한 직제 증원 실적이고 미반영은 계획 대비 직제 증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인원의 수이다.

자료: 소방청

가. 현 황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¹⁾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을 지원하여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동 사업은 2020년 신규사업으로 예산안에는 743억 4,9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0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10,000	0	0	74,349	74,349	순증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기반 조성	10,000	0	0	71,161	71,161	순증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0	0	0	3,188	3,188	순증

자료: 행정안전부

동 사업의 경우 2018년 고용위기지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추가경정예산(60억원) 및 예비비(40억원, 목적예비비)를 통해 한시적으로 추진되었다가 2018년 말 발표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2018. 12. 20, 관계부처 합동)」에 동 사업이 포함되어 2019년의 경우 예비비(총 533억 3,500만원, 목적예비비 205억 4,000만원/일반예비비 327억 9,500만원) 사업으로 동 사업이 추진 중이며, 2020년 정부 예산안에 편성되어 2020년에서 2022년 3년 간 한시사업으로 동 사업을 추진예정이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기반 조성 내역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의 4%를 지원하는 사업²⁾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수요를 반

황수환 예산분석관(shhwang@assembly.go.kr, 788-4643)

1) 코드: 일반회계 1349-3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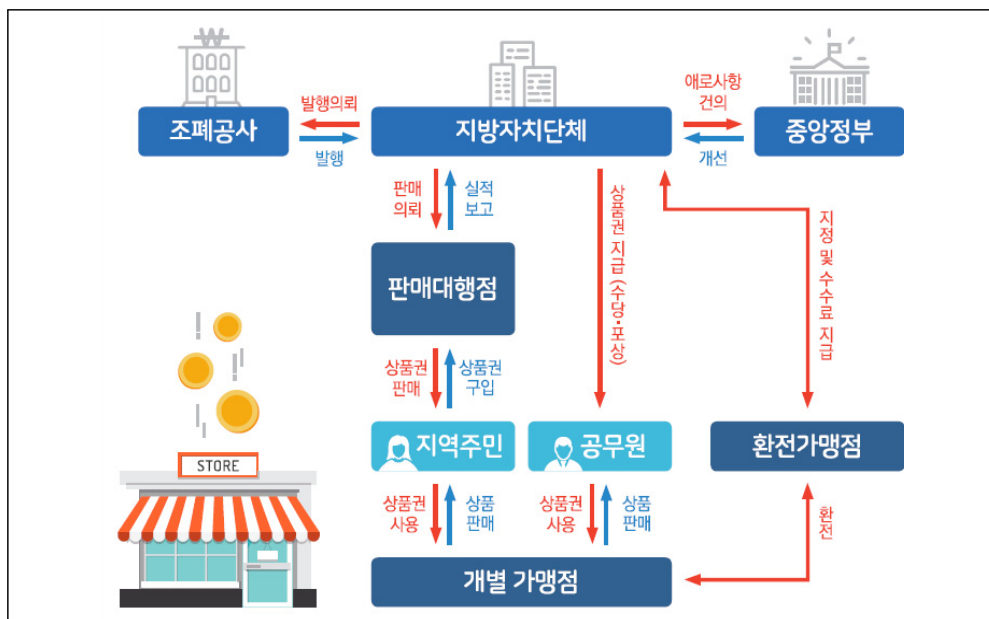
2) 발행액의 4%범위 내에서 발행에 따른 제반경비인 발행비용, 할인비용, 판매비용, 환전비용 및 기타 비용 등을 지방자치단체 수요에 따라 지원

영하여 편성되었으며, 전액 자치단체경상보조금(330-01목, 국고보조율 50%)으로 편성되어있다.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사업은 동 사업의 운영예산으로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공모사업(3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홍보(1억 3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절차를 보면, 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사(대표적으로 조폐공사)를 공모하여 선정한 후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② 판매대행점에 판매를 의뢰하면 ③ 판매대행점이 지역주민에게 상품권을 판매하고 ④ 지역주민이 상품권을 사용하여 재화 및 서비스를 구매하면 ⑤ 이를 통해 상품권을 획득한 개별가맹점이 환전가맹점(금융기관)에서 액면가로 상품권을 교환하고 ⑥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환전금액 및 수수료를 환전가맹점에 정산하는 과정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이 발행·유통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절차(예시)]



자료: 행정안전부

나. 분석의견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첫째, 동 사업은 최근 3년(2018 ~ 2020년)간 매년 큰 폭으로 증액되고 있는데 반하여 해당 사업의 지역경제에 대한 실질적 효과 분석은 2020년에 이루어질 예정으로 사업성과에 기반한 사업규모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

동 사업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8년 추경사업으로 신규 편성되어 2018년 100억(예비비 포함), 2019년 884억 700만원(특별교부세 포함), 2020년 1,203억 3,400만원(특별교부세 및 사업운영 예산 등 포함)으로 사업액이 연도별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사업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사업예산	4,000	0	74,349
예 비 비	6,000	53,335	0
특별교부세	0	35,072	45,985
합 계	10,000	88,407	120,334

자료: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동 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호응도가 좋고, 2019년 전국단위로 확대한 후에도 월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 및 판매액 현황을 보면 판매 비율³⁾이 2019년 5월 이후로는 90% 이상을 기록하는 등 사업의 일차적인 효과성이 검증된 측면이 있어 사업규모를 확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2019년 하반기 지방행정연구원 연구과제, 2020년 연구용역예산(5,000만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경제규모를 고려한 적절한 발행액, 할인비율, 발행주체(기초지방자치단체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해 연구용역을 수행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3) 발행액의 경우 해당 월에 발행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이지만 판매액의 경우 해당 월 뿐만 아니라 이전 월에 발행된 지역사랑상품권의 해당 월 판매액에 포함되었을 수도 있다.

[2019년 지역사랑상품권 월별 발행액 및 판매액 현황]

(단위: 백만원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계
발행액	122,801	82,384	116,528	113,360	211,564	248,868	440,380	1,335,885
판매액	93,437	61,612	63,468	93,129	231,310	256,853	428,365	1,228,174
판매 비율	76.1	74.8	54.5	82.2	109.3	103.2	97.3	91.9

자료: 행정안전부

하지만, 동 사업의 경우 발행액을 기준으로 총 발행액 대비 8~10%⁴⁾의 비용이 소요되고, 지역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⁵⁾ 및 그에 대한 단속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순히 발행액 대비 판매액이 높다는 것이 사업의 실질적 성과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 및 운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투입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및 소상공인 진흥을 위한 직접사업을 수행했을 경우보다 사업 효과가 더 큰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동 사업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경우 타 지역으로의 소비 유출이 차단되어 지역경제활성화 효과⁶⁾가 있을 수 있지만, 국가 단위에서 보면 소비지출 총액은 동일하면서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에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과 같이 특정지역이 아닌 전체 수요 대상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형태의 사업방식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원할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인 소상공인 진흥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국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비용만 추가지출되는 문제점도 나타날 수 있어, 소상공인 진흥 효과와 국가 경제적인 비용 지출의 면밀한 비교·분석이 필요하다.

4) 할인율 5%(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 발행수수료 3%(모바일 1.7~1.9%), 판매대행점 및 환전가맹점 수수료 각각 0.5%(총 1%)가 소요

5) 지역사랑상품권을 가맹점인 소상공인과 공모하여 별도의 재화 및 서비스 구매 없이 환전하여 할인된 판매액과 액면가의 차액에 대해 부당이득을 획득

6) 동 사업 이전에 자체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던 춘천시, 화천군, 양주군의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연구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수행한 「고향사랑 상품권의 경제적 효과분석 및 제도화 방안(2017. 12)」에서도 기존 역외지출의 역내지출 전환분에 대한 부가 가치를 고려하여 지역경제활성화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정부예산의 효과적인 지출을 위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역경제활성화 효과 등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통해 사업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행정안전부는 고용위기지역 등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금의 경우 사업예산 일부는 특별교부세를 활용하여 지원예정인데 이는 전체적인 사업규모 파악이 어렵다는 점, 보조사업과 특별교부세 지원 사업의 사업절차가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동 사업의 2019년 추진 현황을 보면 고용위기지역⁷⁾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의 4%를 목적예비비를 통해 지원하였고, 그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경우 일반예비비로 발행액에 2%, 특별교부세로 발행액의 2%, 총 발행액의 4%를 지원하였으며,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⁸⁾의 경우 예비비 지원은 없고, 특별교부세로만 발행액의 2%를 지원하였다.

[2019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현황]

(단위: 개, 백만원)

구분	지원 지자체 수	목적예비비		일반예비비		특별교부세		지원액 합계
		지원 비율	지원액	지원 비율	지원액	지원 비율	지원액	
일반지역	131	0	0	2%	32,795	2%	32,795	65,590
고용위기지역	8	4%	20,540	0	0	0	0	20,540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4	0	0	0	0	2%	2,277	2,277
합계	143	-	20,540	-	32,795	-	35,072	88,407

주: 지원비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 대비 국비인 보조사업예산 지원액의 비율

자료: 행정안전부

7) 울산광역시 동구 / 전라북도 군산시 / 전라남도 목포시, 영암군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8)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 화성시

동 사업의 2020년 추진계획을 보면 2019년과 유사하게 고용위기지역과 강원산불⁹⁾ 및 포항지진 피해지역의 경우 사업예산으로 발행액의 4%를 지원하고, 그 외의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예산으로 발행액의 2%, 특별교부세로 발행액의 2%를 지원하며,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의 경우 특별교부세로만 발행액의 2%를 지원한다.

[2020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계획]

(단위: 개, 백만원)

구분	지원 지자체 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		특별교부세		지원액 합계
		지원 비율	지원액	지원 비율	지원액	
일반지역	131	2%	43,581	2%	43,581	87,162
고용위기지역, 강원 산불 및 포항지진 피해지역	14	4%	27,580	0	0	27,580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4	0	0	2%	2,404	2,404
합계	149	-	71,161	-	45,985	117,146

자료: 행정안전부

그런데, 이와 같이 사업예산과 특별교부세를 혼합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추진 방식은 ① 전체적인 지원 예산 규모 파악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 ② 자치단체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사업 신청, 보조사업 확정, 대응사업비 마련, 보조사업비 정산 등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지만 특별교부세의 경우 이와 같은 절차를 준수할 필요성이 없다는 점, ③ 특별교부세의 세부집행 내역은 국회의 심의·확정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 확정 이후에도 지원비율 및 금액이 행정안전부의 검토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절한 사업예산 확보 방식이 아니라고 보인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동 사업의 사업예산 내에서 지원비율 등을 조정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거나 전체적인 사업 규모에 맞는 예산을 확보하여 동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9)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고성군

셋째, 동 사업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발행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지방자치단체 실집행 관리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의 경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제1항¹⁰⁾에 따라 ① 보조사업 완료, ② 보조사업 폐지, ③ 회계연도 종료시 각각 보조금에 대한 정산보고서와 실적보고서를 제출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동 사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발행 비용을 지원하게 되면, 보조금의 정산 시점을 지역사랑상품권의 ① 발행, ② 판매, ③ 정산완료¹¹⁾ 중 어느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대부분 판매(8월 기준 89%)되고 있으며, 판매된 상품권이 거의 즉시 환전(8월 기준 93%)되고 있다는 점, 상품권 유통기한이 최대 5년이라 발행 시점 이후 판매액을 연도별로 구분하여 정산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할인된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시기를 보조금의 정산 즉 실집행 완료 시점으로 판단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의 설명대로 일부 낙전(落錢)¹²⁾을 제외하면 지역사랑상품권이 발행과 환전 사이에 금액차이가 미미할 수 있어 보조사업 정산 시점을 발행시점으로 정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① 국가회계는 소액이라도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② 지류상품권의 고유번호를 통해 보조사업이 투입되어 발행된 상품권의 정산완료 시점 파악은 가능하며, ③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이 완료되는 시점은 해당 지역사랑상품권의 판매시점이 아니라 할인되어 판매된 지역사랑상품권이 액면가격으로 환전되어 그 정산이 완료되는 정산완료 시점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10)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폐지의 승인을 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보조금법」 제27조와 「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아야 하며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을 반환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한 경우에 한한다)을 반납 받아야 한다.
(이하 생략)

11) 환전가맹점이 액면가로 정산해준 지역사랑상품권에 제반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정산한 시점을 말한다.

12) 정액 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의 구매자가 분실 및 유효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사용하지 않는 상품권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예산 회계의 명확성을 위하여 보조금 정산 수행 후에도 국비로 할인발행을 지원한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이 완료되었는지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가. 현 황

행정안전부는 지방행정에 대한 총괄부처로서 개별 법령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으로 이용하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2020년 예산안에 지방자치단체 공통이용 정보시스템 중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지방세정보시스템 및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먼저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¹⁾의 경우 지방공무원 인사·복무시스템 통합을 통해 근무혁신 지원 및 인사관리 효율화 도모, 정규직 확대에 따른 공무원 관리시스템 도입, 챗봇 및 모바일 기반 운용 등 신기술 반영을 내용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간 총 사업비 297억 2,100만원을 투입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 예정이다.

다음으로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위택스)²⁾의 경우 맞춤형 납세서비스 및 자동채움 전자신고 등 대국민 납세편의 개선, 업무절차 간소화 및 수기업무 자동화, 클라우드 기반, 빅데이터 및 공간정보 융합 등 신기술 도입을 내용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1,608억원을 투입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마지막으로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³⁾의 경우 부과·징수·채납 등을 단일시스템으로 처리, 지자체 간 세외수입 정보 공동활용 및 채납관리 기능 강화, 모바일 간편결제 및 카카오페이 등 신규납부수단 확대를 내용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315억 1,000만원을 투입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은 「전자정부법」 제72조제4항⁴⁾에 따라 한국지역정보

황수환 예산분석관(shhwang@assembly.go.kr, 788-4643)

1)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운영 세부사업(1138-501) 예산으로 추진

2) 지방세정보화추진 세부사업(1333-500) 예산으로 추진

3)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 세부사업(1333-503) 예산으로 추진

4) 「전자정부법」

개발원에 위탁 사업형태로 진행하기 때문에 사업액은 전액 민간위탁사업비(320-02목)로 편성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 공통 이용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현황]

구 분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근거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6조의2	「지방세기본법」 제135조 및 제136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사업내용	· 지방공무원 인사·복무 관리시스템 통합 및 기능 강화 · 정규직 확대에 따른 공무직관리시스템 도입 · 신기술 반영(챗봇, 모바일 기반 운용)	· 맞춤형 납세서비스 및 자동채움 전자 신고 등 대국민 납세편의 개선 · 업무절차 간소화 및 수기업무 자동화 · 클라우드 기반, 빅데이터, 공간정보 융합 등 신기술 도입	· 부과, 징수, 체납 등을 단일 시스템으로 처리 · 지자체 간 세외수입 정보 공동활용 및 체납관리 기능 강화 · 모바일 간편결제, 카카오 페이 등 신규 납부수단 확대
개발기간	3년 (2020~2022년)	3년 (2019~2021년)	3년 (2019~2021년)
총 사업비 (지방비 포함)	297억 2,100만원	1,608억 2,700만원	315억 1,000만원
2020년 국비 예산액	10억원	224억 9,300만원	10억원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제72조(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설립 등) ①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정보화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중 략)

④ 행정기관등의 장은 지역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발원에 소관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나. 분석의견

행정안전부는 해당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첫째, 행정안전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으로 이용하는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대하여 해당 정보시스템의 성격에 따른 국비 예산 지원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및 차세대 지방세외 수입정보시스템의 구축사업 관련 총 사업비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을 보면 차세대 표준인사정보시스템과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경우 10% 내외의 비율로 지원하는데 반하여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의 경우 구축비용의 30%를 국비로 지원하고 있다.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비용의 국비 분담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차세대 표준인사정보시스템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국비	3,000	48,200	3,000
지방비	26,721	112,627	28,510
합계	29,721	160,827	31,510
국비분담 비율(%)	10.0	30.0	9.5

자료: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의 경우 대국민 시스템이면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으로 이용하는 중요도가 높은 시스템으로 응용소프트웨어 개발비용은 국비로 부담하고, 하드웨어 및 상용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은 지방비로 부담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정보시스템 구축 시기마다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해당 정보시스템의 국비 분담 비율을 정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역할의 기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보시스템 도입과 관련된 분담 비용의 낮은 예측성 등의 문제점이 있다.

사업내용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국비-지방비 분담 비율을 마련하기는 어렵지만 위와 같은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국비 분담 비율 확정 시 고려해야 하는 중요 요소 및 표준적인 국비-지방비 분담 비율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및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활용 지방자치단체에서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인천광역시는 자체적으로 제작한 정보시스템을 운용한다는 사유로 제외되어 있는 바 행정안전부는 서울특별시와 협의하여 새롭게 구축되는 정보시스템이 보다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지방세정보시스템의 경우 행정안전부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정보시스템 외에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가 별도의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으로 행정안전부는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시 별도로 지방세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보시스템을 통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별도로 지방세정보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던 지방자치단체 중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는 더 이상 별도 지방세정보시스템을 운용하지 않고, 행정안전부가 주도하여 구축하는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예정이다.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행정안전부	이택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사이트명	위택스 (wetax.go.kr)	서울시 ETAX (etax.seoul.go.kr)	부산광역시 사이버 지방세청 (etax.busan.go.kr)	대구광역시 사이버 지방세청 (etax.daegu.go.kr)	인천광역시 전자고지 납부시스템 (etax.incheon.go.kr)
구축시기	2006.12월	2001.6월	2004.5월	2009.1월	2005.12월
서비스 범위	전국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회원수 (2018. 5. 기준)	733만명	224만명	47만명 (2017.12월 말 기준)	98천명	39만명
초기 구축비용	4,360	시금고 협력 사업으로 구축비용을 시금고에서 부담			
구축 후 유지보수 및 운영비용 (누적)	19,474	운영비 시금고 부담	580	118	202

자료: 행정안전부

또한,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경우에도 기존에 세목별 지방자치단체 별로 별도의 정보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통합하여 전체 지방자치단체가 구축되는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련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채납정보 관리 등 세외수입정보 공동활용을 증진할 계획이다.

그런데, 서울특별시와 소관 자치구의 경우 별도 정보시스템의 운영이 지방자치단체 과세자주권에 포함된다는 점, 기존 운용하던 정보시스템이 행정안전부가 구축하려는 차세대 정보시스템과 기능편차가 크지 않다는 점, 통합된 차세대 정보시스템의 경우 서울특별시의 개별 수요에 따른 추가 기능 관리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및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구축하여 운용하고 있는 정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업무편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및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서울특별시가 사용하도록 협의하겠다는 설명이다.

행정안전부는 서울특별시와 보다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과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전체 지방자치단체가 하나의 창구를 통해 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

III

개별 사업 분석

1

공공자원 개방·공유 관리시스템 운영 관련 법률 개정 필요 등

가. 현 황

공공자원 개방·공유 관리시스템 운영¹⁾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자원 개방·공유 제도의 효율적 운영 및 안정적 서비스 제공으로 공유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2020년 신규사업으로 예산안에는 7억 8,8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0년도 공공자원 개방공유 관리시스템 운영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공공자원 개방공유 관리시스템 운영	0	0	0	788	788	순증
시스템 콜센터 위탁운영	0	0	0	457	457	순증
시스템 위탁운영	0	0	0	331	331	순증

자료: 행정안전부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원을 유희시간이 발생하는 때에 기관 운영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에게 개방·공유하는 서비스이다.

기존에 일부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업무시설·물품 등을 개방하였지만 극소수 자원만을 개방하였고 개방자원에 대한 정보를 각 기관별로 다른 방식을 통해 안내

황수환 예산분석관(shhwang@assembly.go.kr, 788-4643)

1) 코드: 일반회계 1932-506

하여 국민이 통합적으로 공공자원의 개방·공유 서비스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018년 8월부터 시범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32개 중앙부처, 243개 지방자치단체, 16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대국민 정부포털인 정부24(<https://www.gov.kr>)를 통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범사업에 따르면 2018년 8월부터 2019년 6월까지 16,000여개의 시설물을 개방하였고, 이중 일부 시설물인 7,317개의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시설물 당 월별 평균이용횟수는 체육시설이 13.6회로 가장 많았으며 숙박시설 7.1회, 다목적실 6.7회 순으로 활발하게 이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자원 개방·공유 사업의 시범사업 현황]

(단위: 건, 회)

구분	시설물 수	전체 이용횟수	시설물의 월별 평균 이용횟수
강당	979	67,899	6.3
강의실	479	33,249	6.3
기타 (공연장, 전시실, 예식장 등)	245	18,236	6.8
다목적실	236	17,272	6.7
숙박시설	30	2,345	7.1
정보화교육실	17	1,058	5.7
주차장 ¹⁾	2,657	-	6.5
체육시설	651	97,082	13.6
회의실	2,023	118,511	5.3
합계 ²⁾	7,317	-	-

주: 1) 주차장의 경우 여러 차량이 이용할 수 있는 특성상 이용횟수 산정이 어려워 일주일 평균 개방일을 월별 평균 이용횟수 지표로 사용하였다.

2) 주차장의 경우 이용횟수가 다른 시설물의 이용횟수와 기준이 달라 단순 합이 어려워 합계는 시설물 수만 표기하였다.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행정안전부는 2020년에는 2019년 12월 전자정부지원 사업²⁾을 통해 구축완료되는 개방·공유 관리시스템을 통해 개방된 공유자원의 목록 확인 및 신청, 공공자원 관리기관의 공유자원 개방 관리 및 승인 등의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2) 코드: 일반회계 2031-500, 동 시스템 개발 예산: 2019년 27억 5,800만원, 2020년 57억 6,500만원(예산안 기준)

동 사업은 공공자원 개방·공유 관리시스템에 대한 문의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콜센터 및 해당 정보시스템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전액이 관리용역비(210-15목)로 편성되었다.

나. 분석의견

행정안전부는 공공자원 개방·공유 관리시스템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취약계층의 무상사용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하였지만 국유재산의 경우에는 아직 관련 법령이 개정되지 않았으므로 본격적인 사업 시행 전에 관련 법령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국가가 소유한 국유재산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의 경우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추진 이전에는 무상 대부가 법령에 따라 금지되었다.

하지만 저소득계층, 고령계층,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경제적인 부담을 사유로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를 향유할 수 없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에게는 무상 대부가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2019. 7. 2.)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경우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공유재산의 무상대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공유재산 관련 무상 대부 가능 규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5조(무상 대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또는 사업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 기간을 정하여 무상으로 소관 물품을 대부할 수 있다.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주민에게 소관 물품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휴일을 말한다)에 사용할 수 있도록 대부하려는 경우

자료: 행정안전부

하지만 국가가 소유한 국유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포함한 「공공자원의 개방 및 국민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021742, 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이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으로 행정안전부는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의 주무기관으로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와 공공자원의 개방·공유의 법률 근거에 따른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해당 법률안의 국회 확정을 위해 보다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정보시스템을 통한 공공자원 개방·공유 시 정보 소외 계층의 개방·공유 자원 이용이 제약될 수 있으므로 행정안전부는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0년부터 동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면 원칙적으로 정보시스템인 개방·공유 관리시스템³⁾을 통해 국민이 공공자원을 예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공공자원을 정보시스템을 통해 예약하여 사용하도록 할 경우 정보소외계층인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 장노년층(만 55세 이상)의 공공자원 사용이 제약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2018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보고서⁴⁾」에 따르면 일반국민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을 100으로 보았을 때 해당 정보소외계층의 정보화 수준은 68.9로 나타났고, 특히 15세 이상 인구의 30% 이상⁵⁾을 차지하는 장노년층은 정보화 수준이 63.1로 정보소외계층 가운데서도 가장 낮아 동 시스템 도입시 장노년층이 공공자원 활용에서도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

[2018년 기준 정보소외계층의 정보화 수준 현황]

(단위: %)

구분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	장노년층	평균
정보화 수준	74.6	86.8	69.8	63.1	68.9

자료: 한국정보화진흥원, 「2018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보고서」

3) 대국민 공유포털에서 개방·공유 서비스 제공

4) 한국정보화진흥원, 2019. 2.

5)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2019. 5)에 따르면 15세 이상 인구 4,446만명 중 31.1%인 1,384만명이 만 55세이상 장노년층 인구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정보소외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자원은 각 공공자원 관리기관에서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공공자원 예약을 병행하도록 하고, 이용자의 수요가 많은 공공자원의 경우에는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이용시간의 할당을 두는 등의 내용을 사업지침으로 명문화할 예정이다.

하지만 오프라인 병행접수와 공공자원 이용시간 할당 등은 지침에 따른 권유 사항이기 때문에 각 공공자원 관리기관이 정보소외계층을 보호하겠다는 적극행정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보시스템을 통한 예약만 이루어지거나 이용시간 할당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보소외계층이 수요가 많은 공공자원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공공자원 배려와 관련된 제도 시행 여부를 정부혁신 평가 등의 평가제도를 통해 장려하여 각 공공자원 관리기관이 정보소외계층 배려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가. 현 황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시스템 구축 사업¹⁾은 정보주체인 국민이 보다 능동적·적극적으로 정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동 사업은 2020년 신규사업으로 예산안에는 53억원이 편성되었다.

[2020년도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시스템 구축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시스템 구축	0	0	0	5,300	5,300	순증
마이데이터 지원 시스템 구축	0	0	0	5,247	5,247	순증
마이데이터 기반 마련 지원	0	0	0	53	53	순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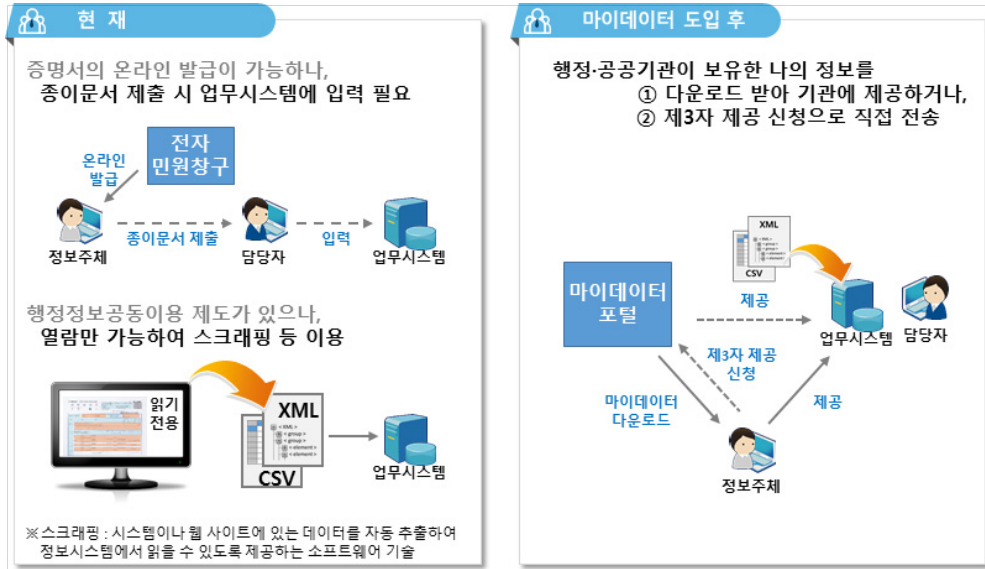
자료: 행정안전부

마이데이터 시스템이란 대국민 단일접점 창구인 정부24를 통해 정보주체가 필요한 정보를 선별적으로 요청하면 정보시스템을 통해 해당 정보만 선별하여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데이터 형태로 제공하고 정보주체는 이를 필요로 하는 제3기관에 이를 제공(다운로드 받아 기관에 제공하거나 제3자 제공 신청)하여 관련 민원 및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하는 정보시스템이다.

황수환 예산분석관(shhwang@assembly.go.kr, 788-4643)

1) 코드: 일반회계 1932-507

[마이데이터 시스템 도입 전·후 변화사항]



자료: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마이데이터 시스템을 통해 ① 행정·공공분야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데이터 기반의 간편한 업무처리방식 구현, ②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통제권 강화 및 분산된 자기정보를 통합하여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국민편의성 증진, ③ 금융, 의료, 통신 등 민간분야에 데이터 기반의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해져 데이터 생태계의 선순환 및 데이터산업 발전의 토대 형성 등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나. 분석의견

마이데이터 시스템이 구축완료되어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유통할 수 있게 되면 기업 등 민간기관에서 동의에 의한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활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는 기존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업²⁾을 통해 행정·공공기관 은행 등 민간기관 등의 민원 업무 처리 시 타 기관에서 구비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동 제도를 통한 대상정보, 이용기관 및

2) 코드: 일반회계 1932-504

이용사무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 4월 현재 166종의 정보를 743개의 기관에서 2,605개의 사무에 이용하고 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도 활용 현황]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04월 까지
대상정보	141종	147종	148종	153종	153종	160종	166종
이용기관	600개	618개	626개	647개	706개	738개	743개
이용사무	2,619개	2,504개	2,520개	2,503개	2,497개	2,573개	2,605개

자료: 행정안전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라 관공서와 금융기관(은행)은 활용빈도가 높은 주민등록표 등·초본,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등은 해당 기관이 직접 증명서를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이데이터 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하더라도 민원인인 국민의 입장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민원서류의 정보를 공동이용이 가능한 정부 및 민간기관에 제출하는 민원처리의 편의성은 크게 개선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³⁾

따라서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마이데이터 시스템은 민원편의 개선보다는 개인정보 자기통제권 강화와 이를 통해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 민간기관에 제공하여 맞춤형 서비스 등을 활용할 수 있다는 도입효과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개인정보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과 이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의 활성화는 행정안전부의 설명대로 동 시스템이 민간분야의 데이터 산업의 발전 토대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국민이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신의 데이터를 동의하에 민간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면 민간기관에서 동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거

3) 행정안전부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각 기관이 직접 증명서를 열람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활용여부를 정보보유기관이 결정하고 있어서 공동이용이 원활히 작동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왔으며, 이에 민원인인 국민이 직접 다른 행정기관이 보유한 민원서류의 정보를 본인의 민원처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민원분야에 마이데이터 시스템을 적용하면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도를 보완하여 민원처리 편의성 역시 상당부분 개선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나 복잡하게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이 제공한 데이터를 빅데이터 분석에 무차별적으로 활용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계 기관 등과 협조하여 은행 및 기업 등 민간기관이 동 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데이터의 활용범위 등을 제한하는 방법(표준 약관 보급 등)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으며, 국민에게도 마이데이터 제공 시 개인정보가 남용될 수 있다는 점을 홍보 등을 통해 알릴 필요성이 있다.

가. 현 황

인구감소 지자체 지원 사업은 인구감소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특성 및 현장 수요에 따라 청년지원사업,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민참여 지역문제해결 확산 사업¹⁾의 내역사업이다. 동 내역사업은 2020년 신규 사업으로 예산안에는 10억원이 편성되었다.

[2020년도 인구감소 지자체 지원 사업의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주민참여 지역문제 해결 확산	4,534	9,040	9,040	15,790	6,750	74.7
인구감소 지자체 지원	0	0	0	1,000	1,000	순증

자료: 행정안전부

나. 분석의견

인구감소 지자체 지원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기존에 추진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등 청년일자리 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및 같은 세부사업의 다른 내역사업인 지방소멸대응 사업과 목적 및 내용이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사업과 차별성을 가지고 동 사업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인구감소 지자체 지원 사업은 지역의 청년층 인구유출에 따른 지역 내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정 기준에 따른 인구감소 지자체에 대하여 공모를 실시

황수환 예산분석관(shhwang@assembly.go.kr, 788-4643)

1) 코드: 일반회계 1938-300

하여 해당 지자체의 특성 및 현장 수요에 따라 청년지원사업,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의 지역맞춤형 사업을 추진한다.

동 사업의 2020년 예산안에는 10억원이 지방자치단체경상보조금(330-01목)으로 편성되었으며, 2개 지방자치단체에 5억원(국비보조율 50%)을 지원하여 공모를 통해 선정된 인구감소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인구감소 지자체 지원 사업 개요]

□ 배경 및 필요성

- 지역의 출산율이 높음에도*, 청년층의 인구유출에 따라 지역 내 인구는 급감하고 있어 지역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적 대응 필요
 - * (2018년 합계출산율) 서울 0.76, 부산 0.9, 대구 0.99 vs 세종 1.57, 전남 1.24, 제주 1.22, 충남 1.19
 - 기존 관련 사업들은 정주여건 개선이나 인프라구축 등에 초점을 두어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직접적 대응에는 부족

□ 사업개요

- 대상지역 : 인구감소 지자체* 중 2개 지역 선정
 - * 최근 5년 간 평균 인구증감율 -5% 이하, 평균 노령인구비율 20% 이상, 평균 생산가능 인구비율 하위 50% 지역 등의 기준 마련
- 수혜범위 : 사업선정 시군(기초지자체 중 자치구 지역 제외)
- 사업기간 : 2021년 12월 31일 까지
- 사업규모 : 총 10억원(국비, 국고보조율 50%) / 매년 2개 지자체에 5억원 지원
- 추진방식 : 지자체 경상보조
- 인구감소 규모가 큰 시·군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여 해당 지자체의 특성 및 현장 수요에 따라 청년지원사업,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을 지역 맞춤형으로 지원
 - * 예시) 위성사무실·인력 유치, 지역 특화 자원을 활용한 브랜드 개발 및 고용창출

그런데, 동 사업의 경우 일정기준에 부합하는 인구감소 지방자치단체가 대상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청년의 해당 지방자치단체 정주 여건 특히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한 청년일자리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고, 동 사업의 수범사례로 들고 있는 위성사무실·인력 유치, 지역 특화 자원을 활용한 브랜드 개발 및 고용창출은 행정안전부가 다른 세부사업 및 같은 세부사업의 다른 내역사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구체적으로 행정안전부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²⁾에서 동 사업과 유사하게 지역공모의 방식으로 취업 및 창업 관련 청년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청

년층이 대상은 아니지만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³⁾에서 내역사업인 마을기업 육성사업⁴⁾을 통해 지역 특화 자원 등을 활용한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인구감소 지자체 지원 내역사업이 편성된 주민참여 지역문제 해결 확산 사업의 내역사업인 지방소멸대응 사업에서는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쇠퇴한 지역주민과 도시청년의 협업을 통해 지역정주 및 맞춤형 일자리 연계 등을 통한 지역활력 제고를 한다는 점에서 사업의 목적 및 내용이 인구감소 지자체 지원 사업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인구감소 지자체 지원 사업과 지방소멸대응 사업 비교]

구분	인구감소 지자체 지원	지방소멸대응
배경 및 필요성	· 청년층의 인구유출에 따라 지역 내 인구 급감, 지역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적 대응 필요	· 고용위기, 지역산업 위축, 공동체 붕괴 등으로 청년 지역유출 증가 ·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쇠퇴한 지역과 청년주도의 지역정주 및 맞춤형 일자리 연계 등을 통해 지역 활력 제고 필요
사업 대상	인구 감소 시·군 지역 중 공모를 통해 2개 지자체 선정	시·군 지역 중 전국 공모를 통해 2개 지역 선정
사업 예산	10억원 (2개 지방자치단체 5억원)	9억원 (지자체 지원예산은 일반용역 공모 결과에 따라 결정)
사업 방식	지자체보조사업 (330-01목)	일반용역 형태 (210-14목)
사업 내용	· 인구감소 규모가 큰 시·군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여 청년정착 지원,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자치단체별 맞춤형 사업 추진 * 예시) 위성사무실·인력 유치(일본 IT 기업), 지역 특화 브랜드 개발 및 고용창출	· 청년들이 지역에서 살아가며 유희공간을 새로운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하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정착 및 정주율 제고 추진
기대 효과	· 청년 등 지역 인구유출 축소, 신규 유입 촉진을 통한 지역 활성화	· 지방생활을 꿈꾸는 청년과 청년이 필요한 지방도시를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청년문제(일자리, 고립)와 지역문제(인구감소, 원도심 쇠퇴)를 함께 해결

자료: 행정안전부

2) 코드: 일반회계 3131-301, 2020년 예산액 2,450억 300만원

3) 코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3131-300, 2020년 예산안 557억 7,200만원

4) 내역사업 2020년 예산안 96억 5,600만원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 지자체 지원 사업은 기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및 마을기업육성 사업과 인구감소 지자체의 인구 감소에 대한 직접적 대응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특정 사업내용을 지정하지 않고 공모사업 형태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지역의 유희공간을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 및 청년들이 선호하는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을 사업내용을 특정하고 있는 지방소멸대응 사업과 사업 내용이 상이하며, 추진방식 역시 동 사업은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비영리단체 등과 계약을 통해 수행하는 지방소멸대응 사업(일반용역비, 210-14 목)과 차별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청년층 인구유출에 따른 지역 내 인구 감소를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사업 공모를 진행할 경우 앞서 언급한 기존 사업들과 사업내용이 유사한 사업이 선정 및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 지자체 지원 사업의 공모사업 선정 시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기존 사업들과 차별성을 가진 인구감소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층 인구 정주라는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청년일자리 사업 등이 발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

가. 현 황

업무용PC 개방형 운영체제(OS) 도입 사업은 공개 소프트웨어인 리눅스를 기반으로 한 개방형 운영체제를 공공기관 인터넷망 PC에 적용하여 기존 윈도우 운영체제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고 PC 도입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보자원관리지원 사업¹⁾의 내역사업이다. 동 사업은 신규 내역사업으로 2020년 예산안에는 3억 9,2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0년도 업무용 PC 개방형 운영체제(OS) 도입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정보자원관리지원	2,995	3,149	3,149	4,331	1,182	37.5
행정업무용PC 개방형 운영체제 (OS) 도입	0	0	0	392	392	순증

자료: 행정안전부

동 내역사업의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행정안전부 부내 PC 300대에 개방형 운영체제를 시범도입 하기 위한 예산 3,900만원(관리용역비(210-15목)), 개방형 운영체제 사용을 위한 호환성 확보 대상 및 이에 따른 전체적인 확산 로드맵과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예산 3억 5,300만원(일반연구비(260-01목)) 등 총 3억 9,200만원이 2020년 예산안으로 편성되었다.

황수환 예산분석관(shhwang@assembly.go.kr, 788-4643)

1) 코드: 일반회계 2039-500

[행정업무용PC 개방형 운영체제(OS) 도입 사업의 2020년 예산 내역]

○ 행정업무용PC 개방형 운영체제(OS) 도입 : 2020년 예산안 392백(순증)
① 개방형OS 인터넷PC 시범 도입 : 39,000천원
· 개방형OS 도입 : 30천원 × 300대 = 9,000천원
· 보안SW 커스터마이징 : 5,000천원 × 6종 = 30,000천원
② 개방형OS 공공기관 도입방안 연구 : 353,000천원 × 1식 = 353,000천원

자료: 행정안전부

나. 분석의견

행정안전부는 행정업무용PC 개방형 운영체제(OS; Operating System) 도입 사업을 통해 개방형 운영체제의 보안성 및 호환성을 충분히 검증할 필요가 있으며 전 부처 개방형 운영체제의 민간 활용이 어느 정도 활성화된 이후에 전 부처에 대한 개방형 운영체제 확산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행정안전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인정한 개방형 운영체제를 동 사업을 통한 도입대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2019년 8월 현재까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개발한 하모니카 OS, 국가보안연구소가 개발한 구름 OS가 인증을 받았고, 민간기업인 티맥스가 개발한 티맥스 OS의 경우 인증 작업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인증받은 운영체제 중 복수의 운영체제를 시범사업에서 도입하여 운용할 계획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리눅스 기반 운영체제의 점유율이 0.55%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행정안전부가 도입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는 운영체제는 민간의 개인이용자의 사용이 전무하다 할 만큼 민간 활용이 없고, 이에 따라 운영체제의 사용오류, 보안성 및 다른 응용프로그램과의 호환성에 대한 검증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해당 운영체제를 정부기관에 도입하여 운영하게 되면 운영체제 관련 오류 및 호환성 문제 등으로 업무효율성과 업무에 대한 보안성이 하락할 수 있다.

[주요 운영체제의 국내 및 세계 점유율]

(단위: %)

구분	Windows	OS X	Linux	Chrome OS
세계	77.97	13.18	1.63	1.05
국내	83.20	6.45	0.55	0.07

주: 1. 스탯카운터(<https://gs.statcounter.com/os-version-market-share/windows/desktop/worldwide>)에 기반한 자료로 해당 자료는 인터넷 웹페이지 접속자의 운영체제를 식별하여 점유율을 계산

2. 기간은 2018년 7월 ~ 2019년 7월

자료: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대외비)」에 따라 인터넷망에서는 문서작업 등 주요 응용프로그램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검색 및 탐색, 정보시스템의 이용이 가능하면 되고, 최근 HTML5²⁾에 기반한 웹표준³⁾ 환경이 정착됨에 따라 리눅스 기반의 개방형 운영체제에서도 인터넷 활용은 윈도우 운영체제와 유사하게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개방형 운영체제의 개발 및 활용을 정부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선도해 나감으로서 국내 운영체제 개발 시장을 활성화하고, 마이크로소프트 社의 윈도우 운영체제에 대한 의존율을 낮출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정보화가 상당부분 성숙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기존에 개인사용자나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개방형 운영체제가 존재⁴⁾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방형 운영체제의 사용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것은 민간시장의 소비자 선호에 의한 선택에 따른 결과로 이를 정부 주도의 개방형 운영체제 사용을 통해 개선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개방형 운영체제의 민간활용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정부 기관만이 사용하는 개방형 운영체제의 보안성에 대한 검증과 응용소프트웨어 호환성 확보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2) 웹 문서를 제작하는 데 쓰이는 기본 프로그래밍 언어 HTML(HyperText Markup Language)의 최신규격으로, 별도 설치 없이 웹브라우저 상에서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와 앱 등을 바로 제공할 수 있다.

3) 월드 와이드 웹(인터넷)의 공식 표준이나 기술 규격을 가리키는 용어로 일반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할 때 같은 웹페이지라면 어느 운영체제 및 어느 브라우저를 사용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그 웹페이지가 똑같이 보이고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함을 의미한다.

4) 개인사용자 용으로는 우분투, 민트 리눅스, 기업용으로는 레드햇 리눅스가 대표적이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2020년 시범사업을 통해 개방형 운영체제 도입과 관련된 보완사항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고, 전 부처 확산의 경우 민간 부분에서 개방형 운영체제의 사용이 어느 정도 활성화 된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가. 현 황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모델 확산 사업은 동 사업이 편성된 세부 사업의 다른 내역사업인 첨단 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모델 발굴 사업에서 개발된 공공서비스 모델을 다른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촉진 사업¹⁾의 내역사업이다. 동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2020년 예산안에는 13억원이 편성되었다. 동 사업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통한 민간위탁 형태로 수행되며, 세부사업 예산 전액이 민간위탁사업비(320-02목)로 편성되어 있다.

[2020년도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모델 확산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촉진	5,250	3,600	3,600	4,600	1,000	27.78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모델 확산	0	0	0	1,300	1,300	순증

자료: 행정안전부

나. 분석의견

행정안전부는 동 내역사업의 확산 대상 사업을 확정된 후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확산 대상 공공서비스 모델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가 가능하도록 사업 절차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황수환 예산분석관(shhwang@assembly.go.kr, 788-4643)

1) 코드: 일반회계 2035-506

동 사업은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확산 사업의 다른 내역사업인 첨단 정보기술 모델 발굴 사업에서 개발된 우수 서비스를 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확산을 통한 사업성고가 크고, 법·제도가 정비되어 확산이 가능한 사업을 대상으로 확산 가능한 기관에 점진적·단계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2020년에 13억원의 예산을 통해 2개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2020년 확산대상 공공서비스 모델 예시]

- (화성시) 지능형 스마트 선별관제 서비스
- (경기도) 사물인터넷 기반 소외계층 공용차량 카셰어링 서비스
- (은평구) 지능형 객체인식 기반 대형폐기물 처리 서비스
- (소방청) 대국민 인명구조 수색시스템
- (대구시) 가족협력형 농촌부모 안전돌보미 서비스
- (소방청) CCTV연계 맞춤형 119 길안내 서비스

자료: 행정안전부

그런데, 동 사업을 통해 2020년 확산될 공공서비스 모델의 선정은 2019년 12월에 결정될 예정으로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는 확산될 사업의 기존 성과 및 확산을 통한 행정서비스의 개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공공서비스 확산모델 선정절차]



자료: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동 사업이 2020년 신규 내역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예산안이 확정되기 이전에 확산 대상 공공서비스 모델을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고, 2021년부터는 확산 대상 공공서비스 모델을 정부 예산안 국회제출 이전에 확정하겠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모든 사업의 예산은 국회확정 이전에는 변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계속사업이든 신규사업이든 해당 사업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적인 절차는 정부 예산안 편성 이전에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동 사업의 사전준비 절차가 면밀하지 않았던 측면이 있다.

행정안전부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2021년부터는 확산 대상 공공서비스 모델을 정부 예산안 국회제출 이전에 확정하여 해당 공공서비스 확산의 적정성 여부를 국회에서 심의·확정하는 절차를 거쳐 동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성이 있다.

가. 현 황

공직선거 추진 사업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법정사무 중 선거권자 명부작성 등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직선거관리 및 지방의회역량강화 사업¹⁾의 내역사업이다. 동 사업의 예산안은 전년대비 78억 6,700만원이 증액된 82억 5,1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0년도 공직선거 추진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공직선거관리 및 지방의회역량강화	786	766	766	8,593	7,827	1,021.8
공직선거 추진	629	384	384	8,251	7,867	2,048.7

자료: 행정안전부

나. 분석의견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 예산을 부처가 직접 집행하는 경비에 해당하는 비목으로 편성하고 있으므로 자치단체보조금으로 편성하는 등의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동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사무인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인 지방자치단체 장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 제외)와 관련하여 선거인명부작성, 투표안내 및 투표소관리 등을 수행함에 따라 소모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황수환 예산분석관(shhwang@assembly.go.kr, 788-4643)

1) 코드: 일반회계 1132-300

이에 따라 동 사업의 경우 국회의원선거 및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와 그렇지 않은 연도 간의 예산액의 격차가 크게 발생하는데,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던 2016년 89억 7,600만원, 2017년 85억 3,100만원 및 2020년 82억 5,100만원(예산안 기준)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소폭 감소추세에 있다.

[주요 연도별 공직선거 추진 사업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6		2017		2020 (예산안 기준)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총액	8,976	8,608	8,531	8,167	8,251
행정안전부 직접집행	1,135	1,045	844	739	601
지방자치단체 배분	7,841	7,563	7,687	7,428	7,650

자료: 행정안전부

그런데,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는 예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보조금으로 편성하지 않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비목으로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다.

[주요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배분 예산의 비목별 예산 현황]

(단위: 천원)

비 목	2016년		2017년		2020년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일용임금(110-04목)	1,113,775	1,054,327	1,115,041	1,082,325	1,237,000
일반수용비 (210-01목)	2,977,983	2,952,858	2,558,607	2,547,082	2,959,000
공공요금(210-02목)	337,559	289,323	589,328	483,891	528,000
특근매식비(210-05목)	1,963,598	1,870,388	1,958,509	1,897,476	1,717,000
임차료(210-07목)	95,456	69,624	114,805	93,220	0
국내여비(220-01목)	839,864	822,302	845,399	826,428	769,000
업무추진비(240-01목)	513,030	503,273	505,098	498,032	440,000
합계	7,841,265	7,562,095	7,686,787	7,428,454	7,650,000

자료: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 관련 경비는 「공직선거법」 제277조 제1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국가사무로 볼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해 편성되는 자치단체보조금(330목)으로 편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국가위임사무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국가사무를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 보조사업 형태로 수행되는 것이 타당하며, 해당 사업의 경우 보조사업 형태로 수행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 배분 금액의 교부 및 정산도 법적인 절차가 아닌 임의적인 절차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동 사업 예산 중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는 예산인 76억 5,000만원은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금(330-01목)으로 편성·집행할 필요성이 있다.

가. 현 황

연료운반선 건조지원 사업은 일반선박으로 운송할 수 없는 섬에 가스, 석유 등의 생필품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운송·공급할 수 있는 연료운반선 건조를 지원하여 섬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섬 발전 협력사업 추진 사업¹⁾의 내역사업이다. 동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20억원이 2020년 예산안에 편성되었다.

[2020년도 연료운반선 건조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섬 발전 협력사업 추진	2,000	2,700	2,700	2,865	165	6.1
연료운반선 건조 지원	2,000	2,000	2,000	2,000	0	0.0

자료: 행정안전부

나. 분석의견

연료운반선 건조지원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집행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는 동 사업의 지방자치단체 보조 예산을 2년에 걸쳐 분할하여 편성할 필요성이 있다.

동 사업은 4년 간(2018 ~ 2021년) 매년 2개 지방자치단체에 단체 당 한척의 연료운반선 건조를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330-03목, 국비 지원을 50%) 형태로 지원하여, 대상지역은 정기 민간 화물선이 운항되지 않는 섬 지역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얼마나 분포되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선정한다.

황수환 예산분석관(shhwang@assembly.go.kr, 788-4643)

1) 코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241-300

[연료운반선 건조지원사업 현황]

○ 총 지원규모: 50~100ton 규모 선박 8척(2척/년)
○ 총 지원기간 : 2018년 ~ 2021년(4년) ※ 연도별로 2개 지방자치단체를 신규지원
○ 총 사업비 : 16,000백만원(국 8,000 지 8,000) ※ 연도별 예산 : 국비 2,000백만원
○ 예산회계 : 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
○ 지원형태 :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국비 50%, 지방비 50%)
○ 대상지역 : 경기 민간 화물선이 운항되지 않는 섬 지역 중심

자료: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동 사업의 예산액으로 매년 전체 연료선 건조지원사업의 보조예산 10억원을 편성하여 교부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실제 연료선 건조 일정을 살펴보면 2018년 지원 지방자치단체인 보령시와 군산시의 경우 2019년 연말, 2019년 지원 지방자치단체인 통영시와 제주도의 경우 2020년 11월 및 8월에 연료운반선 건조가 완료될 예정으로 연료운반선 건조에는 2년 가량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연료운반선 건조 추진 일정]

지원 연도	지방자치단체명	지자체 선정	설계용역 발주	설계용역 완료	연료 운반선 건조 발주	연료 운반선 건조 완료
2018	보령시	2018. 1.	2018. 11,	2019. 3.	2019. 3.	2019. 12.
	군산시	2018. 1.	2018. 5.	2019. 1.	2019. 2.	2019. 12.
2019	통영시	2018. 6.	2019. 6.	2019. 12.	2020. 1.	2020. 11.
	제주도	2018. 6.	2019. 6,	2019. 11.	2019. 11.	2020. 8.

자료: 행정안전부

이에 따라, 사업 지원 당해 연도의 실집행률을 보면 보령시와 군산시의 경우 2018년 실집행률이 0.8%, 0%로 낮은 수준이었고, 통영시와 제주도의 경우에도 2019년 9월 현재 집행률이 4.7%와 2.3%로 낮은 수준이다.

[연료운반선 건조지원 사업의 지자체별 연도별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지방 자치 단체 명	연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 용 액	실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보령시	2018	1,000	1,000	1,000	1,000	0	1,000	8	992	0	0.8
	2019. 9월	-	-	-	-	992	992	542	-	-	55
군산시	2018	1,000	1,000	1,000	1,000	0	1,000	0	1,000	0	0.0
	2019. 9월	-	-	-	-	1,000	1,000	550	-	-	55.0
통영시	2019. 9월	1,000	1,000	1,000	1,000	0	1,000	47	-	-	4.7
제주도	2019. 9월	1,000	1,000	1,000	1,000	0	1,000	23	-	-	2.3

자료: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동 사업은 총 사업비 지원 대상 사업이 아니어서 지방자치단체 지원 예산을 2년에 나누어 편성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연료 운반선 건조 발주에 대한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조달절차가 이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동 사업은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2018. 4.)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2 회계연도에 걸쳐 편성하더라도 사업액이 변동될 가능성이 적어 지방자치단체가 총 지원예산(국비 10억원)을 기준으로 조달절차를 진행해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낮다고 보인다.

또한 동 사업은 연료운반선 설계와 건조 업체선정에 1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조달절차가 필요하고 설계에 4~6개월, 건조에 8~10개월이 소요되어 지방자치단체가 구조적으로 2회계연도에 걸쳐 수행할 수 밖에 없는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동 사업의 사업예산을 사업 추진 절차를 고려하여 2개 년도에 걸쳐 지원 예산을 편성·교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이월액 규모를 최소화 하고 실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

가. 현황

재난안전사업평가 사업¹⁾은 재난안전사업 평가 및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 제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동 사업은 2020년 예산안에 전년과 동일한 2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0년도 재난안전사업평가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재난안전사업평가	0	250	250	250	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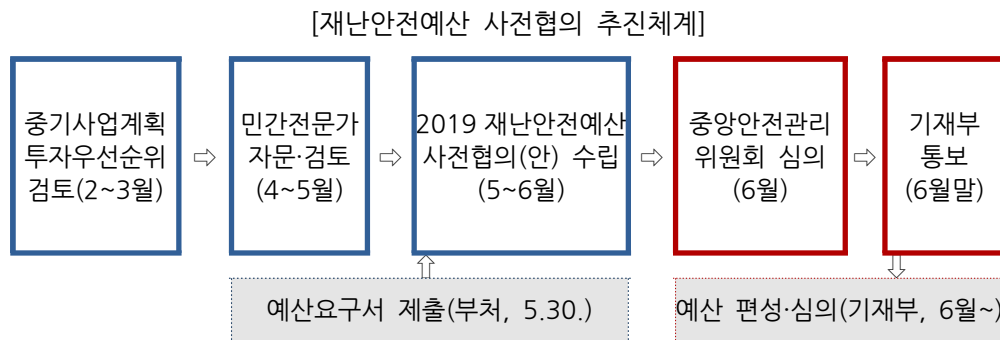
자료: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가 동 사업을 통해 운영하고 있는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는 재난안전 사업의 투자방향, 투자우선순위, 투자적정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기획재정부에 이를 토대로 예산(안)을 편성하는 제도로서, 재난안전 사업의 효율적 재정배분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사전협의의 결과에 따라 각 재난안전 사업은 투자확대, 투자유지, 투자축소 3개의 등급(상대평가)으로 구분되며, 동 결과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심의를 거친 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통보되어 예산안 편성과정에 반영된다.

황수환 예산분석관(shhwang@assembly.go.kr, 788-4643)

1) 코드: 일반회계 2631-304



자료: 행정안전부

나. 분석의견

재난안전사업예산 사전협의 결과, 투자축소 사업 중 일부는 예산 자연감소분이 예정된 사업이나 종료사업 등이 선정되고 있어, 사전협의 제도의 취지를 반감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2019년 실시된 2020년 재난안전 사업 사전협의는 총 417개 사업(16.46조원)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며, 170개 사업은 투자확대 사업, 205개 사업은 투자유지 사업, 42개 사업은 투자축소 사업으로 나타났다.

[2020년 정부예산안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 결과]

구분	합계	투자확대('가' 등급)	투자유지('나' 등급)	투자축소('다' 등급)
사업수	417개(16.46조)	170개(7.92조)	205개(7.73조)	42개(0.81조)
사업수 비율	100%	40.8%	49.2%	10.1%

자료: 행정안전부

그런데, 2020년 예산(안)에 대한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 결과 투자축소 등급을 받은 사업 중 일부 사업은 건설 및 정보화 사업의 자연감소분 또는 내역사업 종료 등에 따라 사업액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투자축소 등급을 받은 사업 중 자연감소분 사업 예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19년 예산	2020년 예산안	증감 (증감비율)	소관부처	주요 감액사유
교육정보시스템 통합재해 복구 체계 구축(정보화)	8,325	0	△8,325 (순감)	교육부	재해복구센터 건립 완료에 따른 감액
B-1 정부노후시설정비	613	332	△281 (△45.8)	행정 안전부	2019년 단년도 편성되는 신규장비 구입예산 미편성 으로 감액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14,080	6,983	△7,097 (△50.4)	행정 안전부	정보시스템(GIS 기반의 문제해결형 상황관리 체계) 구축 완료에 따른 감액
재난구호지원	1,980	630	△1,350 (△68.2)	행정 안전부	단년도 내역사업 미편성으로 인한 감액
관광산업 일자리 활성화 및 단체지원 (유원시설 안전관리)	1,931	1,108	△823 (△42.6)	문화 체육 관광부	유원시설 안전정보망 구축 완료에 따른 감액
감염병예방 및 관리 종합 정보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정보화)	1,568	839	△729 (△46.5)	보건 복지부	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종료에 따른 감액
교통사고예방지원	19,305	7,652	△11,653 (△60.4)	국토 교통부	내역사업의 연차별 사업 계획에 따른 물량 감소
광양항(3단계) (울촌2산단 진입항로준설 등)	6,005	300	△5,705 (△95.0)	해양 수산부	준설완료에 따른 감액
일반항 (마산항 제2항로준설, 팽목항준설)	4,528	150	△4,378 (△96.7)	해양수 산부	준설완료에 따른 감액
재해안전항만구축	95,419	48,224	△47,195 (△49.5)	해양 수산부	일부 내역사업 완료 등에 따른 감액
방송분야 재난관리 지원 (방송재난관리강화, 방송 재난관리 활동지원 등)	1,396	826	△570 (△40.8)	방송 통신 위원회	자막속보 시스템 개선 내역사업 완료에 따른 감액
방제정건조	7,441	180	△7,261 (△97.6)	해양 경찰청	선박건조 완료에 따른 감액
연안안전사고예방활동	6,702	4,649	△2,053 (△30.6)	해양 경찰청	구조거점파출소 운영 내역 사업 완료에 따른 감액

자료: 행정안전부 및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같이,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 결과와 무관하게 감액예정인 사업에 대해 투자축소 의견을 낼 경우, 예산 사전협의 제도의 실익이 없는 한편, 상대평가로 인해 실제 구조조정 및 효율성 제고가 요구되는 다른 사업에 대한 관대화 경향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향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 결과 상 투자축소 사업 내 자연감소분 사업은 상대평가 비율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가. 현 황

국가안전정보 통합 공개시스템 구축 사업¹⁾은 대형사고 및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건축물 정보, 소방시설 점검 결과 등 안전점검 결과를 건축물 단위로 국민에게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동 사업은 2020년 신규사업으로 예산안에 16억 9,6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0년도 국가안전정보 통합 공개시스템 구축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국가안전정보 통합 공개시스템 구축	0	0	0	1,696	1,696	순증

자료: 행정안전부

동 사업을 통해 구축하려는 국가안전정보 통합 공개시스템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및 밀양 세종병원 화재 등 건축물 안전이 취약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지만 국민이 이용시설의 안전도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부재한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 구축이 추진되었다.

행정안전부는 2018년 예비비를 배정받아 동 시스템의 BPR/ISP를 완료²⁾하였고 이에 따라 2020년부터 4개년 동안 총 구축예산 103억 3,300만원을 투입하여 화재안전특별조사 DB, 건축물 기본정보, 소방전기·가스 등 개별 법령상의 안전점검 결과가 포함된 33개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동 시스템이 구축되면

황수환 예산분석관(shhwang@assembly.go.kr, 788-4643)

1) 코드: 일반회계 2631-305

2) 기간: 2018. 8. 17. ~ 12. 14. / 집행액 3억 600만원

국민은 지도기반의 시스템에서 건축물·시설물별로 관련된 안전점검 결과를 통합적으로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국가안전정보 통합 공개시스템 구축 개요]

- (추진배경) 안전사고에 의한 인명·재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이용 시설의 안전도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안 부재
 - *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17.12.21, 29명 사망), 밀양 세종병원 화재('18.1.26, 47명 사망)
- (사전절차) '국가안전정보 통합 공개시스템' BPR/ISP 완료('18.8.17.~12.14. 306백만원)
- (추진내용) 화재안전특별조사 DB, 건축물 기본정보, 소방·전기·가스 등 개별 법령상의 안전점검 결과 포괄적으로 연계하여 제공
 - * 총 구축비 103억 3,300만원 / 2020년 예산 16억 9,600만원
(총 구축비 중 하드웨어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축비는 국가정보관리원 예산에 5년 간 14억 2,000만원 반영 예정)
 - * 총 3년간 약 33개 시스템 순차 연계
(1차 14개, 2차 11개, 3차 8개, 기관협의 등에 따라 변경 가능)

자료: 행정안전부

나. 분석의견

행정안전부는 2020년에 동 사업을 통한 정보시스템 구축뿐만 아니라 2021년 및 2022년 연계 예정인 DB 및 시스템의 법률 근거 마련을 위해 소관 부처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성이 있다.

국가안전정보 통합 공개시스템의 경우 공공분야의 시설·건축물만이 아니라 민간이 소유한 시설·건축물에 대한 이력 및 안전점검 결과 등을 공개하기 때문에 해당 정보의 공개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3)에 따라 법률에 규정을 두어

3)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이하 생략)

개인정보를 공개하여야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공개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해당 정보의 소관 부처와 협력하여 시설·건축물의 안전정보를 국가안전정보 통합 공개시스템으로 공개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률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2020년 1차 사업의 경우 근거 법률의 개정이 완료된 상황이다.

그런데, 2차(2021년) 및 3차(2022년) 사업의 경우 2차 사업 중 국가연구안전 정보시스템 등 4개 시스템의 공개정보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근거 법률규정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직 관련 법령이 개정 중인 상황으로 일부 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시설 관련 정보 등은 아직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며, 3차 년도 사업의 경우 공개 대상인 모든 정보가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안전정보 통합 공개시스템 관련 법률개정 현황(2019년 8월 기준)]

구분	공개 대상	해당 정보 관리 주체	연계필요 정보 시스템	관련 법령	관련 법령 개정 경과
1차년도	건축물 안전정보	국토교통부	건축물생애이력 관리시스템	「건축물관리법」 제8조	제정완료 ('19.4.30) 및 시행(2015)
	건축물 기본정보		건축행정 시스템		
	승강기	행정안전부	승강기종합 정보시스템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73조	기 완료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9조의2	기 완료
	학교	교육부	학교시설통합 정보시스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조	기 완료
	체육시설	문화체육 관광부	체육시설정보 관리시스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기 완료
	저수지	농림축산 식품부	농업기반시설 관리시스템	전체 공공시설로 법률 규정 불필요	불필요
	어린이집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1의5 제6호	기 완료
	병원		의료기관평가 인증시스템	「의료법」 제58조의7	기 완료

구 분	공개 대상	해당 정보 관리 주체	연계필요 정보 시스템	관련 법령	관련 법령 개정 경과
	폐기물 처리시설	환경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평가시스템	전체 공공시설로 법률 규정 불필요	불필요
	국립공원		국립공원시설 관리시스템	전체 공공시설로 법률 규정 불필요	불필요
	여객선	해양수산부	여객선검사정보 공유시스템	「해운법」 제11조의3	기 완료
	항만시설		항만시설유지 관리시스템	전체 공공시설로 법률 규정 불필요	불필요
	사방시설	산림청	산사태 정보시스템	전체 공공시설로 법률 규정 불필요	불필요
2 차 년 도	연구실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국가연구안전 정보시스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0조	기 완료
	유해화학물 질취급시설	환경부	유해화학물질취급 시설관리시스템	「화학물질관리법」 제12조	기 완료
	청소년 수련시설	여성가족부	청소년수련 시설포털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8조의3	기 완료
	원전	원자력안전 위원회	원전안전 운영시스템	「원자력안전법」 제103조의2	기 완료
	시설물	국토교통부	시설물정보관리 종합시스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의2 개정중	국토위 법안소위 회부 (이현승 의원 '19.3.14)
	액화석유 가스시설	산업통상 자원부	가스피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의2 개정중	의원입법 추진 중
	도시가스시설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의6 개정중	의원입법 추진 중
	전기시설		전기안전종합 정보시스템	「전기안전관리법」 제21조 제정중	산자중기위 법안소위 회부 (김성환 의원 '19.1.25)
	건축물 소방안전 특별조사	소방청	소방안전 정보시스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개정중	행안위 법안소위 회부 (변재일 의원 '18.5.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개정중	행안위 법안 소위 회부 (김영호 의원 '18.5.31)

구 분	공개 대상	해당 정보 관리 주체	연계필요 정보 시스템	관련 법령	관련 법령 개정 경과
	급경사지	행정안전부	국가재난관리 정보시스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 개정중	양 법률 행안위 회부 (정부 '19.7.26)
	소규모 공공시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개정중	
	유원시설	문화체육 관광부	유원시설안전 정보시스템	공개조항 없음	개정 검토 중
	전통시장	중소벤처 기업부	전통시장통통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의2 개정중	산자중기위 회부 (위성곤 의원 '19.6.28)
3 차 년 도	통신시설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방송통신통합 재난관리시스템	공개조항 없음	개정 검토 중
	공연장	문화체육 관광부	공연장안전DB	공개조항 없음	개정 검토 중
	레저스포츠 시설		레저스포츠 종합관리시스템	공개조항 없음	제·개정 검토 중
	보일러	산업통상 자원부	보일러안전 점검시스템	공개조항 없음	개정 검토 중
	송유관		송유관SHE 전산시스템	공개조항 없음	개정 검토 중
	어선	해양수산부	어선거래시스템	공개조항 없음	개정 검토 중
	화약류 저장시설	경찰청	총포화약안전 관리시스템	공개조항 없음	개정 검토 중
	기상관측 시설	기상청	기상청 홈페이지	공개조항 없음	개정 검토 중

자료: 행정안전부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2020년의 경우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로 법률안의 국회심의 기간이 다른 연도에 비해 단기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2020년에 동 사업을 통한 정보시스템의 구축뿐만 아니라 2021년 및 2022년에 구축 예정인 공개대상 정보의 법률 근거 마련을 위하여 해당 법률의 소관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통하여 동 시스템이 당초 계획한 대로 안전관련 주요 정보를 보다 풍부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

가. 현 황

노후 유도선현대화 이차보전 사업은 개정된 「유선 및 도선 사업법(법률: 제 13193호, 시행: 2015. 2. 3, 신설된 제4조의2는 2016. 2. 4. 시행)」 제4조의2제1항제1호¹⁾ 및 같은 법 부칙²⁾에 따라 2023년 2월 4일 기준으로 선령이 20년을 초과하는 유선³⁾ 및 도선⁴⁾(이하 “유도선”이라 한다)의 다량 폐선이 예상됨에 따라 선박이용자에 대한 차질 없는 편익제공 및 선박 대체 건조에 따른 민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체 건조를 위한 금융기관 융자분에 대해 이차를 보전해주는 사업으로 국가안전대진단 및 정부합동점검단 운영 사업⁵⁾의 내역사업이다. 동 내역사업은 2020년 신규 사업으로 예산안에는 1억원이 편성되었다.

황수환 예산분석관(shhwang@assembly.go.kr, 788-4643)

- 1)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4조의2(면허의 기준) ① 관할관청은 유·도선사업의 면허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면허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유·도선사업 면허 신청자가 보유한 유선 또는 도선의 선령(船齡)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적합할 것
 2. 유·도선사업 면허 신청자가 보유한 선박과 시설·장비·인력이 제4조의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 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부칙<법률 제13193호> 제3조(이미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한 유·도선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한 유·도선사업자는 이 법 시행 후 7년 이내에 제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선박을 갖추어야 한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한 유·도선사업의 유효기간이 이 법 시행 후 7년 이내에 종료되어 면허 또는 신고를 갱신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7년 이내에 제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선박을 갖추어야 한다.
- 3) 유락을 위한 선박(유람(遊船)선)
- 4) 사람과 물건 등의 운송을 위한 선박(渡船)
- 5) 코드: 일반회계 2631-301

[2020년도 노후 유도선현대화 이차보전 사업의 예산안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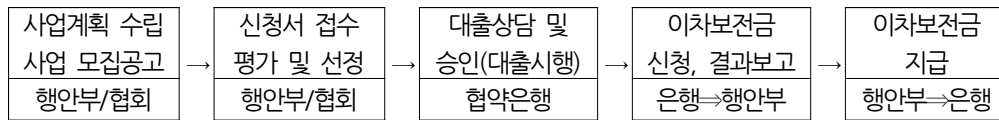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국가안전대진단 및 정부합동점검단 운영	1,044	1,294	1,294	2,089	795	61.4
노후 유도선현대화 이차보전	0	0	0	100	100	순증

자료: 행정안전부

동 사업의 절차는 행정안전부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유도선 안전협회⁶⁾가 이를 바탕으로 사업 모집공고를 하고 신청서를 평가하여 사업대상 유도선 사업자 및 선박을 선정한다. 선정된 유도선 사업자는 행정안전부 등과 협약된 은행에서 대출 승인을 받고, 해당 은행이 이차보전금을 행정안전부에 신청하면 행정안전부가 이를 은행에 지급하는 형태로 사업이 추진된다.

[노후 유도선현대화 이차보전 사업의 사업 절차]



자료: 행정안전부

동 사업의 2020년 예산의 지원기준은 법률의 유예기간인 2023년 2월 4일을 기준으로 선령 20년을 초과하는 유도선의 대체 건조를 위해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이며, 지원 범위는 현행 대체 건조를 위한 금융기관 용자(대출)분 금리 3.6% 중 70%에 해당하는 2.5%p의 금리를 건조선박 대출기간인 15년(5년 거치+10년 상환 또는 3년 거치+12년 상환)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유도선 사업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2020년 예산 지원 요청 규모를 선박 19척, 이차보전 금액 1억 7,700만원으로 파악하였으나 사업을 최초로 시행하는 연도이기 때문에 사업 준비에 따른 지연 등을 고려하여 예산안에는 1억원을 편성하였다.

6) 유도선 사업자로 구성된 비영리법인으로 유도선 안전 및 유도선 사업의 건전한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며 2019년 3월 27일 출범(비영리법인 허가)

[유도선 사업자에 대한 수요조사에 따른 지원대상 선박 수]

(단위: 선박 수)

구분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105	19	8	7	16	55
5톤초과	40	10	5	4	12	9
5톤이하	65	9	3	3	4	46

자료: 행정안전부

[유도선 사업자에 대한 수요조사에 따른 연도별 이차보전액]

(단위: 백만원)

구분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3,299	177	406	570	874	1,272
당해 연도	1,273	177	229	164	304	399
누적분	2,026	-	177	406	570	873
편성 예산안	-	100	-	-	-	-

자료: 행정안전부

나. 분석의견

행정안전부는 유사한 성격의 사업인 해양수산부의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 사업⁷⁾이 시행 초기에 금융기관의 조선, 해운 분야에 대한 금융거래 기피 등의 사유로 불용액이 컸다는 점을 고려하여 동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

동 사업은 해양수산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안선박⁸⁾ 현대화 이차보전 사업과 사업 대상 선박은 다르지만, 노후 선박의 건조지원이라는 사업목적, 사업방식이 이차보전 사업이라는 점, 선박사업자의 조합 또는 협회를 통해 사업을 수행한다는 점, 2.5%p의 금리를 건조선박 대출기간인 15년(5년 거치+10년 상환 또는 3년 거치+12년 상환)동안 지원한다는 점 등 사업목적 및 구조가 유사한 측면이 있다.

7)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 사업(코드: 일반회계 6133-307)의 내역사업

8) 「해운법」에 따른 내항여객 및 화물운송선박이 사업대상이다.

그런데,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 사업의 사업초기인 2013년부터 2016년까지는 장기대출에 따른 선사의 대출상환 여부의 불확실성 증가, 조선·해운 분야 불황에 따른 신용도 하락으로 금융기관의 금융거래 기피 및 대출심사 강화 등을 사유로 지원대상인 선박건조에 대한 대출 승인⁹⁾이 이루어지지 않아 집행률이 40 ~ 55%로 낮았다.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 사업 집행률]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2013	450	207	46.0
2014	1,650	728	44.1
2015	3,993	1,701	42.6
2016	6,094	3,285	53.9
2017	7,588	5,839	76.9
2018	8,588	8,588	100.0

자료: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해양수산부의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 사업의 경우 취급금융기관 확대(수협 → 신한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농협, 수협) 및 선수금반환 보증보험¹⁰⁾ 도입 등 사업활성화 노력으로 집행률이 상승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유도선현대화 취급금융기관을 5개 기관(신한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수협)으로 협의하였고, 금융기관 및 조선조합 등과 협의(2019.5.30. 업무협약식 체결)를 통해 대출 승인 및 선수금반환 보증을 원활하게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 사업의 지원대상인 내항여객선이나 화물운송선박은 대체로 100톤 이상인데 반하여 유도선의 경우 지원대상 선박 중 5톤 이하인 비율이 절반 이상으로 영세사업자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의 신용대출 승인이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 사업보다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9) 사업초기 3년간 신청척수 대비 사업포기 척수를 보면 2013년 18척 중 12척 사업포기, 2014년 41척 중 23척 사업포기, 2015년 63척 중 40척 사업포기

10) 선박 건조를 수주 받은 조선사가 부도 및 폐업할 경우에 선박 건조를 의뢰한 사업자로부터 지급 받은 선수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보험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금융기관과 대출조건 완화 등을 위한 협의를 강화하고, 대체건조를 신청하는 사업자의 신용수준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적절한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등 철저한 사업관리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

가. 현 황

폭염 등 기후재난 대응기술 개발 사업¹⁾은 폭염 등 기후재난의 피해 저감을 위한 도심지 폭염피해, 취약계층 관리 서비스, 피해자 원인분석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다. 동 사업은 2020년 신규사업으로 예산안에 12억 4,2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0년도 폭염 등 기후재난 대응 기술개발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폭염 등 기후재난 대응 기술개발 사업	0	0	0	1,242	1,242	순증

자료: 행정안전부

동 사업은 ‘도심 환경을 고려한 폭염 저감 기술 최적화’ 및 ‘폭염 직접 피해자의 사회·환경 원인 분석기술 개발’ 등 2개의 연구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기간은 각각 4년과 5년이고 총 연구비는 두 과제 모두 34억원이며 2020년 연구비 예산안은 각각 8억원 및 4억원이다.

황수환 예산분석관(shhwang@assembly.go.kr, 788-4643)

1) 코드: 일반회계 2931-622

[폭염 등 기후재난 대응 기술개발 사업의 세부과제 현황]

과제명	주요 연구개발 내용	연구기간	총 연구비	2020년 예산액
도심 환경을 고려한 폭염 저감 기술 최적화	도심 특성 및 위치를 고려하여 최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기술 평가	4년 (2020년 ~ 2023년)	34억원	8억원
폭염 직접 피해자의 사회·환경 원인 분석 기술 개발	폭염으로 인한 피해자의 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부검 기술 개발	5년 (2020년 ~ 2024년)	34억원	4억원

자료: 행정안전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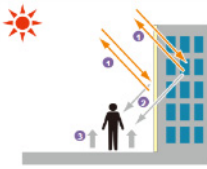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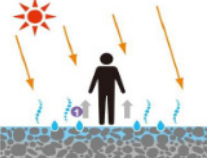
나. 분석의견

도심 환경을 고려한 폭염 저감 기술 최적화 과제의 경우 폭염 저감 기술 별로 설치 가능한 위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복수적용이 가능한 기술을 위주로 해당 기술의 효용성을 검증할 평가 기술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도심 환경을 고려한 폭염 저감 기술 최적화 연구과제는 도심 환경을 고려한 폭염 저감 기술을 최적화하기 위해 동 기술의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해당 폭염저감 기술 적용의 과학적인 근거를 제공하기 위한 연구과제이다.

동 연구과제를 통해 평가하려는 폭염 피해 저감 기술의 유형은 ① 벽면 등의 녹화, 물공급, 열(빛)반사를 통해 주변 온도 냉각, ② 지표면 녹화, 열차단, 물공급을 통해 표면 고온화 억제 및 냉각, ③ 인공적인 그늘을 형성하여 태양복사열 저감, ④ 인체를 직접 냉각시키는 방법으로 구분된다.

[폭염 피해 저감 유형별 기술]

폭염 피해 저감 방법 유형		폭염 저감 기술
① 벽면 등의 녹화, 물공급, 열(빛) 반사를 통해 주변 온도 냉각		건물 벽면을 덩굴식물이나 녹화패널 등으로 벽면 온도 상승 억제
		루버 등에 물을 분사해 표면을 냉각시켜 바람으로 온도 저감
		건물의 창이나 벽면에 비치는 일사량 일부를 상공으로 반사
② 지표면 녹화, 열차단, 물공급을 통해 표면 고온화 억제 및 냉각		노면이나 옥상을 살수하여 기화열에 의해 온도 상승 억제·냉각
		노면의 일사 일부를 상공으로 반사시켜 온도 상승 억제
		지면, 옥상 녹화를 통해 온도 상승 억제
③ 인공적인 그늘을 형성하여 태양 복사열 저감		큰 나무로 녹음을 조성하여 일사량 차폐
		인공차양으로 그늘을 조성하여 일사량 차폐
④ 인체를 직접 냉각시키는 방법		미세 미스트 분무를 통해 기화열을 이용하여 주변 냉각
		바람을 통해 피부 표면의 열 방출 촉진 및 열 축적 해소

자료: 행정안전부

그런데, 동 연구과제를 통해 각 폭염저감 방법 및 구체적인 기술에 대한 평가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각 기술에 대한 효용성을 측정하게 되더라도 폭염저감 기술의 경우 해당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적·장소적 제약이 강하여 복수의 기술을 동 연구과제를 통해 개발된 평가 기술을 통해 비교하여 설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가 적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도심 속 횡단보도의 경우 인공그늘의 설치하는 가능하지만, 주변의 건물의 벽면이나 창문에 시설공사를 해야하는 ① 번 기술은 사용하기 어렵고, 수분 분사 등을 통해 인체를 직접 냉각시키는 ④ 번 기술은 통행하는 시민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역시 적용이 어렵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동 연구과제를 통해 폭염저감 기술의 평가 기술을 개발할 경우 특정한 장소에 복수로 설치가 가능한 기술을 위주로 해당 기술간 평가 기술을 집중적으로 개발하여 해당 연구과제를 통해 개발한 평가기술이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의 폭염저감 기술 사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동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유형별 폭염 저감 기술이 반영된 테스트베드를 구축할 예정인데 해당 테스트베드가 동 연구과제 수행에만 활용되지 않고, 향후 폭염 저감 관련 각종 연구개발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활용계획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국가융합망 구축 및 운영 사업) 장기적으로 전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국가융합망 구축·운영 필요

가. 현 황

국가융합망 구축 및 운영 사업¹⁾은 각 기관별로 운용중인 개별통신망의 동일구간 중복 회선을 통합하여 관련 예산을 절감하고, 통신환경 변화 및 신규수요 급증에 따른 통신망의 유연한 확장성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동 사업은 2020년 신규사업으로 예산안에 90억 9,0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0년도 국가융합망 구축 및 운영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국가융합망 구축 및 운영	0	0	0	9,090	9,090	순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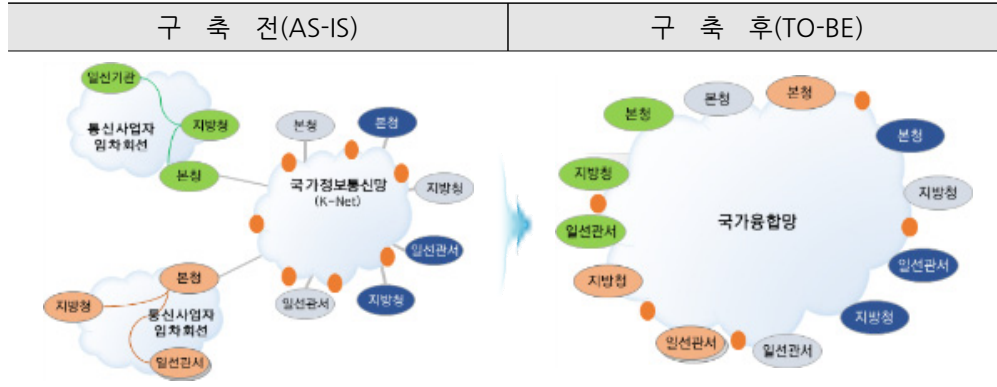
자료: 행정안전부

동 사업에서 구축하려는 국가융합망이란 기존에 국가정보통신망(K-Net)과 각 일선기관 및 지방청 등의 정보통신망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되던 통신망을 통합하는 정보통신망으로 행정안전부는 국가융합망을 통한 집선에 의해 10년간 약 2,900억원의 통신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황수환 예산분석관(shhwang@assembly.go.kr, 788-4643)

1) 코드: 일반회계 2045-500

[국가융합망 구축을 통한 국가기관 통신망 개편]



자료: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2020년에 국가융합망의 지역노드²⁾(30곳) 및 망관리센터(2곳) 구축을 완료하고 2020년 감사원 등 25개 기관, 2021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3개 기관, 2022년 고용노동부 등 11개 기관의 회선을 통합하여 3년 간 총 48개 기관의 회선을 국가융합망에 통합할 계획이다.

2020년 예산안의 주요 내역은 지역노드 구축을 위한 국가융합망 노드 기반환경
구축에 62억 5,900만원, 망관리센터 구축(서울 및 대전)에 21억 6,200만원 등 이다.

나. 분석의견

행정안전부는 **현행 국가융합망 수용계획에서 제외된 기관에 대한 장기적인 수용 계획을 마련하여 국가융합망이 전체 국가기관의 통합망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

행정안전부는 2017년 국가융합망 도입 논의 초기 단계에서는 지방정부를 제외한 모든 국가기관인 51개 기관, 9,533개 회선을 수용하여 국가융합망을 구축할 계획이었지만, 각 부처의 협의 결과를 반영한 현재 계획상으로 48개 기관, 4,889회선을 수용할 계획이다.

2) 네트워크의 거점이 되는 연결지점을 말한다.

[국가융합망 통합 기관 및 회선수 현황]

당 초		변 경		제외 회선	
기 관	회선 수	기 관	회선 수	기 관	회선 수
51개	9,533	48개	4,889	4개 기관 ¹⁾	4,644

주: 1) 국민안전처가 행정안전부로 통합되고,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이 독립기관으로 분리되면서 전체 수용대상 기관 수가 52개로 증가하여 48개 기관이 수용되고 4개 기관이 수용 제외
자료: 행정안전부

국가융합망 통합에서 제외된 기관은 대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의 우정사업본부³⁾이다. 제외 사유를 살펴보면 대법원은 삼권분립에 의거 사법기관은 통합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고, 대통령비서실·경호처의 경우 국가 안보 관련해서 통합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우정사업본부의 경우 각각 「공직선거법」 제148조,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8조⁵⁾에 따라 선거 전용 통신망 및 다른 기관 내부통신망과 분리된 통신망 이용 의무가 있어 통합기관에서 제외되었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관 기관이어서 제외된 기관 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4) 「공직선거법」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중 략)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기 위한 선거전용통신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5)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8조(IP주소 관리대책)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정보제공자 주소(이하 "IP주소"라 한다)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적절한 대책을 수립·운용하여야 한다.

(중 략)

5. 내부통신망은 다른 기관 내부통신망과 분리하여 사용할 것

[국가융합망 제외 기관 및 제외 사유]

기관명	제외사유	비고
대법원	삼권분립에 의거 사법기관 제외 필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률에 따라 선거전용 통신망 사용 필요	「공직선거법」 제148조
대통령비서실·경호처	국가 안보를 사유로 분리 운영 필요	-
우정사업본부	법률에 따라 다른 기관 내부통신망과 분리하여 사용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8조

자료: 행정안전부

그런데, 국회 및 헌법재판소 등 다른 헌법기관은 국가융합망에 참여할 계획이고, 국가융합망의 경우 기술적으로 망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것으로 해당 기관의 독립적인 운영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는 대법원의 통신망도 국가융합망으로 수용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우정사업본부의 경우에도 보안을 사유로 별도의 망 분리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융합망의 운용상 보안성이 확보된다면 해당 규정의 개정 추진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해당 기관의 정보통신망도 국가융합망에 포함되어 운용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계획된 48개 기관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기관의 정보통신망에 관한 장기적인 수용계획을 마련하여 국가융합망이 모든 국가기관의 통합정보통신망으로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

가. 현 황

재난안전 신기술 해외보급 사업¹⁾은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가 보유하고 있는 재난안전분야 기술의 이전, 교육을 통하여 협력대상국의 실질적인 재난 위험 경감을 도모하기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사업이다. 동 사업의 2020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10억 700만원이 감액된 1억 2,3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0년도 재난안전 신기술 해외보급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재난안전 신기술 해외보급	1,162	1,130	1,130	123	△1,007	△89.1
방재기술 이전	1,046	1,007	1,007	0	△1,007	순감
ODA사업 자체평가	53	63	63	0	△63	순감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실시	28	30	30	60	30	100.0
필리핀 기 구축 시스템 사후관리	0	0	0	50	50	순증
공무국외출장	30	29	29	7	△22	△75.9
차량임차	4	0	0	0	0	0.0
위탁사업 기술평가	1	1	1	6	5	500.0

자료: 행정안전부

황수환 예산분석관(shhwang@assembly.go.kr, 788-4643)

1) 코드: 일반회계 1241-300

나. 분석의견

라오스에 대한 ODA 사업의 경우 수원국의 사전 절차 이행 지연으로 인해 예산 안에 ODA 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여 2020년 사업 추진이 어려운바 행정안전부는 향후 사업추진 시 수원국의 사전 절차 이행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행정안전부는 동 사업을 통해 재난안전 신기술을 해외보급하고 있으며, 홍수에 대한 피해우려지역의 관측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해 예·경보를 발령할 수 있는 ‘홍수 예·경보시스템’과 홍수에 따른 주민대피 선행시간 확보를 위한 경보시스템인 ‘자동우량경보시설’ 등을 주요 이전기술을 무상원조 형태로 ODA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ODA 사업을 통해 이전하는 재난안전신기술 개요]

- 홍수 예·경보시스템 : 피해우려지역의 관측 데이터를 실시간 수리·수문분석을 통해 예·경보를 발령, 각 구역의 위험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365일 무중단 모니터링 시스템
- 자동우량경보시설 : 단시간 내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홍수가 발생 시 주민대피를 고려한 선행시간의 확보를 통해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실시간 경보시스템

자료: 행정안전부

동 사업의 ODA사업 추진 연혁을 보면 라오스의 경우 2016년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홍수 예·경보 시스템 및 자동우량경보시설을 확대 구축하고 있다.

[재난안전 신기술 해외보급 사업을 통한 국별 ODA 사업 추진 연혁]

연도	주요 추진 내용
2016	○ 베트남, 라오스 대상 홍수 예·경보시스템 및 자동우량경보시설 시범 구축 완료 (국별 강우계 2식, 수위계 2식, 경보국 2식, 홍수 예·경보시스템 1식)
2017	○ 베트남, 라오스 대상 홍수 예·경보시스템 및 자동우량경보시설 확대 구축 완료 (국별 강우계 2식, 수위계 2식, 경보국 2식, 홍수 예·경보시스템 1식) ○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대상 ODA사업 확대추진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 완료
2018	○ 베트남, 라오스 대상 홍수 예·경보시스템 및 자동우량경보시설 확대 구축 완료 (국별 강우계 2식, 수위계 2식, 경보국 2식, 홍수 예·경보시스템 1식) ○ 우즈베키스탄, 미얀마 대상 ODA사업 확대추진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 완료
2019	○ 베트남, 라오스 대상 홍수 예·경보시스템 및 자동우량경보시설 확대 구축 수행 중 ○ 키르기스스탄 대상 ODA사업 확대추진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 수행 중

그런데, 2020년의 경우 외교부의 무상원조시행계획 작성지침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수원총괄기관의 공식요청서가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아 관련 절차 미비로 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는 외교부로부터 2019년 5월 라오스의 수원총괄기관인 계획투자부의 공식요청서가 미제출되었다는 보완요청을 받고, 즉시 해당국에 보완요청을 하고, 수차례에 걸쳐 공식요청서 제출을 재촉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라오스로부터 4개월이 지난 2019년 9월 16일에 공문이 우리나라 외교부에 접수되어 2020년 정부예산안에 해당 무상원조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2020년 라오스 ODA 사업 관련 절차의 일자별 추진 현황]



자료: 행정안전부

라오스에 대한 ODA 사업이 2020년에 추진되지 못하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수원국인 라오스에 행정처리 지연이 원인이지만 해당 수원국의 ODA 관련 절차 등의 이행은 사업 추진 기관인 행정안전부도 확인·점검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사업추진 시 적극적인 확인·점검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향후에 ODA 사업 등의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아닌 사업 관련 절차 미비로 추진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국의 자발적인 협조 및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향후 사업추진 시 수원국의 행정 절차 이행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가. 현 황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사업¹⁾은 과거 국가폭력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트라우마²⁾를 겪는 피해자(직접피해자, 유가족, 목격자 등 포함)를 대상으로 국가차원에서 지원하는 전문적인 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조성·운영하기 위한 사업이다. 동 사업은 2020년 신규사업으로 예산안에는 9억 4,3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0년도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0	0	0	943	943	순증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활동 위탁사업(광주)	0	0	0	616	616	순증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활동 위탁사업(제주)	0	0	0	327	327	순증

자료: 행정안전부

나. 분석의견

동 사업에서 지원하는 광주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에 대한 지원방식이 자치단체 보조사업(광주), 재단 출연사업(제주)으로 상이한바 이를 일치시킬 필요성이 있고, 상이한 지원방식으로 추진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업

황수환 예산분석관(shhwang@assembly.go.kr, 788-4643)

1) 코드: 일반회계 2436-300

2)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정신적 외상)를 경험하고 나서 발생하는 심리적 반응

내용상의 차이를 줄여 지역별로 동일한 사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대상인원에 대한 효과적인 치유 서비스 제공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행정안전부는 국가폭력 트라우마가 개인의 차원을 넘어선 사회적인 트라우마라는 특징을 가지며, 트라우마 치유를 위해서는 단순 병리학적 접근에서 탈피한 다학제적 접근이 필요하나, 5.18민주화 운동, 제주 4.3사건 등 국가폭력 트라우마로 인해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지역에 체계적인 치유헌동을 위한 관심과 제도가 부재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기존 트라우마 치유센터 및 의료기관의 경우 국가폭력 트라우마의 특성 및 기존의 업무 부담 등으로 인해 전문적으로 국가폭력 트라우마 센터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가폭력 트라우마의 특성 및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필요성]

□ 국가폭력 피해 및 치유의 특성

- (피해 특징) 개인의 차원을 넘어선 ‘사회적’ 트라우마
 -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는 대부분 심각성이 크며 양상이 복합적*
 - * 학살/불법체포/장기구금/고문/사건조작·누명/가족피해 등 피해가 중첩
 - 국민의 보호주체인 ‘국가’가 가해자로 피해자는 안전·보호체계 상실감과 사회적 고립이 심각하며, 2·3차 피해(직업 상실, 교육기회축소, 가난, 인간관계 균열, 치유기회 상실 등)로 이어짐
- (치유 특징) 단순 병리학적 접근에서 탈피하여, 다학제적 접근 필요
 - 정신건강 전문분야 외 과거사·인권침해 등에 관계된 역사학자, 사회학자, 인권활동가 등의 치유과정 참여가 필요
 - 피해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손해배상 등 실질적인 회복을 지원하고 긴밀한 협조체계(법적지원 등) 구축

□ 신설 필요성에 대한 검토

- 심리·신체적 후유증으로 인한 높은 정신질환 유발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치유헌동과 관심·제도 등 부재
- 기존 트라우마 치유센터 및 의료기관 활용 한계
 - 다양한 분야의 트라우마 치유의 각 전문영역별 독립운영이 필요
 - ※ 트라우마 원인에 따른 접근법의 차이,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 등 고려
 - 일반적인 정신건강 의료기관은, 국가폭력에 대한 전문성 확보가 어려우며 과중한 업무 등으로 인하여 업무확대의 가능성 낮음

자료: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장기적으로는 근거 법률을 갖추어 국가폭력 트라우마 센터를 전국 권역별³⁾ 분원 또는 지부가 있는 공공기관 형태로 설립에 대해 검토 중이지만, 이는 근거 법률의 제정 및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 설립의 타당성에 대한 협의 등 관련 절차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그런데 기존 국가폭력 피해자 중 고령자 등의 비율이 높아 치유헌동이 시급하게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동 사업을 통해 위탁사업 형태로 광주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 트라우마 치유헌동을 지원하는 형태로 먼저 추진할 예정으로 이와 같은 판단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

한편 동 사업의 지원방식을 보면 기존에 광주광역시에서 운영하고 있던 광주 트라우마 센터에 대한 지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형태로 수행될 예정인데 반하여 2020년에 제주특별자치도에 새로 운영되는 트라우마 센터의 경우 제주4.3평화재단에 대한 출연사업 방식으로 지원 예정이다.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헌동 위탁사업의 예산편성 세부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헌동 위탁사업(광주)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헌동 위탁사업(제주)
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1목)	616	0
	사업출연금 (350-02목)	0	327
지 원 비 율		50 (국고보조율)	50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헌동 소요 비용 총액 대비)

자료: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광주광역시의 경우 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현재 광주트라우마 센터 체계 유지가 필요했고,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직접 운영보다 제주4.3평화재단의 기존 조직과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다른 사업 추진방식을 적용하였다는 설명이다.

3) 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 제주권 등의 권역이 고려중이다.

하지만, 하나의 세부사업에서 지원 지역을 제외하면 동일한 목적과 유사한 사업내용을 가진 내역사업이 지역별로 보조사업과 출연사업이라는 별개의 사업형태로 운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또한 보조사업과 출연사업은 사업의 세부 절차 측면에서도 차이⁴⁾가 있으며, 출연사업의 경우 대응 지방비가 없기 때문에 지원비율이 따로 없지만 국고보조사업과 유사한 사업형태로 운영하려다 보니 국고보조율과 유사하게 전체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허동 소요 비용 총액의 50%는 국비로 부담하고 50%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예외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동 세부사업의 사업성격 및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두 내역사업을 국고보조사업 또는 출연사업 형태로 통일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고, 상이한 방식으로 지원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업내용상의 차이를 줄여 지역별로 동일한 사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추가적으로 국가폭력 사건의 피해자는 5.18민주화운동, 제주 4.3사건 뿐만 아니라 거창사건(경상남도 거창군), 노근리사건(충청북도 영동군), 부마민주화항쟁(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마산지역) 및 그 밖에 군부독재시대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피해자 등이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행정안전부가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권역별 분원 또는 지부가 있는 국가폭력 트라우마 센터의 설립을 통해 국가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전국적으로 전문적인 트라우마 치유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

4) 보조사업은 보조사업 신청, 보조사업 정산 및 실적보고서 제출 등 출연 사업에 비해 사업 수행 절차가 복잡한 측면이 있다.



인사혁신처

1

현황

가. 총수입·총지출

인사혁신처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하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공무원연금기금으로 구성된다.

인사혁신처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총수입은 16조 1,481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6,284억원(4.0%) 증가하였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75억원, 공무원연금기금 16조 1,406억원이다.

[2020년도 예산안 인사혁신처 소관 총수입]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결산	2019 ¹⁾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예 산	6,824	5,908	5,908	7,485	1,577	26.7
- 일반회계	6,824	5,908	5,908	7,485	1,577	26.7
기 금	14,881,372	15,513,782	15,513,782	16,140,619	626,837	4.0
- 공무원연금기금	14,881,372	15,513,782	15,513,782	16,140,619	626,837	4.0
합 계	14,888,196	15,519,690	15,519,690	16,148,104	628,414	4.0

주: 1) 기금은 각각 2019년 당초계획안과 9월말 기준 수정계획안을 의미

자료: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20조 975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1조 1,633억원(6.2%) 증가하였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1,945억원, 공무원연금기금 19조 9,030억원이다.

[2020년도 예산안 인사혁신처 소관 총지출]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결산	2019 ¹⁾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예 산	202,213	193,259	193,259	194,525	1,266	0.7
- 일반회계	202,213	193,259	193,259	194,525	1,266	0.7
기 금	17,825,990	18,740,959	18,740,959	19,903,012	1,162,053	6.2
- 공무원연금기금	17,825,990	18,740,959	18,740,959	19,903,012	1,162,053	6.2
합 계	18,028,203	18,934,218	18,934,218	20,097,537	1,163,319	6.1

주: 1) 기금은 각각 2019년 당초계획안과 9월말 기준 수정계획안을 의미

자료: 인사혁신처

나. 세입·세출예산안

인사혁신처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된다.

인사혁신처 소관 2020년도 세입예산안은 488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104억원(△17.6%) 감소하였다.

[2020년도 인사혁신처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86,118	59,280	59,280	48,846	△10,434	17.6

주: 총계 기준

자료: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은 3조 3,454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3,775억원(12.7%) 증가하였다.

[2020년도 인사혁신처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3,628,310	2,967,912	2,967,912	3,345,428	377,516	12.7

주: 총계 기준

자료: 인사혁신처

다. 기금운용계획안

인사혁신처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공무원연금기금으로만 구성된다.

인사혁신처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3조 2,758억원으로 전년 수정계획안 대비 2조 280억원(9.5%) 증가하였다.

[2020년도 인사혁신처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결산	2019		2020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공무원연금기금	17,825,990	21,247,823	21,247,823	23,275,779	2,027,956	9.5

주: 1. 총계 기준

2. 2019년 수정계획안은 9월말 기준

자료: 인사혁신처

라. 재정구조

2020년도 예산안의 인사혁신처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일반회계의 경우 공무원연금기금으로 3조 1,509억원이 전출된다.

(단위: 억원)



주: 총계 기준

자료: 인사혁신처

2020년도 인사혁신처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국민에게 신뢰받는 역량있는 공무원 선발 및 육성, ② 공직사회 근무여건 개선 및 함께하는 공직문화 조성, ③ 인사행정 한류 확산 및 미래 행정환경 변화 대응, ④ 안정적인 공무원 연금 재정 운용 및 기금 운용수익 제고 등에 주력하여 예산이 편성되었다.

2020년도 인사혁신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보수연혁 조사 사업을 통해 수행하려는 ‘공무원 보수제도 연혁 조사 연구’는 전반적인 공무원 보수제도의 변화에 대해 연구용역을 수행하기보다는 보수제도 개혁과 관련된 특정 현안과 연관된 보수제도 변화를 심층적으로 연구·분석하는 방식으로 연구용역 수행 내용이 보완될 필요성이 있다.

둘째,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내실화 사업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 인원의 추천대상 직위 수 대비 선임비율이 하락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고, 핵심인재 발굴 및 조사 내역사업의 경우 동 사업을 통해 발굴한 해외의 국가인재가 실제로 국내 공직에 임용되는 사례가 적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방식 변경 등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1

보수연혁 조사 사업의 연구용역 내용보완 필요

가. 현 황

보수연혁 조사 등 사업은 우리나라 공무원 보수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연혁 및 외국 공무원 보수제도에 대한 연구를 위한 사업으로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사업¹⁾의 내역사업이다. 동 사업은 2020년 신규 사업으로 예산안에는 1억원이 편성되었다.

[2020년도 보수연혁 조사 등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2,159	1,848	1,848	1,042	△806	△43.6
보수연혁 조사 등	0	0	0	100	100	순증

자료: 인사혁신처

나. 분석의견

보수연혁 조사 등 사업에서 조사하려는 우리나라 공무원 보수제도(보수, 수당 및 성과평가제도 등)의 연혁에 대한 기록 관리는 인사혁신처의 고유업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인사혁신처는 동 연구용역을 통해 단순한 보수제도의 연혁에 대한 기록보다는 최근의 보수제도 개혁과 관련되어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분석방법론이 적용되는 것이 필요한 보수제도의 연혁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것으로 연구용역 수행내용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황수환 예산분석관(shhwnag@assembly.go.kr, 788-4643)

1) 코드: 일반회계 1644-303

보수연혁 조사 등 사업은 2020년 신규사업으로 ① 우리나라 공무원 제도에 관련된 ‘공무원 보수제도 연혁 조사 연구 사업’에 7,000만원, ② 외국 공무원 제도에 관련된 ‘외국의 공무원 보수제도 현황 및 개편사례 조사’에 3,000만원, 총 1억원(일반연구비, 260-01목)이 동 사업의 예산으로 편성되었다.

[보수연혁 조사 등 사업 세부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연구 구분	연구기간	소요예산
공무원 보수제도 연혁 조사 연구	5개월	70
외국의 공무원 보수제도 현황 및 개편사례 조사	5개월	30

자료: 인사혁신처

동 사업의 연구과제 중 외국의 공무원 보수제도 현황 및 개편사례 조사의 경우 외국 공무원 보수제도 관련 조사는 해당 국가의 행정체계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요하고, 높은 수준의 언어활용 능력이 요구된다는 점, 공무원 보수제도 및 개편사례를 조사·분석하여 우리나라 공무원 보수제도 개편에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추진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공무원 보수제도 연혁 조사 연구’의 경우 우리나라 공무원의 봉급, 연봉제도, 성과평가제도, 각종 수당제도의 변화 연혁과 변화 사유를 연구용역을 통해 조사·분석하는 것이 주요 연구내용으로 해당 조사내용에 대한 기록관리하는 인사혁신처가 수행하는 고유 행정업무의 일환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단순한 보수제도의 연혁 관련 내용 추적은 인사혁신처가 고유업무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고 전문적인 지식이나 분석방법론의 적용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 측면이 있다.

[공무원 보수제도 연혁 조사 연구의 주요 연구내용]

- 공무원 보수 및 성과 제도 관련 법령 연혁
- 환경변화 등에 따른 각 제도별(항목별) 변천 현황 정리 등

구 분	분 야 (예시)
봉급, 연봉제도	호봉제(봉급표 등) 연혁, 직종별 봉급제도, 연봉제 연혁 등
성과평가제도	근무성적평정, 다면평가, 성과상여금 제도 연혁 등
수당제도	상여수당·가계보전수당·특수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 연혁 등

자료: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보수제도를 대표하는 「공무원 보수규정(1949년~)」은 「국가공무원법」과 더불어 인사관련 법령 중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는 점, 1982년 이전에는 「군인보수법」, 「교육공무원보수규정」, 「재외공무원보수규정」, 「경찰공무원보수규정」 등과 같이 개별적으로 각 부처에서 각각 규정을 제정·운영하였고 이에 따라 보수제도 관련 연혁 기록관리가 미흡한 측면이 있어 연혁에 대한 체계적인 기록관리를 위해 동 연구용역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공무원 보수제도는 공무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공무원 인사제도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고, 공무원 보수에 대하여는 연공적 요소 완화, 수당체계의 단순화 등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공무원 보수제도 연혁 조사 연구’를 통해 기초자료를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해 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무원 보수 관련 제도 개선의 경우 전체적인 과거 연혁에 대한 정보가 경제·행정 환경 및 법·제도 기반이 다른 현재의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시사점이 많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사혁신처는 전체적인 보수연혁 관련 기록 추적보다는 인사혁신처가 사례로 든 보수의 연공적 요소 완화, 수당체계의 단순화와 관련된 보수 연혁에 보다 집중하여 관련된 연혁 변화의 배경 및 결과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분석방법론을 적용하여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것으로 연구용역 내용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III

개별 사업 분석

1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의 등재 인원의 선임비율 제고 필요

가. 현 황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내실화 사업¹⁾은 국가인재 정보 관리 및 서비스 기능 강화를 통해 공공부문 인적자원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동 사업의 2020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1억 2,700만원이 감액된 6억 6,5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0년도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내실화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액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내실화	510	792	792	665	△127	△16.0
국가인재DB 운영 지원 등	417	707	707	590	△117	△16.5
정부 헤드헌팅 및 국민추천제 추진	74	65	65	65	0	0
핵심인재 발굴 및 조사	19	20	20	10	△10	△50.0

자료: 인사혁신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는 각 분야별 인재정보를 취합하여, 개방형 직위, 정무직 공무원, 국가고시 시험위원, 위원회 위원 등의 직위를 수요 부처가 원할 경우 인재 추천서비스나 직접 검색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 2019년 6월 말 기준 30만 4,625명의 인원이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어 있다.

황수환 예산분석관(shhwang@assembly.go.kr, 788-4643)

1) 코드: 일반회계 1644-306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인재 등록 현황]

(단위: 명)

구분	합계	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입법부 (의원 포함)	사법부	헌법 재판소	선관위	공공 기관	민간
DB 등록인원	304,625	33,668	24,838	487	3,503	69	56	7,427	234,577
인적사항 제공	-	제공		미제공					
비 고	-	e사람 연계	인사랑 연계	공개정보 활용 및 개별동의					

자료: 인사혁신처

나. 분석의견

인사혁신처는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내실화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첫째, 동 사업을 통해 운영하는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의 추천 대상 직위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선임비율이 점차 하락하고 있다는 점에서 등재된 인물정보의 확대 및 내실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동 사업을 통해 운영하고 있는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의 활용 현황을 보면 추천대상 직위 수는 2016년 5,774개에서 2018년 11,181개²⁾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추천인원 역시 2016년 25,189명에서 2018년 37,856명³⁾으로 증가하여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의 양적인 활용은 증가하고 있다고 보인다.

그런데, 추천대상 직위 수 대비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서 추천한 인원이 선임되는 비율인 선임비율은 2016년 55.1%에서 2018년 52.0%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해당 자료가 2019년 7월 기준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2018년 3,323명의 추천인원은 인재를 충원한 부처가 결과를 통보하지 않아 통계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황이다.

2) 통보된 추천대상 직위수 10,205개에 미통보직위수 976개가 추가된 갯수

3) 미통보인원을 포함한 총 추천인원 수 기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활용 현황]

연 도	인물정보 활용(선임통보) ¹⁾				결과 미통보로 통계 제외인원 (d)	총 추천인원 (b+d)
	추천대상 직위수(a)	추천인원 (b)	선임인원 (c)	선임비율 (c/a)		
2016	5,774개	25,189명	3,180명	55.1%	-	25,189명
2017	7,028개	23,325명	3,770명	53.6%	325명	23,650명
2018	10,205개	34,533명	5,305명	52.0%	3,323명	37,856명

주: 1) 인물정보 활용 관련 통계에는 미통보인원 및 비통보직위수는 제외
자료: 인사혁신처

추천대상 직위에 대한 선임비율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의 운영성과 중 핵심적인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인사혁신처는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 인물정보의 주기적 현행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아닌 독립헌법기관인 입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인물정보에 대한 DB 확충 등을 통한 현행화 방안 모색 등을 통해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의 인물정보를 확대 및 내실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현지 면담 등을 통해 글로벌 인재를 국가인재DB에 등록하는 핵심인재 발굴 및 조사 내역사업은 등록된 글로벌 인재가 실제 임용되는 사례가 적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방식 개편 등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내실화 사업의 내역사업인 핵심인재 발굴 및 조사 사업은 국내 인적자원 희소분야(AI, IoT, 빅데이터 등), 주요 국정현안 분야(4차 산업혁명, 미세먼지 등) 중심으로 글로벌 인재를 해외 현지에서 인터뷰하고 이들이 우리나라의 개방형 직위 등에 임용될 수 있도록 국가인재DB에 등록하는 사업으로 2020년 예산안에는 전년대비 1,000만원이 감액된 1,0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6년부터 수행해온 동 사업의 성과를 보면 2016년 21명, 2017년 14명, 2018년 32명을 해외 출장을 통한 현지 면담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국가인재DB에 등록하였다.

[핵심인재 발굴 및 조사 사업을 통한 국가인재DB 등록 현황]

(단위 : 백만원)

연 도	출장 기간	출장 인원	예산 집행액	출장 국가	인터뷰 인원	인재DB 등록 인원
2016	5월, 7월, 8월, 11월 (각 3박 5일)	각 2인	20	미국, 프랑스, 독일	21명	21명
2017	7월(5박 7일), 8월(3박 5일)	각 2인	19	미국, 영국, 스위스	14명	14명
2018	9월(5박 7일) 11월(4박 6일) 11월(4박 5일)	각 2인	20	미국, 독일, 싱가포르 등	20명	32명 ¹⁾

주: 1) 32명 중 20명은 인터뷰 인원, 12명은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등록한 인원임
자료: 인사혁신처

그런데, 최종적인 성과인 동 사업을 통해 발굴한 글로벌 인재의 개방형직위 임용성과를 보면 2016년 및 2017년에 각각 1명 총 2명이 임용된 이후에는 2019년 8월 현재까지 임용실적이 없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임용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글로벌 인재의 경우 해당 국가의 관련 분야에서 안정적인 직업 또는 지위를 획득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개방형 직위에 응모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점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인사혁신처는 향후 국내 공모가 예상되는 개방형직위 관련 분야를 중심으로 글로벌 인재를 발굴하고, 개방형직위 외에 정부 위원회 위원, 정책 자문위원 등으로 글로벌인재의 활용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방식으로 동 사업을 통해 국가인재DB에 등록된 글로벌 인재의 활용성과를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

가. 현 황

임대주택건립 사업¹⁾은 무주택공무원에게 시중 전세금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건립·임대하여 공무원 주거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동 사업의 2020년 기금운용 계획액은 799억 4,100만원으로 전년대비 379억 3,900만원 증액 편성되었다.

[2020년도 임대주택건립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액	2019		2020 계획액(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임대주택건립	6,871	42,102	42,102	79,941	37,939	90.3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나. 분석의견

고덕 8단지 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경우 유사한 사업인 개포 9단지 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2020년 예산안에 편성된 재건축 계획 용역을 위한 설계비가 이월되어 집행되지 않도록 면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연금공단이 전 세대를 소유한 공동주택 단지인 개포 9단지와 고덕 8단지의 재건축 연한이 도과함에 따라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 개포 9단지의 경우 사전 준비절차를 거쳐 2019년 8월 시공업체 선정이 완료되어 본격적인 공사가 추진 중이고, 고덕 8단지의 경우 2020년부터 재건축 사업의 최초 절차인 세부개발계획 설계를 진행할 예정이다.

황수환 예산분석관(shhwang@assembly.go.kr, 788-4643)

1) 코드: 공무원연금기금 3251-361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세부개발계획 설계용역을 2020년 4월부터 8개월 동안 수행하고, 2020년 12월부터는 건축물의 기본·실시 설계를 진행하는 것을 계획으로 하여 세부개발계획 설계완료로 전제로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에 22억 2,700만원²⁾을 편성하였다.

[개포 9단지 및 고덕 8단지 현황]

구 분	개포 9단지	고덕 8단지
대지면적	55,153㎡(16,684평)	57,724㎡(17,461평)
세 대 수	690세대	700세대
준공연월	1983.12.	1984.12.
재건축연한	2007.12.(도래)	2010.12.(도래)
용도지역	2종 일반주거	2종 일반주거
사업계획	재건축(2015.1.~2022.9.)	재건축(2018.12.~2026.2.)
총사업비	2,989억원	2,979억원
2020년 계획액	공사비 575억 1,600만원 감리비 16억 9,800만원 부대비 5억 7,400만원	설계비 22억 2,700만원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그런데, 개포 9단지의 경우 세부개발계획 설계 기간이 2015년 10월부터 2017년 10월까지로 세부개발계획 설계에만 2년이 걸렸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무원연금공단의 계획대로 세부개발계획 설계가 8개월 만에 완료되는 것은 용이하지 않아 보인다.

2) 총 기본설계비용 27억 5,400만원 중 세부개발계획 수립 완료까지 지급될 중도금을 계획액 편성

[개포 9단지 및 고덕 8단지 세부일정 비교]

추진절차		개포 9단지	고덕 8단지
설계 및 인허가	지구단위 세부개발계획 설계 용역업체 선정	2015. 10.	2020. 04.
	세부개발계획수립 완료	2017. 10.	2020. 12.
	설계 및 인허가 완료	2019. 03.	2022. 06.
건설공사	시공업체 선정	2019. 08.	2022. 11
	건설공사	2019. 08. ~ 2022. 09.	2022. 12. ~ 2026. 02.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은 개포 9단지의 경우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최초의 재건축 사업으로 개발계획수립 시 적용법령,³⁾ 기부채납 면적 재검토 과정 등으로 세부개발계획 설계가 지연되었으나, 고덕 8단지의 경우 해당 경험을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 8개월 내에 세부개발계획수립을 완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사전협약이 이루어지더라도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필요한 주민의견청취 등의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민원이 발생하는 등 세부개발계획 수립과 관련된 다양한 지연요소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무원연금공단은 이와 같은 사업지연으로 인한 불필요한 계획액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사업관리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

3) 일반적인 재건축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해당 절차가 다수의 공동주택 소유주를 상정하여 소유주들이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여 해당 조합이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공무원연금공단이 모든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개포 9단지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단독 소유주의 건축 관련 규정인 「주택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했다.



경찰청

1

현 황

가. 총수입·총지출

경찰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의 총수입은 일반회계 및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로 구성되며, 총지출은 일반회계 및 2개 특별회계(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된다.

경찰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총수입은 9,043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140억원(1.5%) 감소하였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8,697억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346억원이다.

[2020년도 예산안 경찰청 소관 총수입]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예 산	864,826	918,333	918,333	904,305	△14,028	△1.5
- 일반회계	832,855	882,507	882,507	869,665	△12,842	△1.5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31,971	35,826	35,826	34,640	△1,186	△3.3
합 계	864,826	918,333	918,333	904,305	△14,028	△1.5

자료: 경찰청

경찰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11조 6,165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6,328억원(5.8%) 증가하였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1조 5,343억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778억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44억원이다.

[2020년도 예산안 경찰청 소관 총지출]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예 산	10,264,544	10,975,662	10,983,661	11,616,478	632,817	5.8
- 일반회계	10,191,351	10,895,249	10,903,248	11,534,262	631,014	5.8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69,165	76,146	76,146	77,803	1,657	2.2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4,027	4,267	4,267	4,413	146	3.4
합 계	10,264,544	10,975,662	10,983,661	11,616,478	632,817	5.8

자료: 경찰청

나. 세입·세출예산안

경찰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2개 특별회계(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된다.

경찰청 소관 2020년도 세입예산안은 9,520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113억원(1.2%) 감소하였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8,697억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823억원이다.

[2020년도 경찰청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832,855	882,507	882,507	869,665	△12,842	△1.5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77,730	80,832	80,832	82,340	1,508	1.9
합 계	910,585	963,339	963,339	952,005	△11,334	△1.2

주: 총계 기준

자료: 경찰청

경찰청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은 11조 6,674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6,352억원(5.8%) 증가하였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1조 5,806억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823억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44억원이다.

[2020년도 경찰청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10,232,804	10,939,083	10,947,082	11,580,640	633,558	5.8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72,900	80,832	80,832	82,340	1,508	1.9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4,027	4,267	4,267	4,413	146	3.4
합 계	10,309,731	11,024,182	11,032,181	11,667,393	635,212	5.8

주: 총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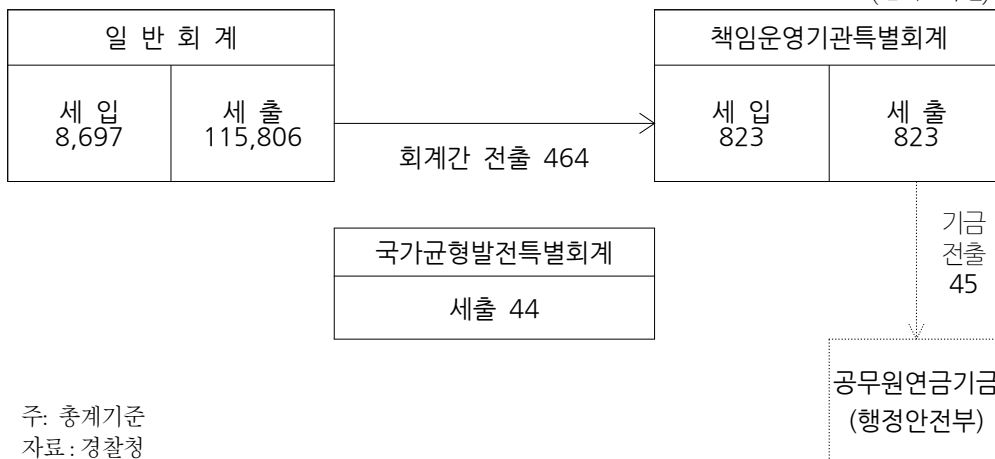
자료: 경찰청

다. 재정구조

2020년도 예산안의 경찰청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일반회계의 경우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로 464억원이 전출되고,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경우 공무원연금기금(행정안전부)으로 45억원이 전출된다.

(단위: 억원)



주: 총계기준

자료: 경찰청

2020년도 경찰청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주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치안역량 강화 ② 사회적 정의를 바로잡는 인권 중심의 법집행 활동 지원 ③ 치안인프라 확충 및 근무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

2020년도 경찰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신규 R&D 사업 추진에 있어서 사업의 최종 목표를 명확히 하는 한편, 사업 시행에 앞서 그에 걸맞은 정책적 이슈 및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수사민원상담센터가 업무 효율성 확보 및 민원서비스 수준의 제고와 같은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사업 수행과정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여성범죄예방 인프라구축 사업을 통해 설치된 방범시설물 등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순찰강화 등 범죄예방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경찰청의 2020년도 신규사업은 총 7개 사업, 69억원 규모이다.

일반회계 사업 중 효율적인 치안활동을 위한 현장지원 기술개발(R&D)사업은 현장경찰관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장비 및 실감형 가상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이고, 미래형 국민 치안서비스 개발(R&D)사업은 긴급하지 않은 민원업무 처리에 활용될 수 있는 AI민원 챗봇을 개발하는 사업이며, 약물이용범죄 사전예방을 위한 휴대용 신속탐지 기술개발(R&D)사업은 주요 성범죄 약물을 포함한 마약류의 신속한 탐지가 가능한 휴대용 센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다.

[경찰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안
일반회계 (7개)	효율적인 치안활동을 위한 현장지원 기술개발(R&D)	1,762
	미래형 국민 치안서비스 개발(R&D)	1,200
	약물이용범죄 사전예방을 위한 휴대용 신속탐지 기술개발(R&D)	2,588
	치안상황관리관기본경비	65
	치안상황관리관기본경비(총액인건비)	21
	세종청기본경비	746
	세종청기본경비(총액인건비)	477
	합 계	6,859

자료: 경찰청

2020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경찰유무선망개선, 경무인사지원, 재난안전관리 사업 등이 있다.

① 경찰유무선망개선 사업은 재난안전통신망 전환에 따라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고, ② 경무인사지원 사업은 경찰관서 출입·통제시설 확충이 신규로 반영되었으며, ③ 재난안전관리 사업은 순찰차에 자동심장충격기를 보급하는 신규 내역사업이 반영되어 예산이 증액되었다.

[경찰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19		2020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13개)	경찰유선망개선	78,584	78,584	146,929	68,345	87.0
	범죄대응역량강화	14,751	14,751	27,179	12,428	84.3
	정보업무전산화(정보화)	980	980	1,749	769	78.5
	경찰관서직장보육시설운영 (민자)	3,314	3,314	5,840	2,526	76.2
	장비관리유지	15,892	15,892	23,039	7,147	45.0
	경무인사지원	1,718	1,718	8,816	7,098	413.2
	수사경찰전문교육	2,511	2,511	3,446	935	37.2
	의경대체지원	46,739	46,739	63,952	17,213	36.8
	경찰복지증진	33,485	33,485	45,296	11,811	35.3
	도로교통공단출연(출연금)	104,285	104,285	127,620	23,335	22.4
	치안활동지원	453,568	453,568	466,010	12,442	2.7
	재난안전관리	1,911	1,911	5,166	3,255	170.3
	긴급구조용 지능형 정밀 측위 기술개발(R&D)	1,150	1,150	2,700	1,550	134.8
책임운영 기관 특별회계 (1개)	장례식장운영	2,876	2,876	3,848	972	33.8

주: 주요 증액사업은 2019년도 추경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인건비, 기
본경비 제외)

자료: 경찰청

II

주요 현안 분석

1

경찰청 신규 R&D 사업 분석

2020년 예산안에 편성된 경찰청 소관 R&D 사업은 총 10개 세부사업이며, 이중 미래형 국민 치안서비스 개발(R&D) 사업 등 3개 사업은 2020년도 예산안에 신규 편성되었다.

[2020년도 경찰청 R&D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결산	2019		2020 예산안 (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실종아동등 신원확인을 위한 복합인지기술 개발	700	975	975	1,250	275	28.2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 (폴리스랩)	1,375	1,815	1,815	2,151	336	18.5
긴급구조용 지능형 정밀측위 기술개발	-	1,150	1,150	2,700	1,550	134.8
자율주행차의 도로주행을 위한 운행체계 및 교통 인프라 연구개발	-	3,700	3,700	3,700	0	0.0
치안과학기술연구개발	9,649	9,018	9,018	5,523	△3,495	△38.8
국민안전감시 및 대응 무인항공기 융합시스템 구축 및 운용	707	545	545	209	△336	△61.7
국민위해인자에 대응한 기체분자 식별 분석 기술개발	917	1,433	1,433	1,450	17	1.2
효율적인 치안활동을 위한 현장지원 기술개발	-	-	-	1,762	1,762	순증
미래형 국민 치안서비스 개발	-	-	-	1,200	1,200	순증
약물이용범죄사건 예방을 위한 휴대용 신속탐지 기술개발	-	-	-	2,588	2,588	순증

자료: 경찰청

정주완 예산분석관(jjw1026@assembly.go.kr, 788-4644)

1-1. 미래형 국민 치안서비스개발(R&D) 사업 취지 명확화 필요

가. 현 황

미래형 국민 치안서비스개발(R&D) 사업¹⁾은 긴급하지 않은 민원 업무 처리에 활용될 수 있는 AI민원 챗봇(chatbot)²⁾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며, 2020년 예산안으로 12억원이 편성되었다.

[2020년도 미래형 국민 치안서비스 개발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 (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미래형 국민 치안서비스 개발(R&D)	-	-	-	1,200	1,200	순증

자료: 경찰청

나. 분석의견

경찰청은 미래형 국민 치안서비스 개발(R&D) 사업의 최종 목표를 명확히 하는 한편, 사업 시행에 앞서 그에 걸맞은 정책적 검토를 실시해야할 필요가 있다.

경찰청은 국민들에게 긴급한 사항이 아닌 일반적인 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82경찰 민원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018년 말 기준으로 197명의 민원상담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1인당 연간 15,716여건(하루 평균 80.1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정주완 예산분석관(jjw1026@assembly.go.kr, 788-4644)

1) 코드: 일반회계 4235-621

2) 챗봇(chatbot)은 인간과의 대화(음성 또는 문자)를 통해서 특정한 작업을 수행하도록 제작된 컴퓨터 프로그램을 말한다.

[경찰청 182센터 근무 현황]

구분	근무인원(현원)	연간 민원처리	1인당 민원처리	1인당 일평균
'16년	205명	3,143,630	15,640건	75.6건
'17년	196명	2,985,829	15,551건	76.5건
'18년	204명	3,095,988	15,716건	80.1건

주: 2019년 현재 근무인원은 200명(현원)

자료: 경찰청

경찰청은 민원 상담 근무자 1인당 처리하는 민원의 양과 종류가 다양해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공이 곤란하여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182경찰 민원 콜센터'에서 처리하는 민원건수(약 310만건) 중, 단순 민원(1분 미만)의 비율이 약 28.4%(88만건)를 차지하고 있다. AI민원 챗봇(chatbot)이 개발되어 단순 민원 상담에 활용되면, 민원업무에 대한 부담을 해소함과 동시에 심층상담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내실 있는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경찰청은 기대하고 있다.

경찰청이 동 사업을 통해 개발하고자 하는 것은 발화자의 음성 인식 및 의도 추론은 물론, 발화자에게 적합한 응답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이며, 이를 위해 2020년 12억원, 2021년 20억원, 2022년 20억원 등 3년간 총 52억원의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다.

[미래형 국민 치안서비스 개발(R&D) 사업 연차별 추진 계획]

연도	주요내용
2020	민원 대화 데이터 분석/구축, 음성 인식 개발 환경 구축 기계학습 기반 언어 이해 기술 개발
2021	음성인식 모델 개발, 문자 상담 서비스 및 챗봇 프로토타입 구현 민원 응대용 챗봇 서버 구현
2022	민원 응대용 음성인식 모델 고도화 및 검증 민원 응대용 챗봇 서비스 통합/검증 민원 응대용 챗봇 서비스 실증

자료: 경찰청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동 사업의 목표가 단순 민원의 효율적 처리를 통한 민원업무 부담감소와 이를 통한 민원서비스 역량제고라면, 기존에 활용되고 있는 기술을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자동응답시스템(ARS)은 민원업무와 관련하여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AI 챗봇(chatbot)의 경우에도 민간을 통해 이미 상용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단순 민원 서비스 처리 기술 개발을 위해 3년간 총 117억 원의 예산 투입하여 R&D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기본적인 기술은 다양한 기관 및 민간에서 연구개발되어 오픈되어 있으나, 치안 분야에서 사용하는 고유·전문 용어가 학습되어 있지 않아 그대로 사용할 수 없어 추가 연구개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동 사업은 1차 년도에 교통 등 단순·반복 민원에 대한 연구·학습을 위주로 진행될 예정이지만, 최종적으로는 ‘182경찰 민원 콜센터’로 접수되는 비긴급 민원 전반에 대한 상담을 지원하는 AI 챗봇(chatbot) 개발까지를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즉, 경찰청은 동 사업을 통해 단순·반복 민원에 대한 상담뿐만 아니라, 문맥 추론이 필요한 전문적인 상담까지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적인 민원 상담까지 인공지능으로 대체하는 것은 민원상담의 방식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으로, 보다 신중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민원인들의 인공지능 상담에 대한 선호, 고용문제 등 제반 관련 사항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실질적 적용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찰청은 사업의 최종 목표를 명확히 하는 한편, 사업 시행에 앞서 그에 걸맞은 정책적 고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2. 약물이용범죄 사전예방을 위한 신속 탐지기술 개발(R&D) 사업의 면밀한 계획 수립 필요

가. 현 황

약물이용범죄 사전예방을 위한 신속 탐지기술 개발(R&D)사업¹⁾은 주요 성범죄 약물을 포함한 마약류의 신속 탐지가 가능한 휴대용 센서 기술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며, 2020년 예산안으로 25억 8,8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0년도 약물이용범죄사전예방을 위한 신속탐지기술 개발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 (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약물이용범죄 사전예방을 위한 신속 탐지기술 개발(R&D)	-	-	-	2,588	2,588	순증

자료: 경찰청

나. 분석의견

약물이용범죄 사전예방을 위한 신속 탐지기술 개발(R&D) 사업의 일부 과제는 사업목표에 부합하지 않거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경찰청은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경찰청이 사용하고 있는 마약탐지 키트는 마리화나/GHB/코카인/필로폰/케타민 5종의 마약에 대한 탐지만 가능한 상황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1회용인 마약탐지 키트는 종류별로 1종의 마약에만 반응할 수 있어 실제 마약 범죄 단속·수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주완 예산분석관(jjw1026@assembly.go.kr, 788-4644)

1) 코드: 일반회계 4235-623

또한, 주류·음료 등에 약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국산 감지키트가 없어, 일반 국민들이 스스로 마약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경찰청은 마약류의 사전 정밀진단 기술 개발을 통해 사전인지 및 사후 검출이 어려운 약물²⁾을 이용한 범죄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청은 동 사업을 통해 주요 마약류 탐지 기술을 개발하여 약물이용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반국민들에게 휴대용 마약탐지키트를 보급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이 약물이용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동 사업에 1) 휴대용 마약현장진단 센서 및 신종마약대응 진단 플랫폼 개발 2) 진단-휴대용 유연소재 인터페이싱 및 마약진단 정보관리 모바일 App개발 3) 휴대용 마약진단 기술 국내 실효성 현장실증 및 마약류 관리대응체계 구축 등 3개 과제를 목표로 설정하여 2020년부터 3년간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연도별 사업 추진 계획]



자료: 경찰청

동 사업에서 추진하는 ‘마약진단 정보관리 모바일 App개발’은 국민들에게 시중에 유통되는 마약의 종류 및 예방법을 홍보·안내하고, 마약탐지키트 사용 정보를 등록·공유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마약의 종류 및 예방법을 홍보·안내하는 것은 연구개발 사업과제로 적절하지 않으며, 마약탐지키트 사용 정보의 등록·

2) 경찰청에 따르면, 물뿔(GHB), 케타민(Ketamine), 로힙놀(Rohypnol), 필로폰(Philoapon), 엑스터시(Ecstasy), 모르핀(Morphine), 코카인(Cocaine), 헤로인(Heroin) 등은 '약물 성범죄'에 종종 사용되는데, 무색·무취로 사전에 범행을 인지하기도 어렵고 빠른 반감기로 인하여 사후 적발에도 어려움이 있다.

공유는 마약탐지키트가 개발·보급이 일정 수준까지 완료되기 전에는 활용 가능성이 매우 낮아 실효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개발된 마약탐지키트는 효과성이 검증되어야만 활용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경찰청은 동 사업을 통해 실제현장에서 단속되는 마약(주류 및 다른 마약과 섞인 혼합물)에 대한 검증실험을 수행할 계획이다.

개발된 키트는 실험실에서 불순물이 없는 순수한 표준마약으로 반응 실험하여 개발된 것이므로, 검증실험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된다. 다만, 현장진단 성능 개선을 위한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휴대용 마약진단 키트의 시작품을 제작·보급하는 것은 그 효과성 등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약류 등이 있는 곳에서 직접 휴대용 키트를 사용해야만 탐지 능력을 검증할 수 있으므로, 일반에게 보급하는 것으로는 유의미한 정보를 얻어내기 어렵다. 더욱이 일반 국민이 휴대용 키트 시작품을 사용하였음에도 마약류를 탐지하지 못하여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까지 고려한다면, 연구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시작품 보급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경찰청은 동 사업의 세부과제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목표에 부합하는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III

개별 사업 분석

1

AI 기술 활용 피해자 조사에 대한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가. 현 황

여성대상범죄예방 및 수사활동¹⁾ 사업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수사 역량강화 지원 사업으로, 사회적 약자 대상 성폭력 피해확인 및 예방, 아동·장애인 성폭력 피해 진술에 대한 전문가 분석 실시, 성폭력 피해조사 속기사 참여 등을 실시하고 있다. 동 사업의 2020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18억 4,800만원 증액된 135억 6,900만원이 편성되었다.

‘AI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한 성폭력피해자 조사-지원’ 내역사업은 음성인식 AI 기술을 활용, 수사관의 별도 조서 작성 없이 수사관과 피해자간 조사 내용을 자동 문서화하여 풍부한 피해 진술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2020년 예산안에 4억 1,4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2020년도 여성대상범죄예방 및 수사활동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 (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여성대상범죄예방 및 수사활동	4,912	11,721	11,721	13,569	1,848	15.8
AI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한 성폭력피해자 조사-지원	-	-	-	414	414	순증

자료: 경찰청

정주완 예산분석관(jjw1026@assembly.go.kr, 788-4644)

1) 코드: 일반회계 1132-312

나. 분석의견

경찰청은 ‘AI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한 성폭력피해자 조사-지원’ 사업 실시에 앞서, 시범사업 성과 등 제반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경찰청은 성폭력 피해자 조사 시 2차 피해 방지를 방지하기 위해 2019년부터 ‘성폭력 피해자 표준 조사모델’을 개발·시행하고 있다. 또한 경찰청은 이러한 조사 모델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관들이 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피해자와 자유롭게 문답하고, 조서는 속기사가 작성하도록 하는 ‘속기사 활용 조사’를 시범 운영하였다. ‘속기사 활용 조사’는 2019년 3월과 4월 2개월 동안 서울 구로경찰서 등 5개 경찰서에서 총 52건의 사건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속기사를 활용한 조사는 풍부한 진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피해자들이 느끼는 제3자의 조사참여에 대한 부담, 속기조서 외부 유출 가능성 등이 문제될 우려가 있다.

‘AI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한 성폭력피해자 조사-지원’ 내역사업은 성인인 성폭력 등 피해자 중 희망하는 사람에 한하여, 기존의 피해자 진술조서를 AI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한 진술조서로 대체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이와 같은 방식이 적용되면, 조사관과 피해자간 대화형식의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내용은 AI 단말기에 자동으로 기록된다. 조사관은 조서 내용을 보면서 표기 오류가 있는 경우 실시간 수정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진술을 확보할 수 있다.

경찰청은 속기사 대신 음성인식이 가능한 AI 단말기를 피해자 조사에 적용함으로써, 풍부한 진술을 이끌어내면서도 피해자 부담을 경감시키고 조사내용 유출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9년 10월부터 연말까지 AI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한 피해자 조서 작성 시범 운영을 실시할 계획이며, 실시 대상 관서는 ‘속기사 활용 조사’를 실시하였던 5개 경찰서(서울 구로, 부산 사상, 인천 서부, 대구 달서, 용인 동부)이다.

다만, 시범사업이 2019년말까지 진행된다는 점에서, 2020년 본 사업을 시작하는 시기는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시범사업 실시에 대한 사후 평가 기간을 거침으로써, AI 단말기를 활용한 피해자 조사가 경찰 조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지, 유의미한 수의 피해 진술을 확보할 수 있는지, 기술적인 보완사항은 없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찰청은 2020년 본 사업 추진에 앞서 시범사업 실시 결과에 대한 평가를 철저히 시행하는 한편, 실시 대상 관서 등 제반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범죄수사역량강화 사업¹⁾은 수사장비 현대화, 수사제도 개선 등을 통해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0년 예산안에는 전년대비 28억 2,600만원 증가한 540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다.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수사민원상담센터’ 사업은 경찰서에 고소·고발 등 민원 접수 시, 변호사가 참여하여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며, 2020년 예산안 규모는 전년대비 22억 7,200만원 증액된 32억 8,500만원이다.

[2020년도 범죄수사역량강화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 (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범죄수사역량강화	18,055	51,224	51,224	54,050	2,826	5.5
수사민원상담센터	1,013	1,013	1,013	3,285	2,272	224.3

자료: 경찰청

나. 분석의견

경찰청은 업무 효율성 확보 및 민원서비스 수준의 제고와 같은 ‘수사민원상담센터’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사업 수행과정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형사 사건으로 접수된 사건 중 상당수는 민사사건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불필요한 수사개시에 따른 경찰 행정력 낭비의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사기 사건 중 기소 송치 건은 약 34%에 불과하며, 경찰청은 이외의 상당수가 사인 간 민사적 분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주완 예산분석관(jjw1026@assembly.go.kr, 788-4644)

1) 코드: 일반회계 1231-311

[최근 3년간 사기 사건 현황]

(단위: 건)

구분	기소	불기소	기타	합계
2016년	98,111	99,755	75,979	273,845
2017년	92,330	89,468	78,131	259,929
2018년	100,447	95,620	102,774	298,841

주: 기타 항목에는 기소중지, 이송, 참고인중지 등을 포함

자료: 경찰청

‘수사민원상담센터’는 고소·고발 등 민원이 있을 경우, 변호사가 참여하여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경찰청은 이를 통해 불필요한 고소·고발 사건 접수를 지양하면서도, 단순한 사건 접수 반려가 아닌 실질적 민원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사민원상담센터’ 2015년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었고, 2019년 현재 113개 경찰서에서 운영 중이다. 2020년에는 146개 경찰서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연도별 수사민원상담센터 운영 현황]

구분	'17년	'18년	'19. 8월
운영개소 수	79개소	99개소	113개소
상담 건수	177,741건	191,156건	152,461건
참여 변호사 인원	1,652명	1,709명	1,855명

주: ‘수사민원상담센터’에 위촉된 변호사의 상담비용은 시간당 3만원으로 책정되었으며, 2020년 변호사 상담비용으로 편성된 금액 규모는 31억 5,400만원이다.

자료: 경찰청

그런데 ‘수사민원상담센터’에 위촉된 변호사가 상담하는 사건은 고소·고발 등 형사사건에 해당되지 않는 건이므로, 대부분 민사사건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이 굳이 개입할 필요가 없는 사건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민원인이 경찰서를 경유하여 민사사건에 대한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민원인 또는 변호사가 ‘수사민원상담센터’ 민사사건 상담의 통로로 인식하게 되면 사업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고 오용될 우려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청은 변호사 위촉시 ‘위촉 변호사 준수사항’을 고지하고, 준수사항 위반시 즉시 해촉함으로써 사건수임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위촉 변호사 준수사항]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 상담한 당해 민형사 사건을 수임하여서는 안된다.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수임사실을 담당경찰관에게 고지해야 하며, 해당 경찰서 위촉 변호사에서 자동 해촉된다. 수임시부터 2년간 해당 경찰서에 변호사로 위촉될 수 없다.

자료: 경찰청

다만, ‘위촉 변호사 준수사항’에서는 “당해 민형사 사건”의 수임만을 금지하고 있어, ‘수사민원상담센터’가 변호사 상담의 통로 역할을 할 위험성은 작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경찰청은 ‘수사민원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민원서비스 수준과 경찰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확보하는 한편,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운영 과정에서 보다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유지 사업¹⁾은 국민의 생활안전을 확보하고 지역경찰의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23억 8,300만원 증액된 180억 5,700만원이 편성되었다.

경찰청은 동 사업의 일환으로 ‘여성범죄예방인프라구축’ 내역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동 내역사업은 여성안심귀갓길에 방범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며, 2020년에는 전년대비 10억 2,800만원 증액된 15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0년도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유지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 (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범죄예방및생활질서유지	12,582	15,674	15,674	18,057	2,383	15.2
여성범죄예방인프라구축	482	482	482	1,510	1,028	213

자료: 경찰청

나. 분석의견

경찰청은 ‘여성범죄예방인프라구축’ 사업을 통해 설치된 방범 시설물 등을 유지 관리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하는 한편, 순찰강화 등을 통해 범죄예방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경찰청은 여성의 귀갓길 불안감을 최소화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여성 안심귀갓길을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2019년 9월말까지 지정된 여성안심귀갓길은 총 2,491개소이다.

정주완 예산분석관(jjw1026@assembly.go.kr, 788-4644)

1) 코드: 일반회계 1131-311

‘여성범죄예방인프라구축’ 사업은 여성안심귀갓길 등 범죄취약지역에 방범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시작되었다. 경찰청은 2018년에는 318개소에 방범 시설물 등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2019년에는 300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0년에는 전년대비 대폭 증가한 1,102개소를 대상으로 방범 시설물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2020년 여성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 계획]

대상: 여성안심귀갓길 등 범죄취약지역 1,102개소
설치시설: 신고안내표지판, LED 디자인등(燈), 양방향통신 비상벨, 반사경
소요예산(안): 15억 1,000만원

자료: 경찰청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경찰청은 범죄 취약요인이 큰 곳부터 우선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방범 시설물이 훼손 등으로 인하여 기능을 상실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시설물 설치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여성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 사업의 지역 선정 기준]

- ① 야간 조도 : 평균 조도 20lux* 미만 혹은 주민이 ‘어둡다’고 느끼는 지역
* 20lux : 15m 이상의 거리에서 상대방을 인식할 수 있는 최소 밝기
- ② 방범시설 유무 : 비상벨 등 방범시설이 없거나,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 ③ 사각지대 유무 : 골목 모퉁이 등 골목길 내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지역

자료: 경찰청

그런데 동 사업의 방범 시설물 등 설치하는 경찰청이 담당하지만, 유지관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므로 범죄취약 요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으로 인하여 방범 시설물 등의 설치가 지연되거나, 관리소홀로 인한 문제를 경찰청이 직접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또한, 여성의 귀갓길 불안의 경감과 범죄 예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방법시설물 설치뿐만 아니라, 순찰강화 등의 대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경찰인력을 통해 순찰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상황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자율방범대 등 봉사단체와의 협업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경찰청은 설치된 방법 시설물 등을 유지관리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하는 한편, 순찰강화 등을 통해 범죄예방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아동청소년보호 및 수사활동 사업¹⁾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학교폭력 등 청소년 범죄에 대한 예방·단속, 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예방·단속 등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의 2020년 예산안으로 전년 대비 1억 7,600만원 증가한 135억 9,800만원이 편성되었다.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가정폭력·아동 등 학대근절활동’ 사업은 학대예방경찰관(APO : Anti-abuse Police Officer) 운영을 통해 가정폭력과 아동·노인·장애인 학대를 예방·단속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1억 3,500만원 증가한 12억 2,6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0년도 아동청소년보호 및 수사활동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 (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아동청소년보호및수사활동	12,935	13,422	13,422	13,598	176	1.3
가정폭력·아동등 학대근절활동	1,091	1,091	1,091	1,226	135	12.3

자료: 경찰청

나. 분석의견

경찰청은 증가하는 가정폭력 등 학대사건 대처를 위한 학대예방경찰관의 인력 충원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학대예방경찰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주완 예산분석관(jjw1026@assembly.go.kr, 788-4644)

1) 코드: 일반회계 1132-311

2013년 출범한 ‘가정폭력 전담경찰관’은 가정폭력 뿐만아니라 아동·노인학대 예방·단속 업무를 포괄하기 위해 2016년부터 ‘학대예방경찰관’으로 확대·개편 하였다. 학대예방경찰관은 관련사건의 예방·단속은 물론, 피해자 사후지원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를 병행하고 있다.

[학대예방경찰관 수행업무]

① 학대의심 신고시, 학대 정황 등 모니터링을 위한 현장 동행 출동
② 재발우려가정 및 학대위험 대상자 관리 및 지속 모니터링
③ 아동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자체 등 유관기관 間 협력
④ 발견 제고를 위한 범정부 추진 합동 점검 등 협조
⑤ 치료지원·법률지원·상담연계·생활지원 등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지원
⑥ 가정폭력, 아동·노인학대 예방 및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자료: 경찰청

경찰청은 가정폭력 등 학대사건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지속적으로 인력규모를 확대하고 있으며, 2019년 9월말 현재 총 정원은 603명이다.

[학대예방경찰관 인력 및 관리 대상]

(단위: 명, 호)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정원	138	349	411	529	603
현원	250	386	499	528	561
관리대상 가정	15,026	14,283	11,992	11,767	13,568
1인당 평균 관리가정	108.9	40.9	29.2	22.2	22.5

주: 1. 신고이력·입건전력, 임시조치 신청 등 기준에 따라 112 신고가정을 선별하여 관리대상가정 선정

2. 2019. 9. 20. 정원 반영(+74명), 2020년 66명 증원 요청

자료: 경찰청

한편, 학대예방경찰관의 수행업무가 일반 경찰업무와 구별되는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경찰청은 △심리상담·사회복지·아동청소년 관련 학위 또는 자격증 보유자 △경찰인재개발원·교육센터 전문교육 이수자 △여성청소년기능

실무 경력자 등 관련 전문 자격을 충족한 자를 학대예방경찰관으로 우선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2019년 현원 기준,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학대예방경찰관은 155명으로 전체의 28%, 전문교육 이수한 경우는 전체의 186명으로 33%에 머물러 있어 전문성 확보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더욱이 학대예방경찰관 중 신규 또는 1년 미만 인 인력은 320명으로 전체의 57%에 불과하므로,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이 더욱 중요한 상황이다.

[학대예방경찰관 경력 현황]

(단위: 명)

구분	신규 및 1년 미만	1년 ~ 2년	2년 이상	계
인원	320	124	117	561

주: 2019년 학대예방경찰관 현원 기준

자료: 경찰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경찰청도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격증 취득, 전문교육 이수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각 지방청에서 실시하는 ‘가정폭력·학대 대응 실무과정’은 교육기간이 2일에 불과하여 전문성 제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가정폭력·학대 예방 전문과정’은 연 교육인원이 175명으로 증가하는 학대예방경찰관의 교육수요를 모두 감당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학대예방경찰관 전문교육 현황]

수행기관	교육 내용	교육 횟수(기간)	교육 인원(총)
경찰인재개발원	가정폭력·학대 예방 전문과정	연 7회(2주)	175명
각 지방청	가정폭력·학대 대응 실무과정	연 28회(2일)	1,045명

자료: 경찰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경찰청은 증가하는 가정폭력 등 학대사건 대처를 위한 학대예방경찰관의 인력 충원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학대예방경찰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현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세입예산안은 104억 6,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6억 2,700만원(1,148.8%) 증가하였다.

[2020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1,603	838	838	10,465	9,627	1,148.8

주: 총계 기준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은 7,298억 4,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862억 7,400만원(112.4%) 증가하였다.

[2020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385,046	343,572	343,572	729,846	386,274	112.4

주: 총계 기준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의 총수입·총지출은 세입·세출예산안 총계와 같다.

황수환 예산분석관(shhwang@assembly.go.kr, 788-4643)

2020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실시를 위해 국회의원선거관리, 재외선거관리, 선거보전금, 정당보전금 등 선거관련 사업 예산을 큰 폭으로 증액(총증액분의 98% 이상)편성하였으며, ② 한국선거제도해외전파(ODA) 사업 예산 중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운영예산을 국제교류협력 사업으로 이관하여 편성하였다.

2020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국회의원선거관리 사업 예산 중 군인, 경찰공무원에 대한 선거공보 발송요청 우편요금의 경우 2016년 국회의원 선거를 기준으로 발송요청자를 계상하였지만, 최근에 실시된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제7회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기준으로 보면 발송요청자수가 과다 예측된 측면이 있어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

둘째, 재외선거관리 사업은 재외선거 투표율이 낮은 수준인바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해외선거 투표지의 국내 회송 요금 예산의 경우 기존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율을 고려하여 적정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국회의원선거관리 사업 예산 중 군인, 경찰공무원에 대한 선거공보 발송요청 우편요금 적정예산 편성 필요

가. 현 황

선거운동관리 사업은 2020년 4월 15일 실시예정인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벽보 첩부·철거, 선거공보 발송 등 선거운동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국회의원선거관리 사업¹⁾의 내역사업이다. 동 사업의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순증하여 284억 3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0년도 국회의원선거관리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국회의원선거관리	0	1,696	1,696	226,528	224,832	1326.6
선거운동관리	0	0	0	28,403	28,403	순증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가 4년마다 실시됨에 따라 국회의원선거관리 세부사업 및 내역사업인 선거운동 관리 사업 예산은 4년의 주기성을 가진다. 국회의원선거관리 사업의 2020년 예산안의 경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된 2016년 예산액을 기준으로 344억 1,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증액 사유는 우편요금 증가 및 사전투표율 증가 예상²⁾에 따른 사전투표관리 내역사업 예산

황수환 예산분석관(shhwang@assembly.go.kr, 788-4643)

1) 코드: 일반회계 1131-301

2) 제20대 국회의원 선거(2016년) 12.2% → 제19대 대통령선거(2017년) 26.1% → 제7대 전국동시지방선거(2018년) 20.1%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2020년) 23.1(예상치, 예산안 편성 기준)

증액(175억 3,500만원 증액), 투표 및 개표 사무관계자 수당 인상(4만원 → 5만원) 및 단가증가(우편요금, 투표함 수·회송 요금 등)에 따른 투표관리 내역사업과 개표관리 내역사업의 예산 증액(투표관리 내역사업 79억 3,200만원 증액, 개표관리 내역사업 51억 7,100만원 증액) 등이다.

선거운동관리 내역사업은 2016년 대비 7억 6,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 증액사유는 임금단가 상승(일급기준 64,150원→ 72,020원)에 따른 선거공보 발송인부임 증가(5억 6,100만원 증액)이다.

[2016년 대비 2020년 국회의원 선거관리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2020 예산안(B)	증감	
	예산액(A)	결산액		B-A	(B-A)/A
국회의원선거관리	192,118	188,241	226,528	34,410	17.9
선거운동관리	27,638	25,746	28,403	765	2.8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6년 대비 2020년 국회의원 선거관리 사업 예산안의 주요증액 내역]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증액사유	2016 예산	2020 예산안	증감
사전투표관리	· 선거우편에 대한 특수취급수수료 신설 (기존요금에 추가금액 2,000원) · 사전투표율 증가 예상에 따른 관련 비용 증가	31,261	48,796	17,535
투표관리	· 투표 및 개표사무관계자 수당 인상 (4만원 → 5만원) · 선거우편에 대한 특수취급수수료 신설 (기존요금에 추가금액 2,000원)	40,250	48,182	7,932
개표관리	· 투표함 수·회송 요금 증가 (임차차량 단가 조정)	9,052	14,223	5,171
선거운동관리	· 임금단가 상승(일급기준 64,150원→ 72,020원)에 따른 선거공보 발송인부임 증가 (5억 6,100만원 증액)	27,638	28,403	765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나. 분석의견

군인, 경찰공무원의 선거공보(투표안내문) 발송요청 우편요금의 경우 최근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인 제19대 대통령선거와 제7회 동시지방선거의 우편발송 비율 추이를 고려하여 적절한 예산을 편성할 필요성이 있다.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제65조제5항³⁾에 따라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관할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거주지로 책자형 선거공보를 발송해 줄 것을 서면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책자형 선거공보 발송요청을 서면으로 할 경우 해당 우편요금을 국회의원선거관리 사업의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직전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인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유사하게 16만명이 선거공보 발송요청을 서면으로 신청하는 것으로 예상하여 7억 4,300만원을 2020년 예산안으로 편성하였다.

[군인·경찰공무원의 선거공보 발송 관련 2020년 예산안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세부내역	예산안 편성내역	예산액
발송신청서 등기요금(회송)	2,220원 × 160,000명	355
수취인부담수수료	(2,220원+2,000원) × 160,000명 × 0.1	68
특수취급수수료	2,000원 × 160,000명	320
합계	-	743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 「공직선거법」

제65조(선거공보) ⑤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선거인 중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거주지로 책자형 선거공보를 발송해 줄 것을 서면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장·경찰관서의 장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소속 군인·경찰공무원에게 선거공보의 발송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그런데, 법령에 따라 선거공보 발송요청은 서면뿐만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고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서 홈페이지 신청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가장 최근 선거인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서면 신청 인원이 4만 6,993명으로 5만명이 되지 않았다.

[군인·경찰공무원의 선거공보 발송요청 유형별 현황]

(단위: 명, %)

구 분	계	유형별	
		서 면	홈페이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395,765	164,084(41.46)	231,681(58.54)
제19대 대통령 선거	344,291	58,577(17.01)	285,714(82.99)
제7회 전국동시지방 선거	325,671	46,993(14.43)	278,678(85.57)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군인 및 경찰의 선거공보 발송요청과 관련된 예산의 일부는 최근 전국단위 국회의원 선거의 추세를 고려하여 감액하여 편성할 필요성이 있다.

가. 현 황

재외선거관리 사업¹⁾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선거일: 4월 15일)의 재외선거 관리를 위한 사업이다. 동 사업의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38억 5,700만원이 증액된 85억 2,8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0년도 재외선거관리 사업의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 (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재외선거관리	581	4,671	4,671	8,528	3,857	82.8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가 4년마다 실시됨에 따라 동 사업의 예산 역시 4년의 주기성을 가진다. 동 사업의 2020년 예산안의 경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된 2016년 예산액을 기준으로 1억 5,3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대비 2020년 재외선거관리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2020 예산안(B)	증감	
	예산액 (A)	결산액 ¹⁾		B-A	(B-A)/A
재외선거관리	8,681	9,793	8,528	△153	△1.8

주: 1) 추가투표소 및 영구명부제도가 예산 확정이후에 도입됨에 따라 선거보전금 사업의 집행잔액 26억 2,400만원을 이·전용하여 예산현액 112억 5,000만원 중 97억 9,300만원 집행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황수환 예산분석관(shhwang@assembly.go.kr, 788-4643)

1) 코드: 일반회계 1131-305

나. 분석의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첫째, 재외선거의 경우 투표율이 상승하고는 있지만 절대적인 수준에서 낮은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재외선거가 실시되는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의 재외선거 투표율을 보면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재외국민 수 대비 투표율이 2.5%,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3.2%로 투표율이 개선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이고 대통령 선거에 비해서 절반수준이어서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율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주요 재외선거별 투표율 현황]

(단위: 명, %)

구 분	재외 국민수 (a)	확정 선거인수 (b)	투표자수 (c)	재외국민 수 대비 투표율 (c/a)	확정 선거인 수 대비 투표율 (c/b)
제19대 국회의원선거	2,236,819	123,571	56,456	2.5	45.7
제18대 대통령선거	2,236,819	222,389	158,196	7.1	71.1
제20대 국회의원선거	1,978,197	154,217	63,797	3.2	41.4
제19대 대통령선거	1,978,197	294,633	221,981	11.2	75.3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의 인터넷 신고·신청 제도 도입, 4만명 이상 재외국민이 있는 국가에 대한 추가투표소 설치, 해당 선거 직전에 실시한 선거의 확정된 재외선거인명부를 해당 선거에도 포함하여 재외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재외선거인 영구명부 제도 도입 등의 제도개선을 수행하고 있지만 해당 제도가 도입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역시 직전 국회의원 선거 대비 투표율이 0.7%p 상승하는데 그쳤다.

또한 인터넷 신고·신청 제도 및 재외선거인 영구명부 제도 도입에 따라 확정 선거인수는 크게 증가하였지만 확정 선거인 수 대비 투표율의 경우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율은 하락하였다.

이와 같이 재외선거의 투표율이 낮은 이유는 재외선거의 경우 우리나라 국민은 해당 국가에 폭넓게 거주하고 있는데 반하여 재외선거투표소는 재외공관별로 설치되도록 되어 있어 추가투표소를 고려하더라도 대통령선거 재외선거가 있던 2017년 기준²⁾ 투표소는 204개소에 불과하나 재외국민은 181개국 268만 7,114명³⁾에 이르는 재외국민이 분포하고 있어 국가 당 평균 투표소가 1개를 조금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해당 투표소에 직접 방문하여 투표하여야 하는 현행 재외선거 절차상 선거권자의 투표권 행사 편의성이 낮기 때문이다.

2)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투표소는 선거일 전 20일인 2020년 3월 26일 확정됨

3) 외교부의 「재외동포현황 2019」에 따른 재외국민 현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재외선거의 투표율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재외선거권자가 거주지에서 투표할 수 있는 방안(전자투표, 우편을 이용한 투표) 등 투표 편의성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재외선거 투표지의 국내 회송 요금의 경우 기존 국회의원 선거의 재외선거 투표율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편성될 필요성이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 투표지의 국내 회송을 위하여 재외선거 투표자 수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동일한 기준으로 추정 재외선거권자수(213만 7,762명)의 8%(투표율)에 해당하는 17만 1,047명으로 예상하여 재외선거 투표지 국내 회송 요금을 7억 9,400만원으로 편성하였다.

[재외선거 투표지 국내 회송 요금 관련 2020년 예산안 편성 내역]

세부내역	예산안 편성내역	예산액
국내 회송 우편요금	4,642원 × 171,047명 (우편단가) (예상 재외선거 투표자 수)	794백만원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런데,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직전 국회의원 선거(제20대 국회의원 선거)투표율은 3.2%로 8%의 투표율을 기준으로 동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직전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율을 고려할 때 합리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율이 높았다는 점, 다당제 형태로의 국내 정치구도 전환으로 인해 재외국민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표출이 예상됨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의 재외선거 투표율도 상당 부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여 8%의 투표율을 기준으로 해당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재외선거 확정 선거인수가 2020년 예산 편성 기준 재외선거 투표자 수보다 적은 15만 4,271명이었고, 확정 선거인 수 대비 투표율이 50%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할 필요성이 있다.

III

개별 사업 분석

1

(사이버 선거연수 및 교육 사업) 콘텐츠 변환 대상 교육과정 중 일부 과정의 변환필요성 제고 필요

가. 현 황

사이버 선거연수 및 교육 사업은 사이버 선거교육 콘텐츠를 관리 운영하여 선거와 관련된 직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육 및 연구기반조성 사업¹⁾의 내역사업이다. 동 사업의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1억 1,300만원이 증액된 5억 6,3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0년도 사이버 선거연수 및 교육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교육 및 연구기반조성	1,236	1,221	1,221	1,313	92	7.5
사이버 선거연수 및 교육 사업	442	450	450	563	113	25.1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나. 분석의견

사이버 선거연수 및 교육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이버교육 동영상 교육콘텐츠 변환 대상 교육과정 중 일부는 최근 수강실적이 저조하여 교육콘텐츠 변환의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황수환 예산분석관(shhwang@assembly.go.kr, 788-4643)

1) 코드: 일반회계 1133-33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아도비社의 플래쉬 서비스 지원 중단²⁾으로 인해 해당 포맷으로 제작된 사이버교육 콘텐츠를 동영상 형태의 포맷으로 변환할 예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콘텐츠 변환을 위해 1억 2,100만원을 2020년 예산안에 증액 편성하였다.

[사이버교육 과정 데이터 유형별 현황]

(단위: 과정 수)

전체 (146)		공동활용 (102)		자체제작 (44)	
동영상(12)	플래시(134)	동영상	플래시(102)	동영상(12)	플래시(32)
12	134	0	102	12	32 (31과정 변환)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런데 변환예정인 사이버교육 과정의 최근 3년간(2016 ~ 2018년) 학습인원 현황을 보면 31개 전체 과정의 연평균 수강인원은 848명인데 바람직한 민주시민, 대화와 배려의 민주시민도전기 등 민주시민교육 관련 강의 등 5개 과정은 최근 3년간 수강생이 없거나 매우 적고, 제작연도 또한 2005년에서 2011년으로 오래되어 해당 사이버교육 과정의 경우 동영상으로 변환하기보다는 해당 과정을 새롭게 제작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보인다.

2) 그래픽, 동영상 처리, 게임제작 등을 위한 프로그래밍언어로 2020년에 플래쉬에 지원을 중단 예정

[사이버교육 과정 중 수강인원 수가 저조한 과정 현황]

(단위: 학습인원 수)

과정명	연평균	2016년	2017년	2018년	제작연도
바람직한 민주시민	0	0	0	0	2008
대화와 배려의 민주시민도전기	8	25	0	0	2009
민주시민교육 방법론	0	0	0	0	2005
참여식 교수법	8	25	0	0	2010
사이버 정당·정책 교육 프로그램	0	0	0	0	2011
31개 변환 과정 전체 평균	848	756	669	1,118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초 31개 과정의 216차시에 대한 예산(1억 5,100만원)을 정부예산안 편성단계에서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와 협의과정에서 174차시에 대한 예산(1억 2,100만원)이 반영되어 31개 과정 중 일부 과정을 선별적으로 변환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강인원 수가 저조한 과정의 경우 변환보다는 재개발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설명한 바와 같이 민주시민교육 관련 강의 등 최근 3개년 수강실적이 미흡한 5개 강의의 경우 사이버교육 콘텐츠 변환보다는 교육과정 재개발을 통해 강의수요를 확대할 수 있는 콘텐츠로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작성할 필요성이 있다.



소방청

1

현 황

가. 세입·세출예산안

소방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된다.

소방청 소관 2020년도 세입예산안은 35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10억원(37.9%) 증가하였다.

[2020년도 소방청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778	2,537	2,537	3,499	962	37.9

자료: 소방청

소방청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은 1,851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436억원(19.1%) 감소하였다.

[2020년도 소방청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181,028	219,720	228,692	185,069	△43,623	△19.1

자료: 소방청

한편, 소방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의 총수입·총지출은 세입·세출예산안 총계와 같다.

오덕근 예산분석관(whale@assembly.go.kr, 788-4641)

2020년도 소방청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에너지 신산업 화재대응 시나리오 기반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소방안전 기술개발(R&D) 예산이 신규로 편성(28억원)되었고, ② 현장직원의 건강지원 및 업무 환경개선 위한 예산이 확대되었고(2019년 27억원 → 2020년 35억원), ③ 육상 재난현장 즉시 출동체계 구축을 위한 시설·장비보강을 위한 예산이 대폭 확대되었으며(2019년 30억원 → 2020년 127억원), ④ 소방기술의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및 과학기반 소방대응력강화를 위한 예산이 증액되었다(2019년 7억원 → 2020년 14억원).

2020년도 소방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국립소방연구원 신설과 관련하여,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인력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고, 직접 수행 사업은 별도로 편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실감기반 첨단소방훈련체계 구축연구’ 사업은 업체 이의 신청으로 착수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소방장비 표준규격 개발 사업의 경우, 개발된 표준규격이 활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활용성 제고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간이 스프링클러 지원 사업은 서울특별시의 유사사업 추진 여부 및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향후 예산안 심사과정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

소방청의 2020년도 신규사업은 총 2개 사업, 45억원 규모로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보급 17억원, 에너지 신산업 소방대응 기술개발(R&D) 28억원이다.

[소방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안
일반회계 (2개)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등 보급	1,648
	에너지 신산업 소방대응 기술개발	2,828
합 계		4,476

자료: 소방청

2020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① 현장대응역량강화, ② 국민위해인자에 대응한 기체분자식별·분석기술개발, ③ 국립소방연구원운영, ④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시설장비지원 등 6개 사업이 전년대비 증액되었다.

현장대응역량강화 사업은 현장지휘차 보강 및 운영을 위한 8억원 및 드라이빙 센터 연구용역 1억원이 내역사업이 신규반영되었고, 국민 위해인자에 대응한 기체 분자식별·분석기술개발(R&D) 사업은 특수재난환경 시나리오별 실용화기술개발을 위해 8억원이 증액 반영되었으며, 국립소방연구원운영 사업은 연구원 이전에 따른 장비보강 비용 4억원이 증액 반영되었고,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시설장비지원 사업은 제독차구매 25억원,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83억원이 신규 내역사업으로 반영되어 예산이 증액되었다.

[소방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19		2020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12개)	현장대응역량강화	69	469	1,017	548	116.8
	국민 위해인자에 대응한 기체분자 식별·분석 기술 개발(R&D)	309	309	826	517	167.3
	실감기반 첨단소방훈련체계 구축연구(R&D)	2,000	2,000	2,853	853	42.7
	국립소방연구원운영	749	749	1,426	677	90.4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시설장비지원	2,977	2,977	12,678	9,701	325.9
	중앙소방학교수입대체경비	1,022	1,022	1,821	799	78.2

주: 주요 증액사업은 2019년도 추경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
자료: 소방청

1

국립소방연구원 운영 및 사업의 문제점

국립소방연구원은 2019년 5월 개원¹⁾한 소방청 소속기관으로, 소방정책 및 안전·재난기술의 연구, 화재감식 등을 위해 신설된 연구형 책임운영기관이다. 동 연구원은 소방정책연구 및 소방기술 연구개발, 화재조사 등의 직무를 담당하며, 2020년 국립소방연구원 소관 세부사업은 총 11개, 207억 2,100만원이다.

[국립소방연구원 개요]

구분	내용	
정원	43명(舊 소방과학연구실 22명에서 21명 증원)	
조직 구성	1과 3실	
직무	소방정책의 연구와 소방안전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화재원인 및 위험성 화학물질에 대한 과학적 조사·연구·분석 및 감정에 관한 사항 화재진압·구조·구급 등 재난 대응기술 연구·개발 및 실용화 지원에 관한 사항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재해 방지 및 보건안전·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국내외 소방안전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및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2020년 예산안 현황	인건비(1개 세부사업)	30억 2,000만원
	기본경비(2개 세부사업 / 총액, 비총액)	4억 5,700만원
	일반운영(1개 세부사업)	14억 2,600만원
	R&D 사업(7개 세부사업)	158억 1,800만원
	계	207억 2,100만원

자료: 소방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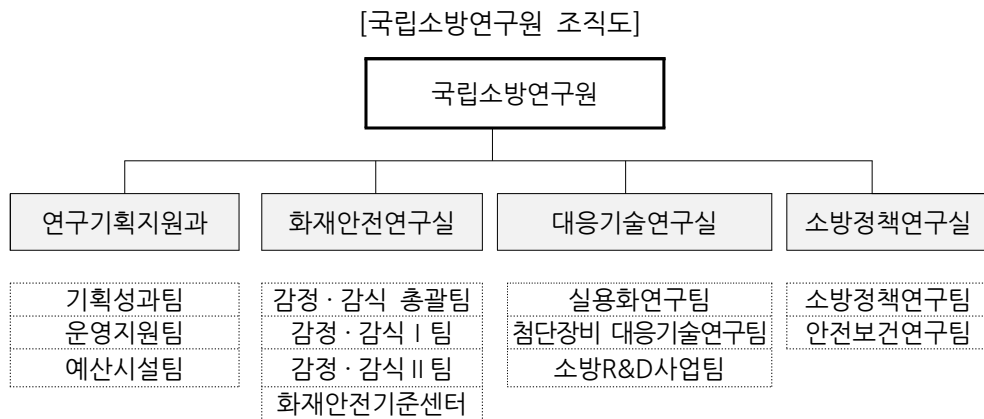
오덕근 예산분석관(whale@assembly.go.kr, 788-4641)

1) 동 연구원의 법령근거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청과 그 소속 기관 직제」(대통령령)로서, 각 시행령은 2019년 5월 14일 개정·시행되었다.

1-1.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인력 비중 확대 필요 등

가. 현 황

국립소방연구원은 중앙소방학교 내 과(科)단위 부서였던 소방과학연구실을 확대하여 연구형 책임운영기관으로 독립시킨 신설기관이다. 기관 정원은 43명으로 舊 소방과학연구실 정원 22명 대비 21명이 확대되었으며, 조직은 1과 3실로 구성되어 있다.



자료: 소방청

나. 분석의견

첫째, 국립소방연구원의 연구직렬 정원 비중 확대를 통해 전문적인 소방 분야 연구기관으로서의 역량 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립소방연구원의 정원은 특정직(소방공무원) 19명, 일반직 2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실제 연구 수행 전문인력으로 볼 수 있는 연구직공무원 및 전문경력관은 총 20명(연구관 7명, 연구사 정원 12명, 전문경력관 가급 1명)으로 전체 정원의 46.5% 수준이다.

오덕근 예산분석관(whale@assembly.go.kr, 788-4641)

[국립소방연구원 공무원 기준정원표]

직렬구분		정원 현황
특정직(소방공무원)		소방장, 소방령 등 19명
일반직	고위공무원	국립소방연구원장 1명
	전문경력관 가급	의사 면허 소지자 1명
	시설사무관	1명
	연구관	공업 또는 시설 연구관 7명
	연구사	공업 또는 시설 연구사 12명
	시설주사	2명
	소계	24명
총계		43명

자료: 소방청

동 연구인력 비중은 유사한 연구형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편이다.

[기타 유사 연구형 책임운영기관 연구인력 현황 비교]

정원 구분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국립소방연구원
전체 정원(A)		86명	43명
연구인력 (B)	연구관/연구사	70명	19명
	전문경력관	0명	1명
B/A		81.4%	46.5%

주: 상기 정원 수치는 복수직렬 정원 및 시간선택제 공무원 정원은 제외된 수치임

자료: 소방청

이에 대해 소방청은 소방공무원도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연구업무에 참여¹⁾함으로써 연구개발 성과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국립소방연구원은 소방 분야 연구업무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이며, 소방공무원은 순환보직으로 인해 연구활동 전문성을 축적·활용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전문연구인력 비중 확대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 현재 소방직 중 화재안전연구실 2명(화재 감정감식 및 재현실험 참여), 대응기술연구실 4명(리빙랩 및 대응기술연구), 소방정책연구실 2명(소방정책개발 및 안전사고 분석)이 참여하고 있다.

둘째, 전문경력관(가군, 의사면허 소지자)은 현재 지원자가 없는 상황이므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국립소방연구원은 소방공무원 보건의전 및 유해성 평가 등의 연구업무를 위해 의사 면허증을 가진 전문경력관 1명을 정원에 포함하고 있고, 이를 위해 2019년 채용공고가 진행되었으나 해당 직위 지원자가 없는 상황이다.

의사 면허 소지자의 채용 지연은 민간 노동시장 내 의사의 소득수준과 일반임기제 공무원의 보수 차이²⁾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의사 채용 지연은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도 발생³⁾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향후 채용 과정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소방청은 우선 의사 면허 소지자의 채용방안을 모색하되, 의사 면허 소지자의 업무 공백이 장기간 발생하지 않도록 의학적 지원이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의료기관과의 협약을 통한 기술 자문 방안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보건복지부, 2017. 11. pp.214)에 따르면 2016년 의사의 월평균임금 추정액은 약 1,300만원이며, 2020년 소방청 예산안에 따른 전문경력관 가군 보수액은 716만원이다.

3)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내 의사 정원은 4명이나, 현재 2명이 근무하고 있고, 다른 2명은 의료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파견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1-2. 직접수행 연구 사업 별도 편성 필요 등

가. 현 황

국립소방연구원은 소방청 소관 R&D 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2020년 예산안에는 7개 세부사업, 158억 1,8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0년 예산안에 따른 소방청 R&D 사업 규모는 전년 대비 6.0% 증가하였다.

[2020년도 소방청 R&D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현장중심형 소방활동 지원 기술개발(R&D)	7,008	4,316	4,316	1,626	△2,690	△62.3
국민안전감시 및 대응 무인항공기 융합 시스템 구축 및 운용(R&D)	1,565	1,199	1,199	461	△738	△61.6
국민 위해인자에 대응한 기체분자 식별분석(R&D)	313	309	309	826	517	167.3
소방대응력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R&D)	3,427	4,350	4,350	4,045	△305	△7.0
재난현장 긴급대응 기술개발(R&D)	0	2,753	2,753	3,179	426	15.5
실감기반 첨단소방훈련 체계 구축 연구(R&D)	0	2,000	2,000	2,853	853	42.7
에너지 신산업 소방대응 기술개발(R&D)	0	0	0	2,828	2,828	순증
계	12,313	14,927	14,927	15,818	891	6.0

자료: 소방청

상기 세부사업 중 ‘국민안전감시 및 대응무인항공기 융합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과 ‘국민위해인자 대응 기체분자식별분석 기술개발’ 사업은 다부처 공동연구개발사업이며, 그 외 5개 세부사업은 소방청 고유 R&D 사업이다.

나. 분석의견

국립소방연구원이 직접 수행하는 연구 사업은 별도 세부사업으로 독립 편성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소방청은 R&D 사업 중 일부 과제는 국립소방연구원이 직접 수행하는 연구사업으로 편성하고 있다. 2018년까지 직접 수행하는 R&D 사업은 리빙랩¹⁾ 연구 사업뿐이었으나, 자체 전문연구개발 역량 강화 등을 위해 현안문제 해결연구로서 2개 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들 직접 수행 연구과제는 ‘소방대응력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R&D)’ 사업²⁾에 편성되어 있으며, 2020년 예산안은 19억 8,600만원이다.

[2020년 국립소방연구원 직접수행 연구 과제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과제명)	사업 내용	2019년 예산	2020년 예산안
소방대응력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R&D)	화재 등 재난상황대응 소방대원 역량 향상 및 연구개발 역량 강화	4,350	4,045
(리빙랩 연구)	연구개발 과정 내 소방현장대원 자문단 참여, 현장문제점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및 자체 연구 수행, 연구 성과물 활용을 위한 교육·지침 마련 등	1,300	1,360
(소방현장 단순장비 및 장치 개발)	소방현장에서 활용되는 차량·장비 등의 개선·개발 연구	469	426
(소방차량 현장대응력 향상을 위한 장비 개선 및 개발 연구)		400	200
소계		2,169	1,986

1) 리빙랩(Living Lab)은 연구결과물의 사용자(User)들이 연구개발 전체과정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개방형 실험실을 말한다.

2) 코드: 일반회계 1160-603

그런데, 이들 직접 수행 연구과제들은 사업목적 및 사업추진방식에서 일반 R&D 사업과는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우선, 리빙랩 연구는 현장자문단 운영을 통해 기타 연구개발 사업을 지원하고, 소방정책 지원을 위한 기초조사 등 연구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과제형 R&D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소방현장 단순장비 및 장치 개발’ 및 ‘소방차량 현장대응력 향상을 위한 장비 개선 및 개발 연구’ 등 2개 과제는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요구되는 현용 장비 개선 문제에 관한 연구를 통해 현장실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서, 단기적이고 실용적인 개선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일반 연구형 과제와는 성격이 다르다.³⁾

또한 직접 수행 과제들은 기타 사업들이 연구활동비(360-05목)으로 편성된 것과 달리, 상용임금, 일반연구비, 재료비 등을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다.

[국립소방연구원 직접 수행 연구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리빙랩 연구	소방현장 단순장비 및 장치개발	소방차량 현장대응력 향상을 위한 장비개선 개발
계	1,360	426	200
상용임금	660	142	0
일반연구비	315	109	100
기타 일반수용비 등	385	175	100

자료: 소방청

따라서 동 직접 수행 과제들은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분리편성하고, 성과지표도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달리 구성될 필요가 있다⁴⁾. 또한, 일반 R&D 사업 내에 편성되어 있어 사업 일몰 지정 등에 따라 내역사업이 이관되는 등 예산편성의 일관성을 저해하는 측면⁵⁾이 있다.

3) 2020년 소방대응력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사업 내 외부과제 주제는 ‘화재유형별 소방활동 현장지휘체계 훈련 콘텐츠 개발’, ‘소방설비 전생애 관리 기반 통합 화재방호 인명안전 플랫폼 개발’ 등이 편성되어 있다.

4) 현재 직접 수행 과제가 포함된 ‘소방대응력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R&D)’ 사업의 성과지표는 일반 R&D 과제의 성과지표와 유사하게 논문지수, 특허실적, 기술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5) 2016년부터 편성된 리빙랩 연구 예산은 2018년까지 ‘현장중심형 소방활동지원 기술개발’ 사업에

한편 행정안전부의 경우, ‘극한재난대응기반기술개발(R&D)’, ‘재난안전 취약핵심 역량도약 기술개발(R&D)’ 등 과제형 출연사업의 과제발굴, 선정평가 등의 사업 관리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¹⁾에서 수행하도록 하되, 연구원 직접 수행 R&D 사업인 ‘재난안전관리업무 지원기술개발(R&D)’ 사업, ‘재난안전 연구개발 사업관리(R&D)’²⁾은 별도 편성하고 있다. 따라서 소방청은 직접 수행 연구 사업을 기존 R&D 사업의 내역사업에서 분리하여 별도 편성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¹⁾ 편성되어 있었으나, 동 사업의 일몰 지정으로 인해 2019년부터 ‘소방대응력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사업으로 이관되었다.

1-3. 실감기반 첨단소방훈련체계 구축연구(R&D) 사업 지연에 따른 예산조정 필요

가. 현 황

실감기반 첨단소방훈련체계 구축연구(R&D) 사업은 제한된 공간에 VR을 활용한 다양한 화재상황을 재현하고, 훈련 결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실증기반의 복합훈련 공간 구축을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의 2020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8억 5,300만원 증액된 28억 5,3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0년도 실감기반 첨단소방훈련체계 구축연구(R&D)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실감기반 첨단소방훈련체계 구축연구(R&D)	0	2,000	2,000	2,853	853	42.7

자료: 소방청

실감기반 첨단소방훈련체계 구축연구 사업은 2019년~2024년의 6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 200억원의 대규모 단일 과제 사업이다.

나. 분석의견

실감기반 첨단소방훈련체계 구축연구 사업은 업체 이의 신청으로 착수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2019년 신규 사업으로 2019년 상반기 연구착수를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선정결과에 대한 차순위 업체들의 이의신청, 선정업체 재평가 등으로 사업이 2019년 9월 말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다.

[2019년 실감기반 첨단소방훈련체계 구축연구(R&D) 사업 추진 경과]

추진 시기	추진 절차
2. 25. ~ 3. 26.	과제공모 공고
3. 20. ~ 3. 26.	신청·접수
3. 26. ~	사전검토 및 보완
4. 22.	선정평가 사전검토회의
5. 3.	신규과제 선정평가
5. 13.	선정결과 공고
5. 13. ~ 5. 22.	이의신청 접수
6. 7.	타당성 자문회의
6. 19.	이의신청위원회(1차)
7. 30.	이의신청위원회(2차)
8. 12.	이의신청위원회(3차)
8. 27. ~ 8. 30.	이의신청결과 및 선정취소 통보
9. 11.~	이의신청 접수 및 관련 사항 검토 중

자료: 소방청

이에 따라 소방청은 향후 이의신청위원회 및 재평가위원회를 거쳐 10월 말에 선정기관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미 사업절차 상 지연으로 인해 4월 착수가 목표였던 동 사업의 착수시기는 10월로 6개월 이상 지연되었으며, 이후에도 추가적인 이의신청으로 인한 사업지연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한편, 사업지연으로 2019년 편성된 출연사업비 20억원 전액은 10월 현재까지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으로 2019년 출연사업비 일부는 실집행 이월이 예상된다. 따라서 2020년 예산안은 사업지연 및 실소요를 고려하여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다.

1-4. 국립소방연구원 이전 사업비 자료 제출 필요

가. 현 황

현재 국립소방연구원은 舊)소방과학연구실 소재인 충청남도 아산에 소재하고 있으나, 연구기능 확대 및 교육연구 협업 등을 위한 청사 이전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전사업비는 총 188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전 청사는 현재 공주에 소재한 국민안전교육 연구단지¹⁾ 인근 국유지를 대상으로 계획되고 있다.

[국립소방연구원 이전 사업 개요]

구 분	내 용
추진 배경	대형화재 증가 등 재난환경 변화에 맞춰 화재 감식·감정 및 화재매커니즘 연구, 소방 R&D 연구결과 현장 실용화, 소방안전·보건 정책 Think-Tank 지원 등 국립소방연구원 기능 강화 필요
이전 장소	현 충남 아산시 송악면 → 공주 국민안전교육 연구단지 인근 국유지
이전 사업비	188억원(건축비: 113억원, 부지조성비: 75억원)

자료: 소방청

나. 분석의견

국립소방연구원 이전 사업은 국유지 사용승인 결정 지연으로 2020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이전 사업비 적정 수준 반영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

국립소방연구원 이전 사업은 연구원 개원과 함께 추진되었고, 현재 소방청 사업계획 상 사업기간은 2020~2024년으로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국유지 사용에 관한 기획재정부 협의가 2019년 8월에 완료되면서 현재 2020년 예산안에 관련 사업비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

오덕근 예산분석관(whale@assembly.go.kr, 788-4641)

1) 공주 국민안전교육 연구단지는 42만㎡ 부지 규모로 현재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이전되어 있다.

[국립소방연구원 이전사업 추진 경과]

추진 시기	추진 내용
2019. 1.	국립소방연구원 인프라 확충 구상 및 비용추계
2019. 4.	이전계획 수립
2019. 1. ~ 8.	국유지 사용 협의
2019. 8. 14.	국유지 사용승인 결정

자료: 소방청

이에 따라 소방청은 2020년 예산안에 관한 국회 심사 단계에서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으로, 관련 예산액은 13억 5,200만원이며, 국립소방연구원 개원에 따른 연구시설 및 장비 등이 확충 필요성 및 국유지 사용 승인 결정 등을 고려할 때, 동 연구원 이전사업은 조속히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국립소방연구원 이전사업 연도별 소요예산(소방청 안)]

(단위: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18,789	1,352	11,000	6,437
부지 조성	사전절차 수행	500	500	0	0
	설계비	311	311	0	0
	공사비	6,711	0	6,711	0
건축	설계비	541	541	0	0
	공사비	10,294	0	4,117	6,177
	감리비	397	0	0	0
	시설부대비	35	0	0	0

주: 상기 사업비는 2020년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음

자료: 소방청

다만, 현재 소방청이 계획하고 있는 예산액은 부지조성 및 건축 설계비 8억 5,200만원, 사전절차 수행 사업비 5억원으로 구성되는데, 부지조성 및 건축 설계비는 사업비 전액이 반영되어 있으나, 부지조성을 위한 사전 절차(지구단위 계획수립, 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 등)를 고려할 때 2020년 내에 완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20년 예산안 국회 심사과정에서 집행가능 소요분을 검토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다.

III

개별 사업 분석

1

소방장비 표준규격 활용성 제고방안 마련 필요

가. 현 황

소방장비기본규격 개발 사업¹⁾은 소방장비 품질향상 및 시·도별 장비의 성능 확보를 위한 표준규격 개발 사업이다. 이 사업의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600만원이 증액된 3억 9,6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0년도 소방장비기본규격 개발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소방장비기본규격 개발	400	360	360	396	36	10.0

자료: 소방청

동 사업은 소방장비 구매 시 일선 소방공무원이 직접 규격서를 작성하여 구매함에 따라 소방장비의 성능·품질확보가 곤란하고, 구매 공정성 및 시·도별 편차가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2017년 착수 이후 2022년까지 60종의 소방장비 표준규격을 제정할 계획이다.

오덕근 예산분석관(whale@assembly.go.kr, 788-4641)

1) 코드: 일반회계 1132-300

[소방장비 표준규격 개발 5개년 계획]

(단위: 백만원)

사업연도	규격개발 장비	예산(안)
2017	소방차사이렌 등 6종 제정	200
2018	소방펌프차 등 10종 제정	400
2019	휴대용사다리 등 13종 제정	360
2020	열화상카메라 등 12종 제정 / 소방차사이렌 등 개정 6종	396
2021	스탠드파이프 등 10종 제정 / 소방펌프차 등 개정 10종	-
2022	폼 혼합장치 등 9종 제정 / 휴대용소방사다리 등 개정 13종	-

자료: 소방청

나. 분석의견

시·도 소방본부의 소방장비 구매 시 표준규격이 활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표준규격의 활용성 제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17년 사업 시행 이후 2018년까지 표준규격 개발이 완료된 장비는 16종이나, 현재 완료된 표준규격이 활용되는 장비는 1종에 불과하고, 기타 15종에 대해서는 아직 표준규격이 활용되지 않고 있다.

우선 2017년 개발된 6종을 살펴보면, 소방차 도색기준 1종만 활용되고 있고, 소방용 펌프는 표준규격 인정을 위한 시험설비 구축 중이며, 기타 4종은 각각 제조업체에서 제품을 개발 중이거나 KFI 인정 접수 및 시험 중에 있다.

다음으로 2018년 개발된 10종은 2020년에 시행될 예정으로 아직 적용되지 않고 있다.

[소방장비 표준규격이 개발된 소방장비의 구매 활용 실적]

연번	소방장비	표준규격 개발시기	표준규격 시행시기	표준규격 활용실적	미활용 사유
1	소방차도색기준	2017년	2019년	있음	-
2	소방용펌프		미정	없음	시험설비 구축 중
3	소방차 사이렌		2019년		제조업체 제품개발 중
4	안전헬멧				KFI 인정 접수 및 시험 중
5	방화두건				
6	방화장갑				
7	소방차 통칙	2018년	2020년	없음	표준규격 시행 전
8	펌프차				
9	물탱크차				
10	화학차				
11	사다리차				
12	굴절차				
13	구조차				
14	특수방화복				
15	방화(구조)헬멧				
16	방화신발				

자료: 소방청

이와 같이 표준규격이 활용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소방청은 제도 도입 초기로 소방장비 업체의 표준규격 제품 개발이 늦어지고 있으며, 향후 제도가 정착되면 장비개발 지연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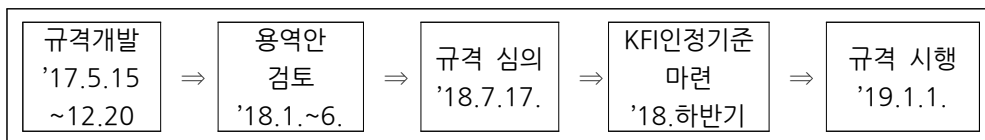
그러나 제도 정착 및 안정화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우선 표준규격 개발 과정에서 소방업체의 기술수준 및 장비시험시설에 대한 검토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소방청은 규격 개발과정에 제조업체 회의 및 공청회 등으로 생산 가능여부 등을 확인하여 규격을 개발표준규격을 개발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2017년 개발된 소방용 펌프의 경우 시험설비가 구축되지 않아 표준규격 시행시기가 미정인 상황이며, 소방차 사이렌, 안전헬멧 등은 소방업체가 제품을 개발 중이다. 방화두건, 방화장갑은 KFI 인정²⁾을 위한 제품이 접수·시험 중에 있다.

이와 같이 표준규격이 마련되어 시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시험설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표준규격에 적합한 제품이 없어 업체가 시제품을 개발하는 단계라는 것은 표준규격 개발 시 관련 검토가 미진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현재 표준규격은 개발된 지 1년 후에 시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소방청은 표준규격 개발 이후 검토기간을 두어 표준규격에 관한 공청회 등을 통해 업체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표준규격을 심의·확정하고 제조사의 제품개발을 위한 유예 기간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2017년 표준규격 개발 사업 경과]



자료: 소방청

그러나 2019년 현재 이미 시행 중인 2017년 표준규격 6종 중 5종은 표준규격 장비 개발이 늦어져 일선 시·도에서는 구매를 보류하거나 표준규격과 관계없이 장비구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즉, 표준규격 시행 자체의 의미가 크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개발한 표준규격을 대상으로 다시 내부검토하는 용역안 검토 및 KFI 인정기준 마련을 위해 1년이 소요되고 있는데, 업체 공청회 등은 규격 개발 시 수행되고 있으며, 내부검토 및 인정 기준마련은 표준규격 개발 시에 함께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종합적으로, 소방청은 표준규격이 개발된 이후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표준규격 개발과정에서 업체의 기술 및 생산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표준규격이 실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표준규격 시행 및 장비 인증 제도 등을 정비하여 표준규격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2)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Korea Fire Institution)이 소방법령에서 정하여진 소방용품 이외의 제품 등에 대하여 성능을 인정하는 것으로 민간인증이다.

가. 현 황

고시원 등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사업은 화재안전 및 시설기준개발 사업¹⁾의 내역사업으로, 화재안전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노후고시원, 산후조리원 등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에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2020년도 예산안은 13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0년도 고시원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화재안전 및 시설기준 개발	907	876	7,948	2,158	△5,790	△72.8
고시원 등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지원	0	0	7,072	1,360	△5,712	△80.8

자료: 소방청

동 사업은 2개년 사업(2019~2020년)으로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총 1,581개소²⁾를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전체 사업비(지자체 및 민간 부담 포함)는 253억원이다. 사업형태는 지자체 보조사업(보조율 33%)으로, 사업비는 국가, 지자체, 민간이 1:1:1 비율로 분담하며, 사업비 내 국비는 2019년 70.7억원(1,326개소), 2020년은 13.6억원(255개소)이다.

숙박형 다중이용업소는 산후조리원과 고시원을 말하는데, 이들 업소의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³⁾에 따라

오덕근 예산분석관(whale@assembly.go.kr, 788-4641)

1) 코드: 일반회계 1133-300

2) 2019년 사업 추진 당시 1,826개소였으나, 지자체 사업(123개소), 휴·폐업소(122개소) 등이 제외되어 현재 1,581개소로 변경되었다.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①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 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의무화되어 있으나, 동 규정 시행일(2009. 7. 8.) 이전에 영업을 개시한 기존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⁴⁾ 이에 따라 동 사업은 기존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중 간이소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업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2018년 11월 국일고시원 화재 등을 통해 노후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설비 실태가 사회적으로 부각됨에 따라 간이소프링클러 설치 의무대상을 기존 업소까지 포함하는 법률 개정안 4건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동 개정안들은 공통적으로 간이소프링클러 의무설치에 관한 규정 시행일(2009. 7. 8.) 이전에 영업을 개시한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의 간이소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3건은 간이소프링클러 설치 비용 일부에 대한 국비·지방비 지원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현황(2019년 9월 기준)]

대표발의 및 제안일	법안내용	공통사항
임재훈의원 2018.12.6.	·간이소프링클러 설치에 관한 국비·지방비 지원 ·설비 미설치 등에 관해 과태료 등 처벌조항 상향	간이소프링클러 의무 설치 규정 시행일 (2009.7.8.) 이전에 영업을 개시한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 간이소프링클러 설치의무를 소급 적용 (관련 부칙 삭제)
민경욱의원 2018.12.27	·다중이용업소 이용자에게 화재예방 주의사항 고지의무	
이재정의의원 2019.2.12.	·간이소프링클러 설치에 관한 국비·지방비 지원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위원회 신설	
김현아의의원 2019.2.19.	·간이소프링클러 설치에 관한 국비·지방비 지원 ·다중이용업소 정기검사 실시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에는 소방시설 중 간이소프링클러설비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 <법률 제9330호, 2009. 1. 7.>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9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영업을 개시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부터 적용한다. (후단 생략)

나. 분석의견

기존부터 수행해 온 서울특별시 유사사업이 2020년에도 추진될 경우, 서울특별시 사업 수행분만큼 예산 불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서울특별시의 차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자료를 추가제출할 필요가 있다.

소방청은 동 사업을 통해 노후고시원 및 산후조리원 1,581개소에 대한 간이스프링클러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주 사업대상인 노후고시원 1,547개소 중 약 52.7%인 816개소는 서울특별시 소재 업소인데, 소방청은 2019년 561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였고, 잔여 255개소는 2020년 사업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특별시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대상 업소 수]

구 분		고시원	산후조리원
지원대상 업소 수		1,547개소	34개소
소방청 사업수행	서울특별시 소재 업소 수	816개소	6개소
	2019년	561개소	6개소
	2020년	255개소	없음

자료: 소방청

한편, 서울특별시는 2012년부터 자체 사업인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통해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지원해 왔으며,⁵⁾ 2019년에도 129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예산 27.8억원)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소방청은 2020년 서울특별시의 자체사업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잔여 255개소 전체에 대한 예산을 2020년 예산안에 편성하였다.

그러나 2019년 10월 현재 서울특별시는 자체 사업 예산 편성을 검토 중으로, 차년도 사업 실시 여부에 대해 확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서울특별시 사업의 경우, 민간부담분이 없고, 외부피난계단 등 지원설비를 추가 신청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고시원 사업주는 소방청 사업보다 서울특별시 사업을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⁶⁾

5) 현재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가 유일하다.

6) 2개 사업을 비교해보면, 지원설비, 부담비율, 설치조건에서 차이가 발생하는데, 서울특별시 사업은

따라서 서울특별시가 자체 사업을 추진할 경우, 잔여 255개소 중 서울특별시 사업 물량만큼 관련 예산이 불용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소방청은 서울특별시 관련 사업 담당자와 협의하여 차년도 사업 수행 여부 및 사업물량에 관해 논의하는 한편, 서울특별시 사업 계획이 구체화되는 즉시 국회 예산심사과정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

민간부담분이 없고, 외부피난계단 등 지원설비를 추가 신청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설치조건으로 서 3년간 입실료를 동결하는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개소당 평균 사업비는 2,000만원으로 소방청 추정가격(1,600만원)보다 많다. 이에 비해 소방청 사업의 경우, 민간부담분이 약 33% 수준이며, 설치에 따른 반대급부를 제시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된다. 서울특별시는 2019년 노후고시원 스프링클러 지원 사업을 2개의 사업(소방청 사업, 서울특별시 사업)으로 구분하여 민간에서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집 필

총괄 | 김 일 권 예산분석실장

심 의 | 서 세 옥 사업평가심의관
정 승 환 예산분석총괄과장
공 춘 택 산업예산분석과장
이 동 훈 사회예산분석과장
이 종 구 행정예산분석과장
전 용 수 경제산업사업평가과장
신 은 호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
박 홍 업 공공기관평가과장

작 성 | 황 수 환 예산분석관
정 주 완 예산분석관
오 덕 근 예산분석관

지 원 | 이 정 아 행정실무원
이 근 영 자료분석지원요원

예산안분석시리즈 II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발간일	2019년 10월
발행인	이종후 국회예산정책처장
편 집	예산분석실 행정예산분석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금양문화사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ISBN 978-89-6073-218-6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19